

전자게시대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ver 1.0

목차

| | |
|-----------------------------|-----|
|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 3 |
| I. 전자게시대 개요 | 16 |
| 1. 전자게시대 정의 | |
| 2.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프로세스 | |
| II.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절차 가이드라인 | 35 |
| 1.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 | |
| 2. 물품 구매 | |
| 3. 광고 위탁 용역 | |
| 4. 철거 공사 | |
| III. 국내외 주요 참고 사례 | 232 |
| 1. 지도 기반 전자게시대 현황 |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사례 | |
| 3. 해외 공공디자인 적용 DOOH 사례 | |
| IV. 관련 주요 기업 목록 | 275 |
| 1. 옥외광고 관련 기업 | |
| 2. IT 제조 기업 | |
| 3. CMS 솔루션 기업 | |
| 4. 콘텐츠 제작 기업 | |
| V.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 290 |
| 1. 법 제도 | |
| 2. IT용어 | |
| 별첨 | 340 |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1.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

● 전자계시대 법적 근거 _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전자계시대 정의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거나, 필요시 제한적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지주 이용 디지털광고물

● 개발 배경 및 활용

- 지자체 전자계시대 업무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 사업 별로 체계화하고 단계별로 분류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업무 계획 및 추진 시 참고하도록 구성
- 전자계시대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업무 소통 지원 기본 ICT 정보 제공을 통한 업무 효율화
- 전자계시대 목적 준수를 위해 법 제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구성
- 본 가이드라인은 참조용으로 각 지자체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기본적인 정보를 취합 정리 종합한 것으로 업무 참고용 방향성 제시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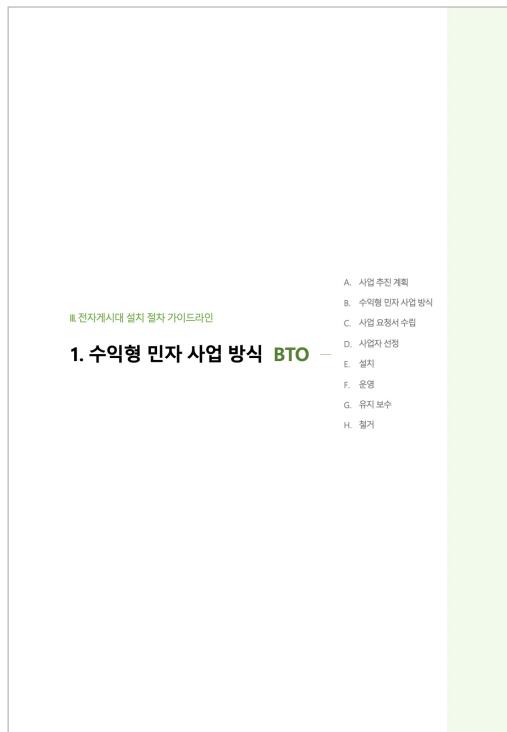
● 가이드라인 개발 주요 내용

- 업무 단계별 검토 사항 정리
전체 업무 과정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선행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단계별 법 제도 검토 / 검토 사항 점검 / 사전 인지^{II} 정보 등을 제공
- 국내외 사례 조사
국내 전자계시대 설치 운영 사례 및 해외 공공디자인 사례 수록
- 전자계시대의 설치 장소 구글 지도 수록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 조사된 지자체 전자계시대의 위치를 구글 지도로 제작 URL 제공
구글 지도를 활용 현재 전자계시대 현황 표시 신규 전자계시대 설치 운영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함
- LED 디스플레이 기반 전자계시대 기술 정보 제공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전자계시대가 LED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현재 적용된 기술 정리
기술 관련 상세 설명을 자양하고 용어 이해에 중점을 두고 업무 수행 중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 전자계시대 관련 기업 정보 제공
전자계시대 및 옥외광고 관련 기업 정보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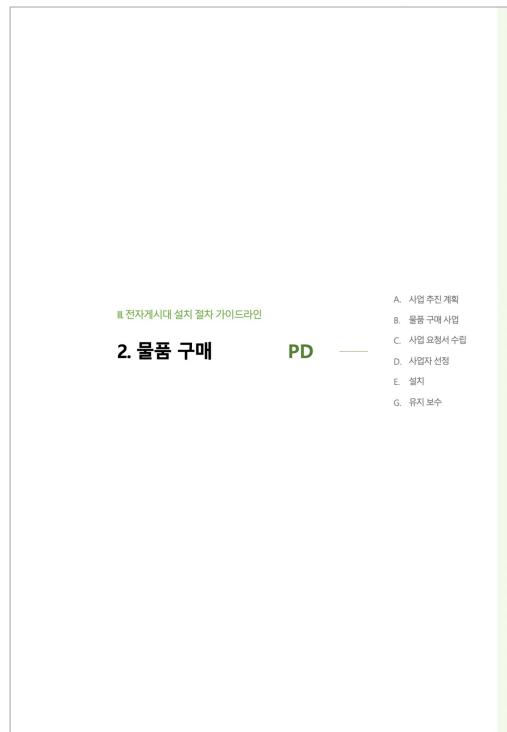
2.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1) 사업별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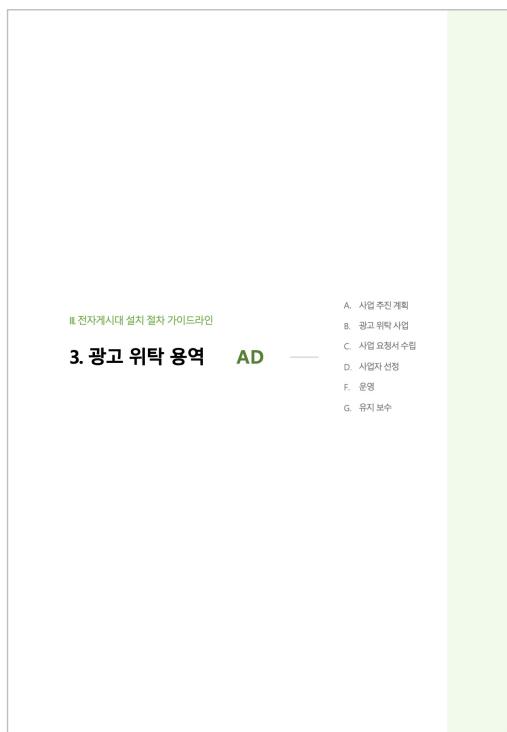
- 사업 방식에 따라 4 가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 각 사업 방식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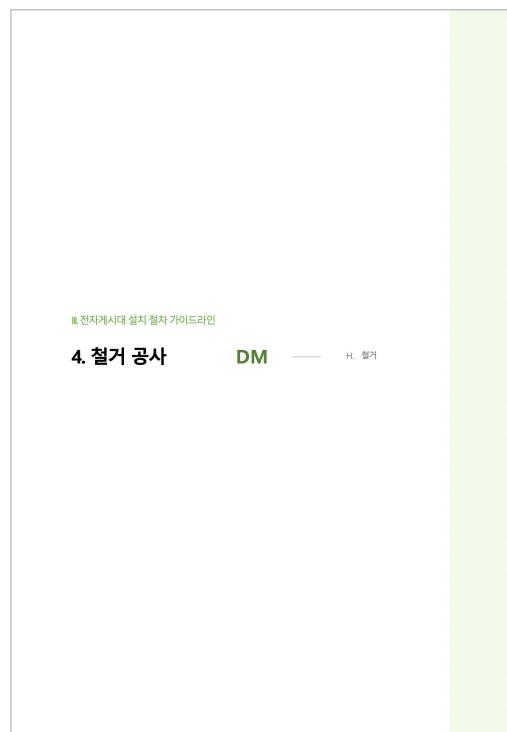
수익형 민자사업



물품 구매



광고위탁 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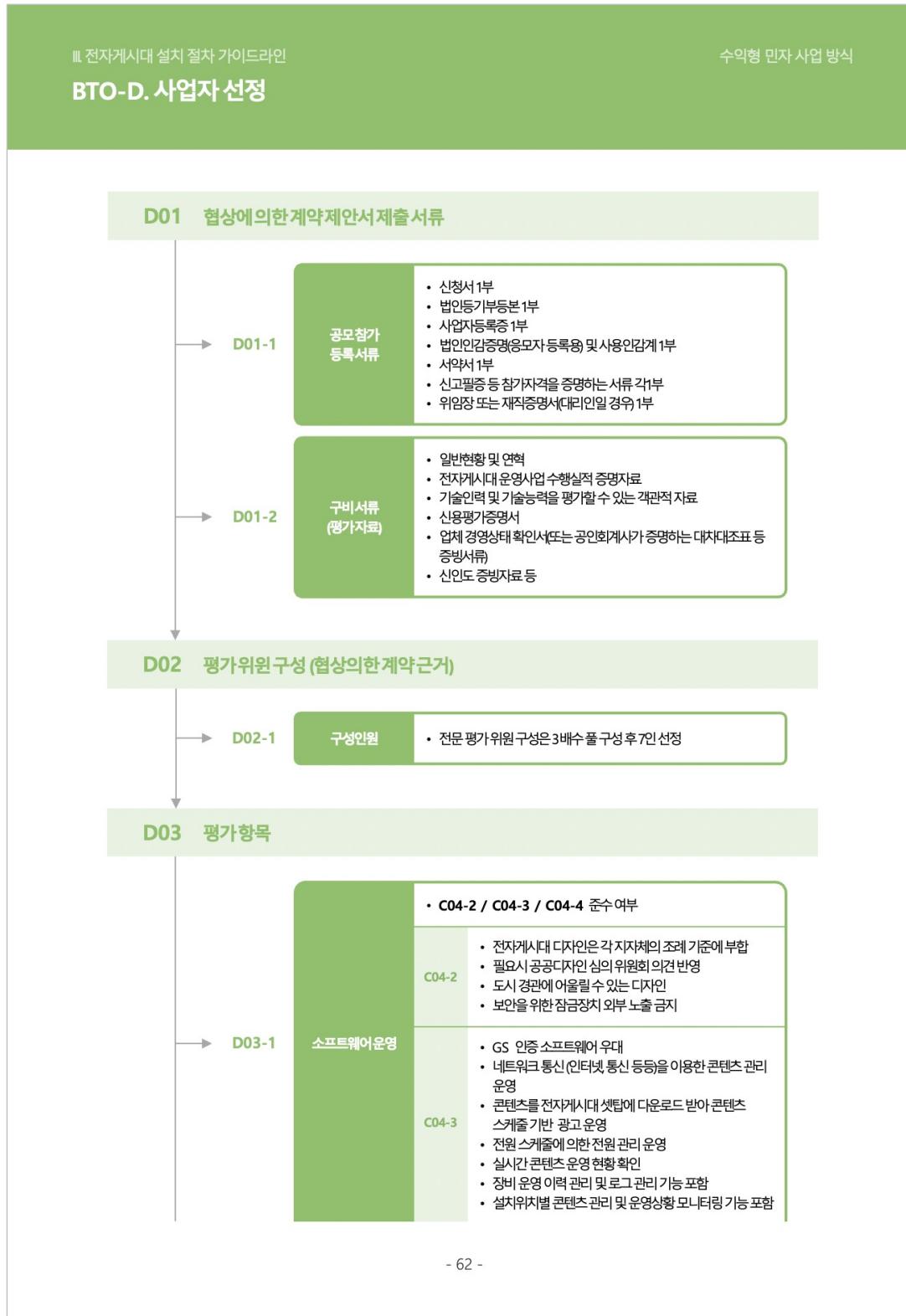


철거공사

2.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2) 가이드라인 프로세스

- 각 사업별 업무 추진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
- 각 단계별 주요 검토 사항 수록



2.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3) 세부 가이드라인

- 각 단계별 검토 사항의 세부 내용 제시
- 각 단계별 법 제도 및 참고 사항 수록

III. 전자게시대 설치 절차 가이드라인
수의형 민자 사업 방식

BTO-D. 사업자 선정

D03

평가 항목 **업체를 평가하는 항목 확인**

공모에 참가한 업체들이 평가 항목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평가 점수를 매긴다.

▶ D03-1. 소프트웨어 운영

- C04-2 / C04- 3 / C04-4 준수 여부
- 통합 관제실 또는 솔루션 보유 여부
- 옥외광고미디어사 소프트웨어 보유 여부
- 파트너 및 외주 소프트웨어 운영인 경우 해당 기업 정보

[참고 자료]
*별첨: 소프트웨어 기본 시방서

▶ D03-2. 하드웨어 사양

- C04-1 준수 여부
- 기타 추가 기능 기기 반영 여부

[참고 자료]
*별첨: 하드웨어 기본 시방서

▶ D03-3. IT전문 인력 보유 현황

- 통합 관제 운영 인력
- 소프트웨어 운영 인력
- 하드웨어 운영 인력
- 콘텐츠 제작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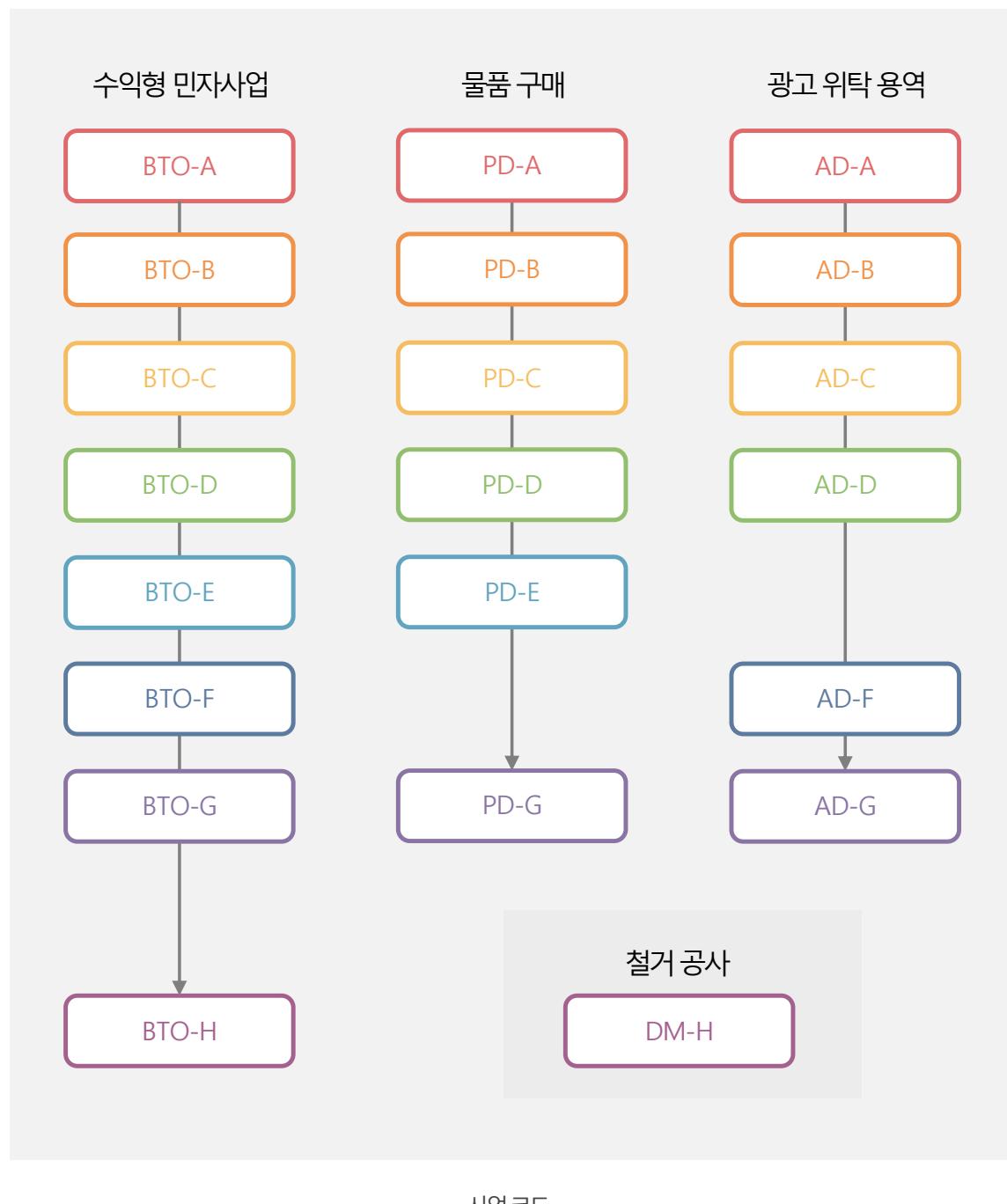
[참고 자료]
*별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력 기술자
보유 현황 참조

3. 가이드라인 사용법

1) 사업 코드

전자계시대는 사업 방식에 따라서 4개 코드로 구분

- BTO (Build Transfer Operation : 수익형 민자사업)
 - PD (Product : 물품 구매)
 - AD (Advertisement : 광고 위탁 용역)
 - DM (Demolition : 철거 공사)
- 프로세스 코드 - A, B, C 등의 알파벳 순으로 구성
 - 동일 프로세스 코드라 할지라도 사업 코드에 따라 세부사항은 상이 할 수 있음. (BTO-C ≠ PD-C)



3. 가이드라인 사용법

2) 단계별 코드

전자계시대 사업추진 단계를 알파벳 A부터 H로 구분

- A : 사업추진계획
- B : 사업방식결정
- C : 사업요청서수립
- D : 사업자선정
- E : 설치
- F : 운영
- G : 유지보수
- H : 철거



전체 [프로세스 코드](#)

3. 가이드라인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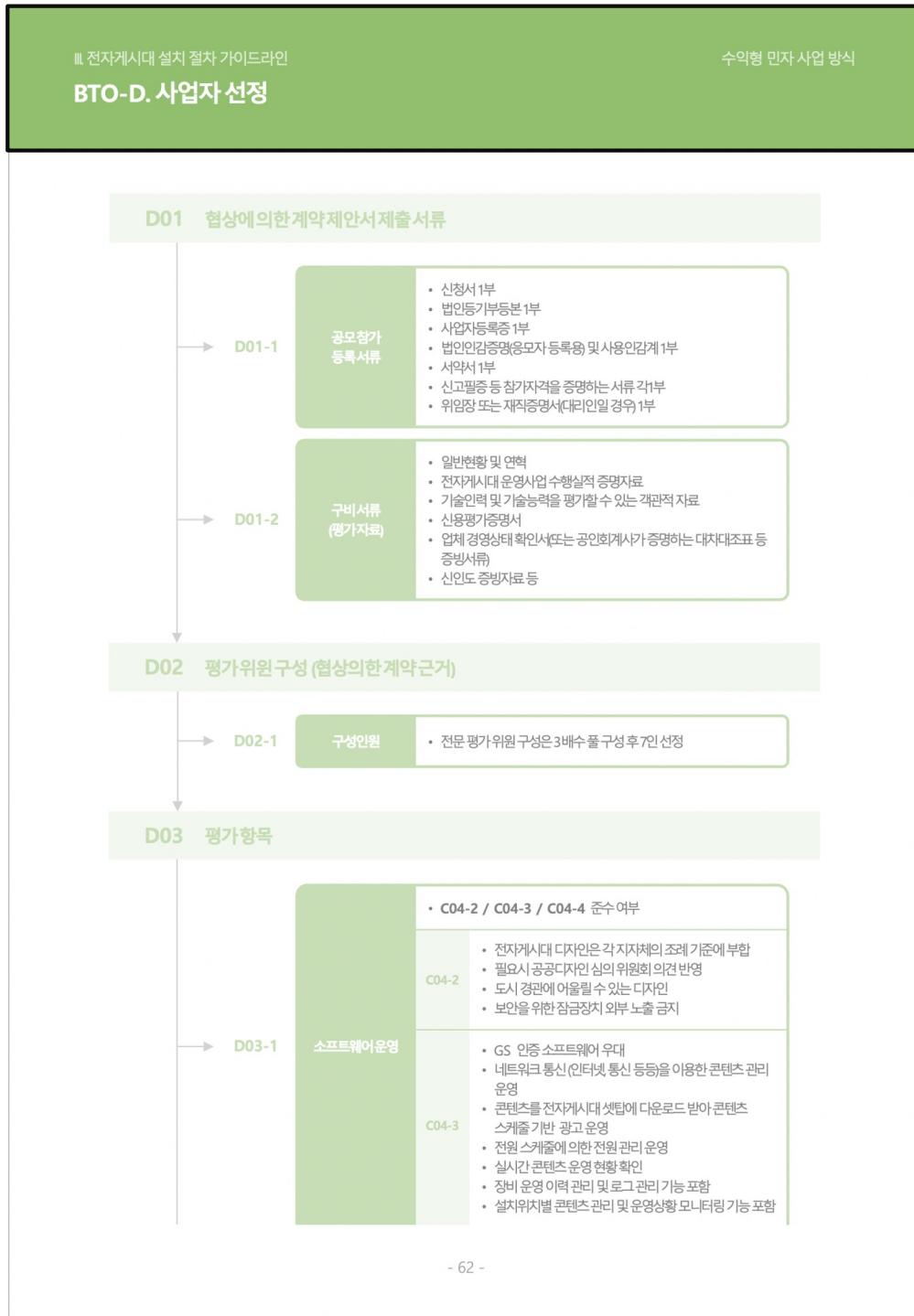
3) 세부 코드

① 사업 단계별 코드

= 사업 코드 + 단계별 코드

= 사업 코드(BTO, PD, AD, DM)을 기준으로 단계별 코드 알파벳(A~H) 조합

예) BTO-D =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의 사업자 선정 단계



3. 가이드라인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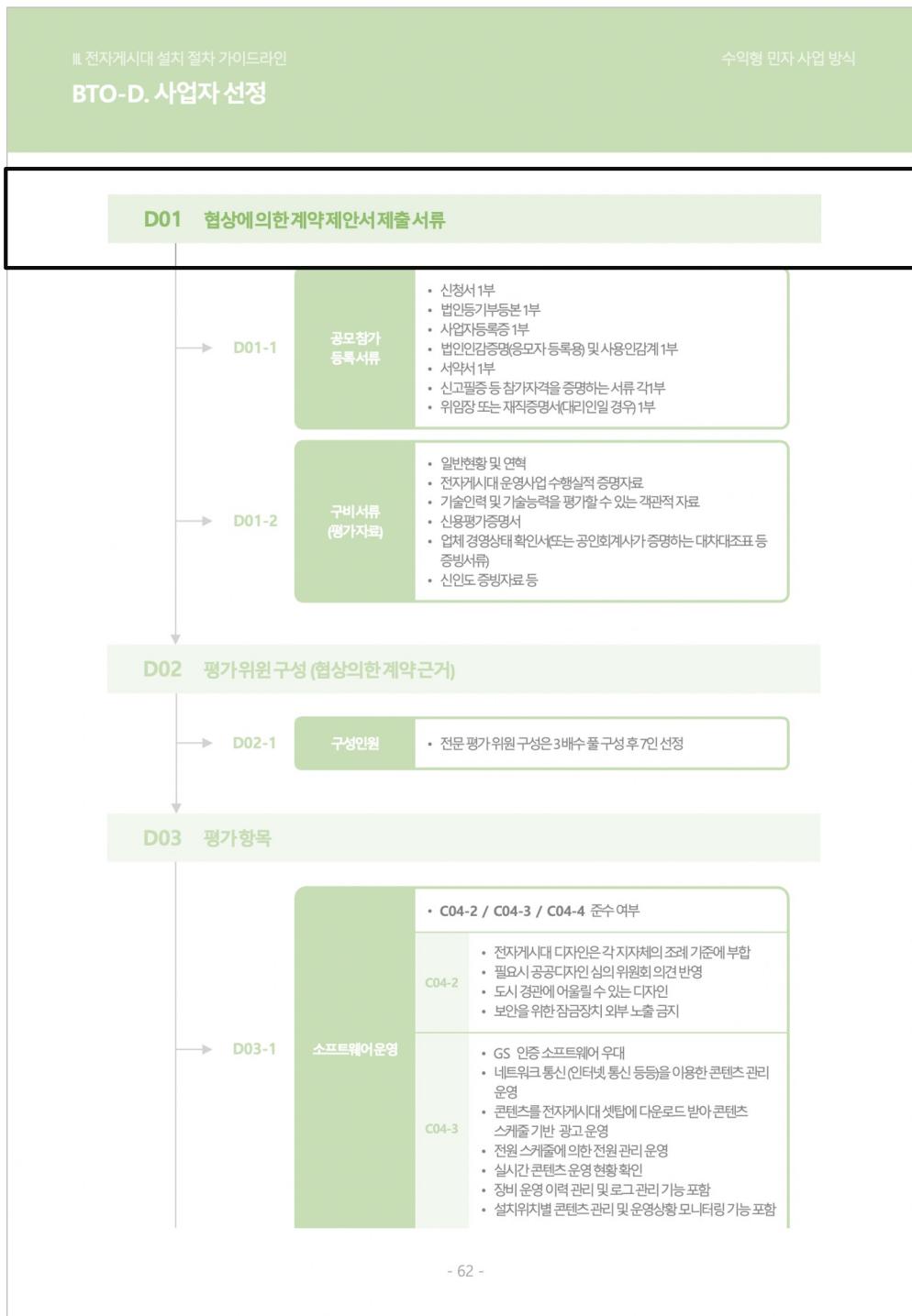
3) 세부 코드

② 사업별 상세 단계별 코드

= 사업 코드 + 단계별 코드 + 단계별 코드 숫자

= 사업 코드(BTO, PD, AD, DM)와 단계별 코드 알파벳(A~H)기준 상세 내용을 단계별 코드에 숫자 조합

예) BTO-D, D01 =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의 사업자 선정 시, 입찰자 제출 서류



3. 가이드라인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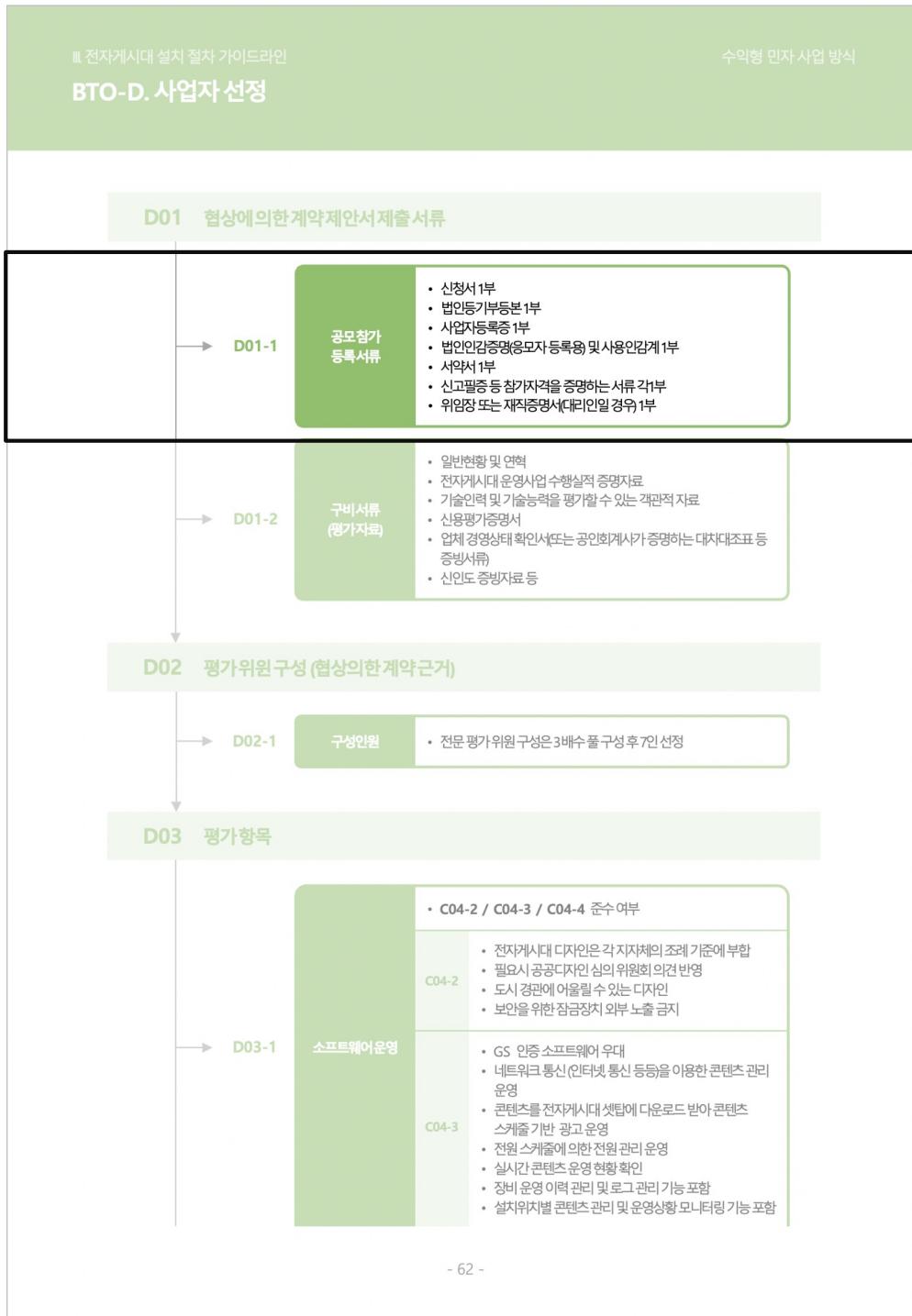
3) 세부 코드

③ 사업별 업무 코드

= 사업 코드 + 단계별 코드 + 단계별 코드 숫자 + 숫자

= 상세 단계별 코드를 기준으로 하위 단계 숫자 조합

예) BTO-D, D01-1 = 수의형 민자사업 방식의 사업자 선정 시, 입찰자 제출서류, 공모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가이드라인 사용법

4) 세부 가이드라인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각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법 제도 및 참고 사항 수록

① 법 제도

해당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법 제도 수록

▶ D03-4. 디자인

- 위치별 여건에 맞는 특화디자인
- 랜드마크 디자인
- 지자체 특성 반영 디자인
- 유지보수 및 안정성 확보 디자인

[공공디자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기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밖에 가로부터 바로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D03-5. 장애 및 복구 방안

- 장애 복구 프로세스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조치 기간 및 부품 보유 및 조달 방법
- 장애 유형 보유 및 매뉴얼 보유 유무

세부 가이드라인

② 참고 사항

해당 단계에서 참고 자료 및 관련 내용 수록

- 신용평가증명서
- 업체 경영상태 확인서(또는 공인회계사가 증명하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 신인도 증빙자료 등

[참고 자료]

*별첨: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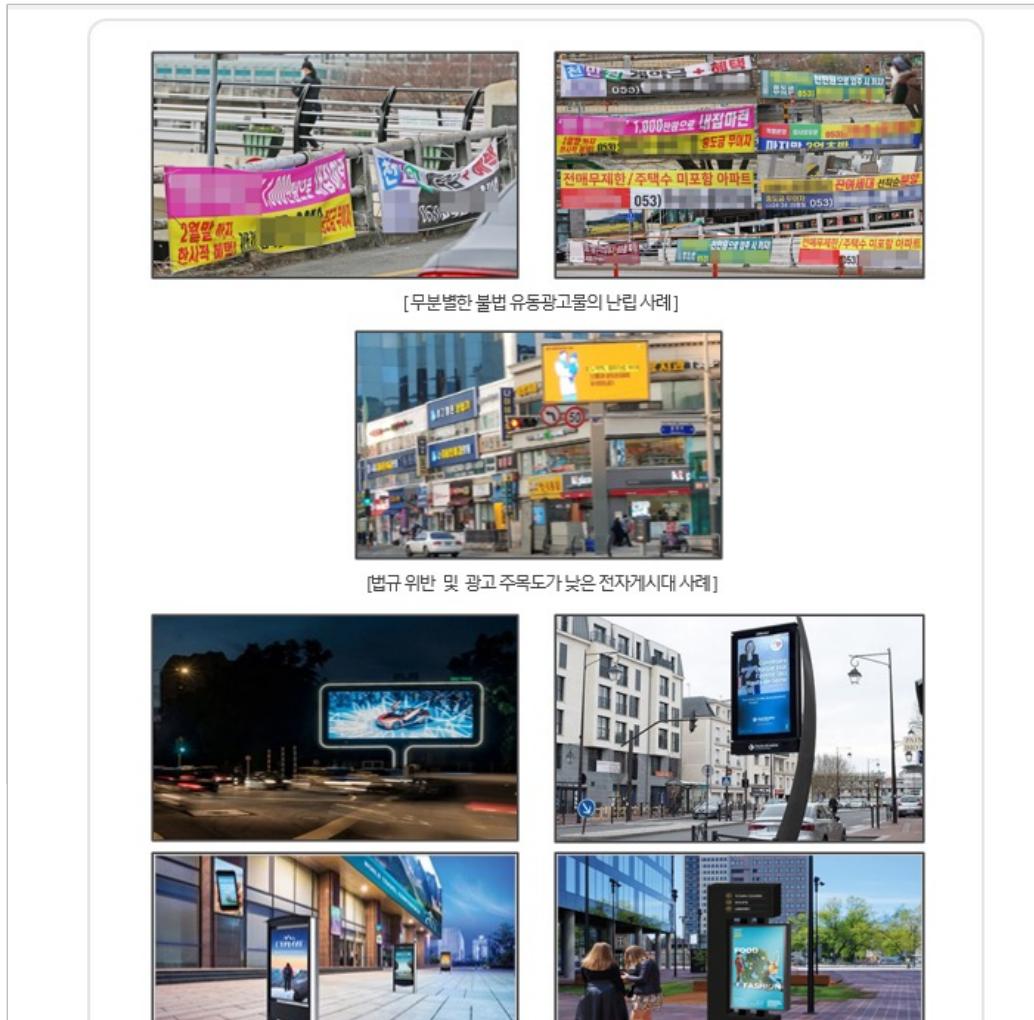
세부 가이드라인

3. 가이드라인 사용법

4) 세부 가이드라인

③ 표/이미지

해당 단계에서 참고 이미지 및 관련 내용 수록



세부 가이드라인

| 분류 측정기준 | 적용 시간 | 기준값 | 조명 환경 관리 구역 | | | | 단위 |
|------------|---------------------|-----|-------------|-----------|------------|------------|----------|
| | | | 제 1종 | 제 2종 | 제 3종 | 제 4종 |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24:00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m^2 |
| | 24:00 ~해뜨기 전 60분 |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

세부 가이드라인

3. 가이드라인 사용법

5) 참고 자료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참고(법 제도, IT 용어, 기타 업무 자료 등)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수록

① 법 제도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관련 법 제도 수록

| 번호 | 법령 |
|----|---|
| 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
| 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 | 소상공인기본법 |

•
•
•

② IT 용어

전자게시대 연관 IT 용어 설명으로 ㄱ, ㄴ / A, B 순으로 수록

가이드라인 활용 중 관련 용어는 IT 용어집에서 확인 가능

| 분류 | 용어 | 분류 | 용어 | 분류 | 용어 |
|----|---------|----|-------------|----|------------|
| ㄱ | 가시각 | ㅋ | 컨버터 | M | LED 모듈 |
| | 감마 보정 | | 컴포넌트 신호 | | MP3 |
| | 근거리 통신망 | | 코덱 | | MP4 |
| ㄴ | 내환경성 시험 | ㅌ |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 | MPEG |
| | 내환경성 | | 통신 규약 | | MPEG-1 |
| | 니트 | | 트래픽 | | MPEG-2 AAC |

•
•
•

③ 참조

전자게시대 업무 추진 시 관련 참고 자료 목록 수록

| 번호 | 참조 자료 |
|----|---------------------------------------|
| 1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
| 2 | 도로점용허가신청서_제출용(샘플) |
| 3 |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해설서) |

•
•
•

I. 전자게시대 개요

- 전자게시대 정의
-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프로세스

I. 전자계시대 개요

1. 전자계시대 정의

1. 전자계시대 정의

1) 전자계시대 법 규정

● 전자계시대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거나 필요시 제한적 지역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지주 이용 디지털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
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
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신설 2016.7.6, 2021.12.14>



[전자계시대 예시]

1. 전자계시대 정의

1) 전자계시대 법 규정

● 전자계시대 광고주

a.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범위 >

-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b.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광고주

< 광고주 자격 >

- 「소상공인기본법」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의 경우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며, 이외의 업종 5명 미만으로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1항 연 평균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 참조
- 「전통시장법」 제2조에 전통시장 광고주 자격 규정

● 디지털광고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디지털광고물 예시 : LED 디스플레이]



[디지털광고물 예시 : LCD 디스플레이]

1. 전자게시대 정의

1) 전자게시대 법 규정

● 전자게시대 광고 콘텐츠 유형

a 공공목적광고 콘텐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광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 및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들을 홍보
 -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
 -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교통시설의 정비·점검 업무



[공공목적 광고 콘텐츠]

b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광고 콘텐츠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상업 광고 콘텐츠 >

- 소상공인·전통시장 종사자 및 단체의 자사 상품, 서비스, 행사 등을 제작하여 전자게시판에 게시료를 지불하는 상업 광고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의 홍보 광고 콘텐츠]

1. 전자계시대 정의

1) 전자계시대 법 규정

● 전자계시대 광고 콘텐츠 보안

a 전자계시대 정보보안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8조

-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 “침해사고”란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 · 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화상 ·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



[편의점 디스플레이 해킹 사례]



[전광판 해킹 사례]

b 전자계시대 유해 콘텐츠 보안

[청소년 보호법] 제1조, 제2조 제2호 마목, 바목, 차목, 제19조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함을 목적
- 광고선전 제한 제19조 제1항과 제2항 제3항 근거



[정보 보안 미흡 유해 콘텐츠 사례]

1. 전자게시대 정의

2)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기준

- 설치·운영가능 지역

| 관련 법 | 설치·운영가능 지역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지역 · 공업지역 |
| 관광진흥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 시 · 도 조례 표준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역 · 지하철역 · 공항 · 항만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시 ·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참조

「시도 조례 표준안」 제6조제3항 참조

- 설치 방법

- 전자게시대 설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함
- 전기공사설계 및 시공:[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해야함
- 정보통신공사설계 및 시공:[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준수해야함

[전자게시대 허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 12호 참조

[전자게시대 다수 설치]

- 수평거리 100m 이상으로서의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제4호 참조



[다수 설치 유사 사례]

1. 전자게시대 정의

2) 전자게시대 설치 조건 및 운영 기준

● 설치 방법

[전자게시대 설치 높이]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는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광고물의 아래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3호 참조



[10m 이상 설치 사례]

[전자게시대 설치 위치]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다만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경우,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 거리 30m 이내 지역은 설치 가능하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4호 참조



[법규 위한 설치 사례]

1. 전자게시대 정의

2) 전자게시대 설치 조건 및 운영 기준

● 표출 방법

- 광고내용의 표시 면적: $12m^2$ 이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제5호 참조
- 광고 내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 내용 변경 가능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참조
-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빛 방사 하용 기준

|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 환경 관리 구역 | | | | 단위 |
|------------|----------------------|-----|-------------|-----------|------------|------------|----------|
|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24:00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m^2 |
| | 24:00 ~ 해뜨기 전 60분 |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5호

[빛공해 방지법] 제11조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참조



[빛공해 사례]

- 광고 표출은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됨
- 정지화면의 기준은 한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로 규정

[사도 조례 표준안] 제6조제3항3호 참조

● 광고 게재 비용

- 공공목적의 광고: 무료 방송 또는 자체 편성 광고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참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 공공목적의 광고 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제5호 참조

I. 전자게시대 개요

2.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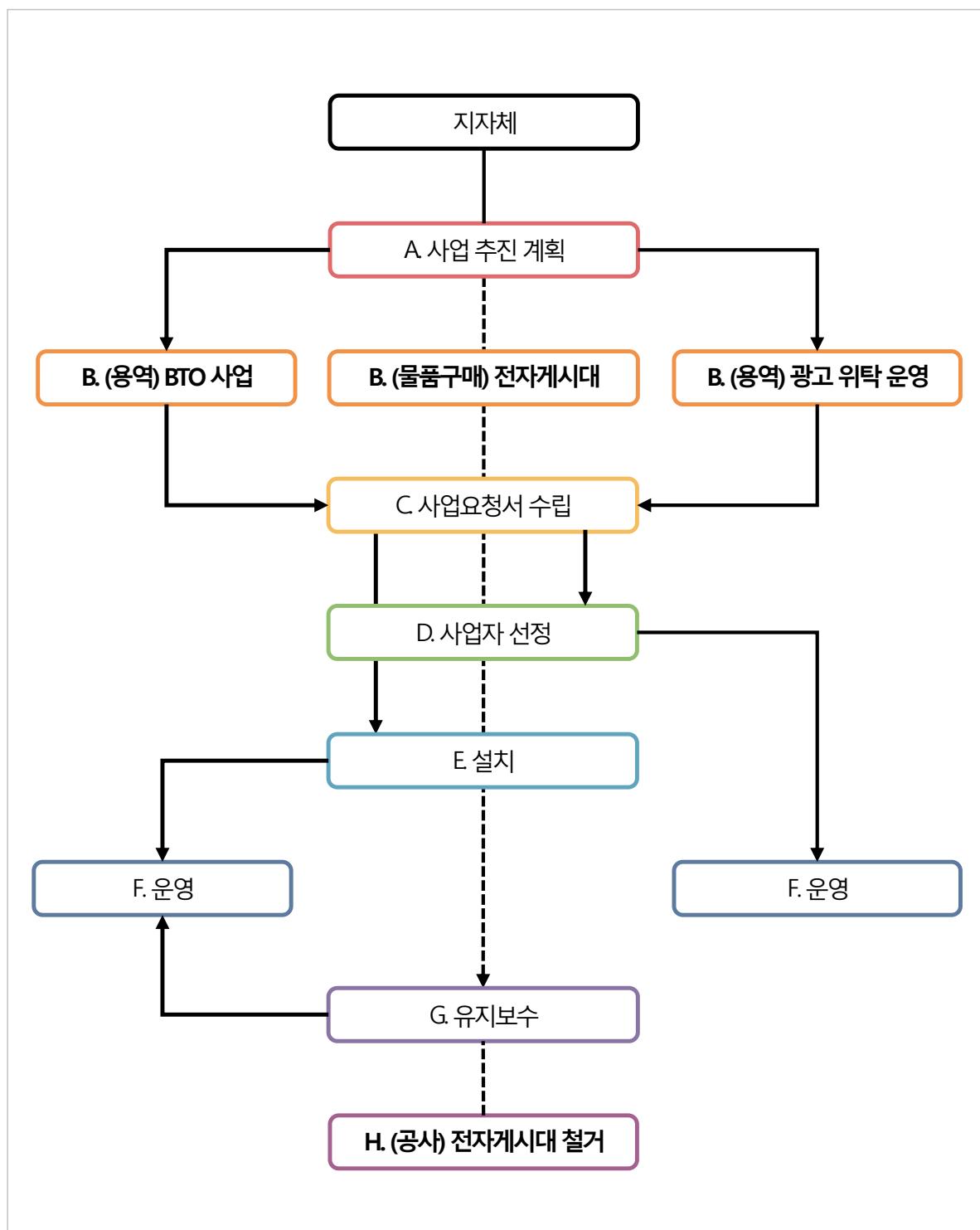
2.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프로세스

1) 사업 종류

전자게시대 사업 유형은 4가지 구분

1(물품)구매, 2(용역)광고위탁, 3(용역)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 4(공사) 철거로
나라장터에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과 광고위탁은 용역 물품구매는 물품, 철거는 시설물 공사로 분류됨

아래는 전자게시대 사업추진에서 철거까지의 과정을 유형별 도식화 함



2.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프로세스

2)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사업)

●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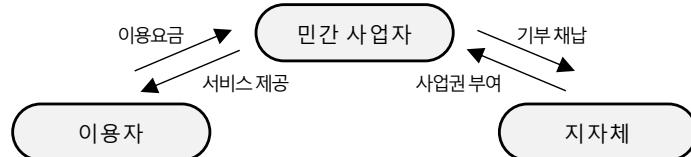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6.1.6., 2017.2.8>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 사업 개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방식
민간사업자는 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수익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적용



[BTO 사업 구조]

BTO 사업 방식 추진 시 물품이 기부채납되어 지자체의 자산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물품 구매 관련 규정 준수 필요

● 자격 요건

수익형 민자사업자의 자격 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됨

- 1) 광고 운영을 위해서는 옥외광고자격을 갖춘 기업
- 2) 디지털광고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함
- 3) 전자게시대 제작 설치를 위해서는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안내전공판 자격,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자격을 갖춘 기업

옥외광고자격을 갖춘 기업을 대표사로 하여 소프트웨어 자격 및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안내전공판,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 또는 협력 관계 증명을 갖추어야 함

2.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프로세스

2)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 (BTO 사업)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광고 영업 | 옥외광고법 | - 옥외광고사업 등록 |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 - 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 사업(1469) |
| 기업 자격 | 판로지원법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 지방계약법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

[BTO 사업 대표사 자격 요건]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하드웨어 | 나라장터 제조 물품 등록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
| | 판로지원법 | - 안내전광판(5512190301)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1426) |
| 설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
| | 전기공사업법 | - 전기공사업(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제조 설치 컨소시엄 또는 협업 기업 자격 요건]

* 대표사가 소프트웨어 자격을 충족할 경우 제조설치자격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2.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프로세스

3) 물품 구매 사업 (PD)

● 법적 근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1항 제1호

-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 사업 개요

조달청 구매로 내자(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방식으로 추진

전자게시대 물품은 주로 이용 디지털광고물 설치를 위한 1) 자주용 구조 기구물, 2) 디지털 디스플레이, 3) 관련 주변기기와 4) 통신 네트워크 장비 및 디지털광고물 운영을 위한 5)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6) 컴퓨터 일체를 포함

디지털디스플레이에는 소자 종류에 따라 옥외용 LCD 디스플레이와 LED 디스플레이로 디스플레이 표시 면적 12m² 이내의 제품

● 자격 요건

전자게시대는 구매 및 설치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제작, 소프트웨어 납품, 통신 네트워크 장비 공급, 전기 통신 공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 참여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하드웨어 | 나라장터 제조 물품 등록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
| | 판로지원법 | - 안내전광판(5512190301)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1468)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1426) |
| 설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
| | 전기공사업법 | - 전기공사업(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0036) |
| 기업 자격 | 판로지원법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 지방계약법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

2.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프로세스

4) 광고 위탁 사업(AD)

- 법적 근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1항제3항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 ③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6_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 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 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 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 자격취득자

비고 1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한다.

- 사업 개요

광고위탁 용역사업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을 광고주로 한 광고 영업을 수행할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 후
옥외광고영업과 전자게시대 광고 게재 및 운영 관리 담당

- 자격 요건

옥외광고사업자격을 갖춘 자로 디지털광고물을 운영을 위해 콘텐츠 제작 및 소프트웨어 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함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광고 영업 | 옥외광고법 | - 옥외광고사업 등록 |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 - 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 사업(1469) |
| 기업 자격 | 판로지원법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제20조) |

[전자게시대 물품 구매 설치 자격 요건]

2. 전자계시대 설치·운영 프로세스

5) 철거 공사(DM)

● 사업 개요

전자계시대가 내구연한 및 성능 한계로 더 이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거 결정

● 자격 요건

전기, 정보통신 기기, 구조물 철거 공사, 도로 포장 등등의 공사 범위에 따라 관련 자격 소지자 참여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철거 | 건설업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0012) |
| | 전기공사업법 | - 전기공사업(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0036) |
| 기업 자격 | 판로지원법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제20조) |

2.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프로세스

6) 전체 단계

알파벳 순(A~H)으로 설치·운영 철거 각 단계별로 표시
사업 코드와 조합하여 단계별 사업파악에 활용



2.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프로세스

7) 사업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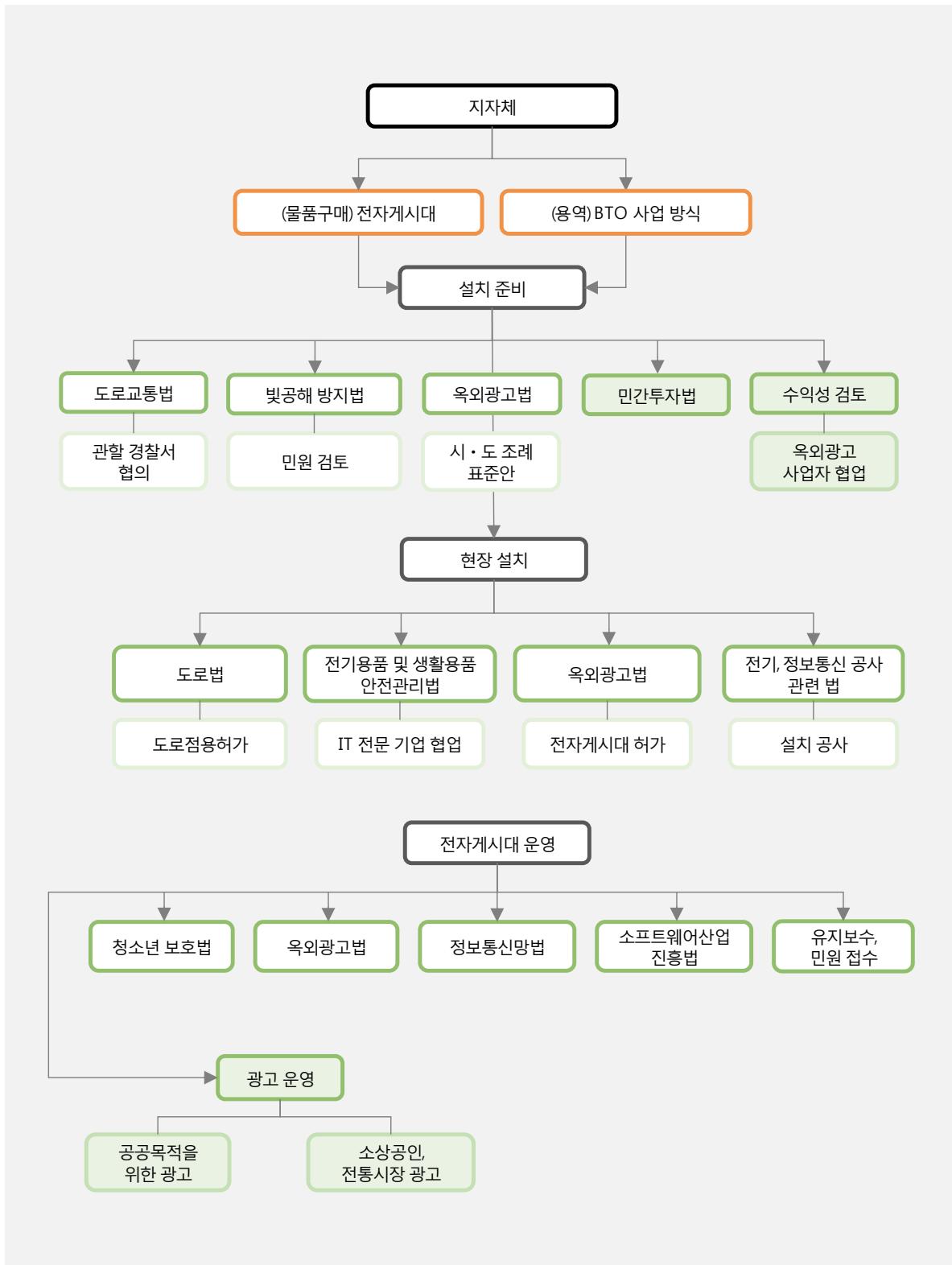
사업에 따른 단계별 과정 제시
사업 코드 + 단계별 코드



2. 전자계시대 설치·운영 프로세스

8) 검토 사항 및 관련 법률

아래 도표는 옥외광고 담당자가 전자계시대 설치운영 관련 업무 단계별 사전 검토 사항 제시
각 단계별 법·관련 기관·부처와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
법 제도 및 설치 장소 검토와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점검 수행



II.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절차 가이드라인

1.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 (BTO)
2. 물품 구매 (PD)
3. 광고 위탁 용역 (AD)
4. 철거 공사 (DM)

Ⅱ.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절차 가이드라인

1.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

BTO (Build Transfer Operation)

- A. 사업 추진 계획
- B. 사업 방식 결정
- C. 사업 요청서 수립
- D. 사업자 선정
- E. 설치
- F. 운영
- G. 유지 보수

BTO-A. 사업 추진 계획

A01 목적수립

- A01-1 광고목적 및 대상
 -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는 광고
- A01-2 도시미관
 -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 방지
 -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
- A01-3 기술
 - 스마트 시티 기술 트렌드에 맞춘 전자계시대 구성

A02 설치검토

- A02-1 옥외광고물 분류
 - 지주를 이용한 간판
- A02-2 설치 장소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 A02-3 설치 방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물품
 - 전기공사업법 준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 전자계시대 다수 설치 / 설치 높이 / 설치 위치
 - 도로 점용
- A02-4 표시 방법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 A02-5 표시 면적
 -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m^2$ 이내
- A02-6 표시 밝기
 - 점멸 /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및 반사 하용 기준
- A02-7 허가 대상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BTO-A. 사업 추진 계획

A03 기대효과



BTO-B. 사업 방식 결정

B01 수익형 민자사업

B01-1

수익형 민자사업

- 법적 근거
- 사업 개요
- 자격 요건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C01 계약방법

C01-1

제한입찰

- 참여 업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입찰

C01-2

협상에 의한계약

- 가격(기술)부문으로 나누어 협상
- 낙찰자 결정 기준

C01-3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

- 업체가 상호 기술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 (2개 업체 제한)
- 대표사: 옥외광고사업등록법인

C02 사업자이행조건

C02-1

자격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 중소 기업·소상공인 증명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사업 등록 법인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 전기공사 등록한 업체 (협력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 (협력사)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 (협력사)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협력사)

C02-2

책임범위

-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투자, 이익으로 투자비 회수
-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운영시스템 등은 제안사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설치
- 위탁운영에 의한 수익금으로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충당
- 시설물 설치 및 시설운영에 따른 유지보수책임을 부담

C03 검토사항

C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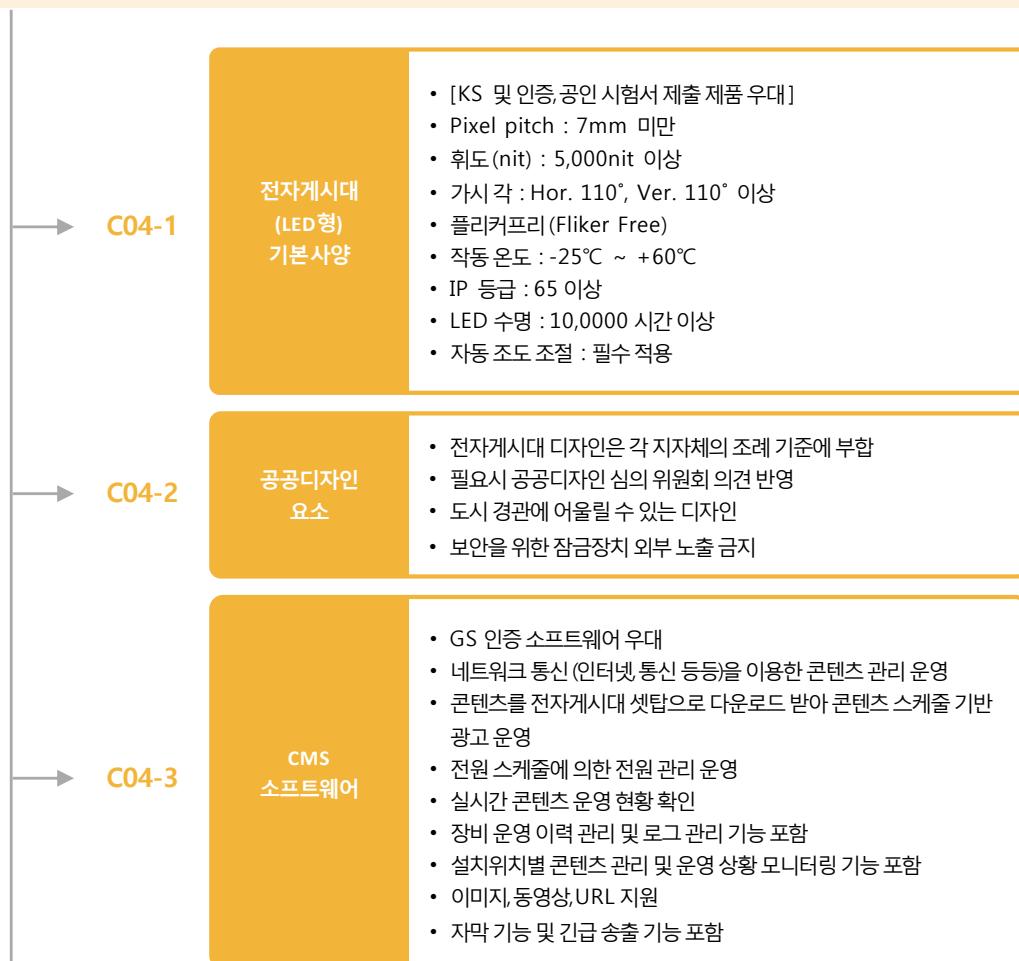
위치선정

- 상업지역, 공업지역
-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철도역 · 지하철역 · 공항 · 항만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시 ·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 설치 장소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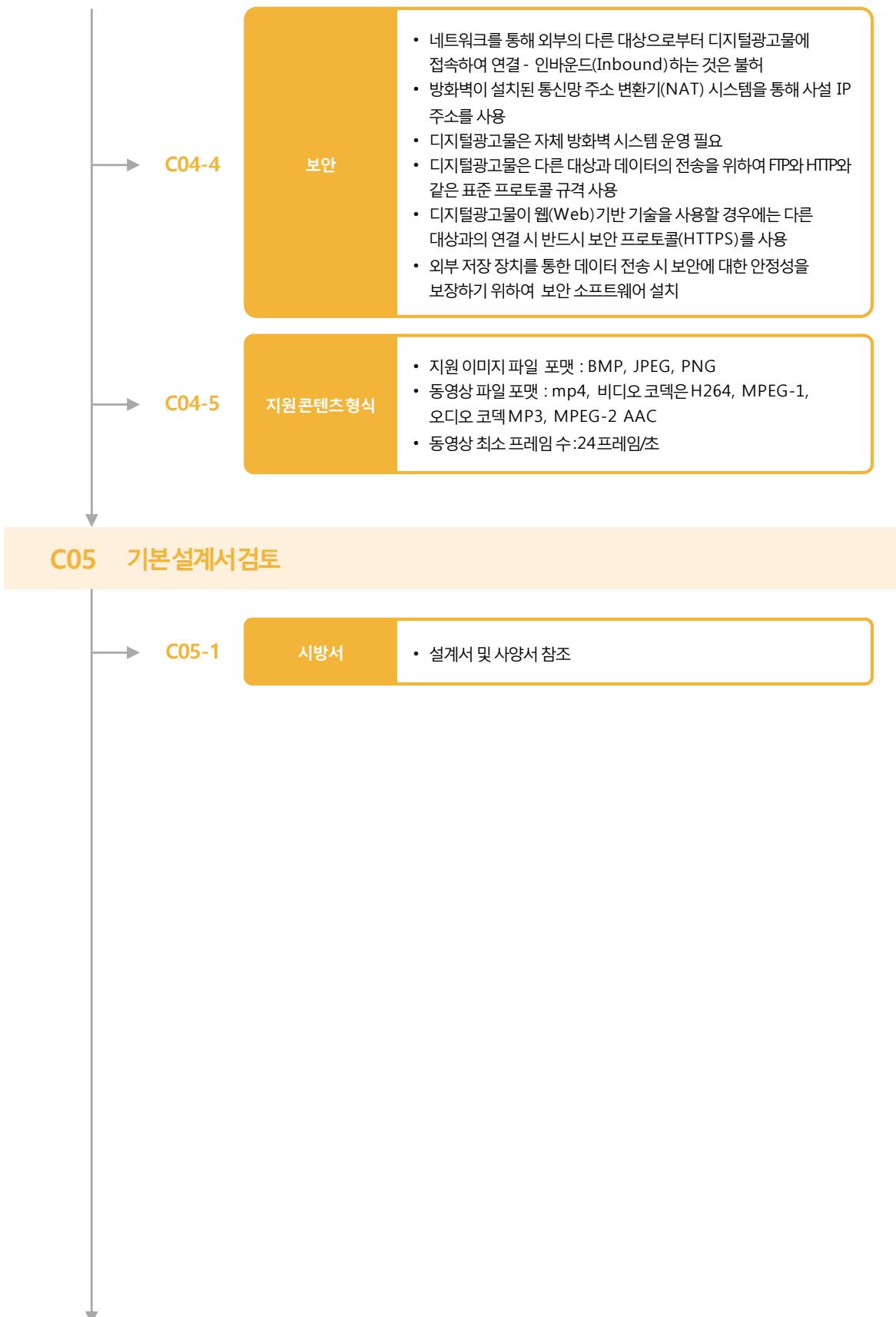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C04 전자계시대 기본 사양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BTO-D. 사업자 선정

D01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제출 서류

D01-1

입찰참가 등록 서류

-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응모자 등록용) 및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신고필증 등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D01-2

구비서류
(평가자료)

- 일반현황 및 연혁
- 전자계시대 운영사업 수행실적 증명자료
- 기술인력 및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신용평가증명서
- 업체 경영상태 확인서(또는 공인회계사가 증명하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 신인도 증빙자료 등

D02 평가위원구성(협상에의한계약)

D02-1

구성인원

- 전문 평가위원 구성은 3배수 풀 구성 후 7인 선정

D03 평가항목

D03-1

소프트웨어운영

- C04-3 / C04-4 준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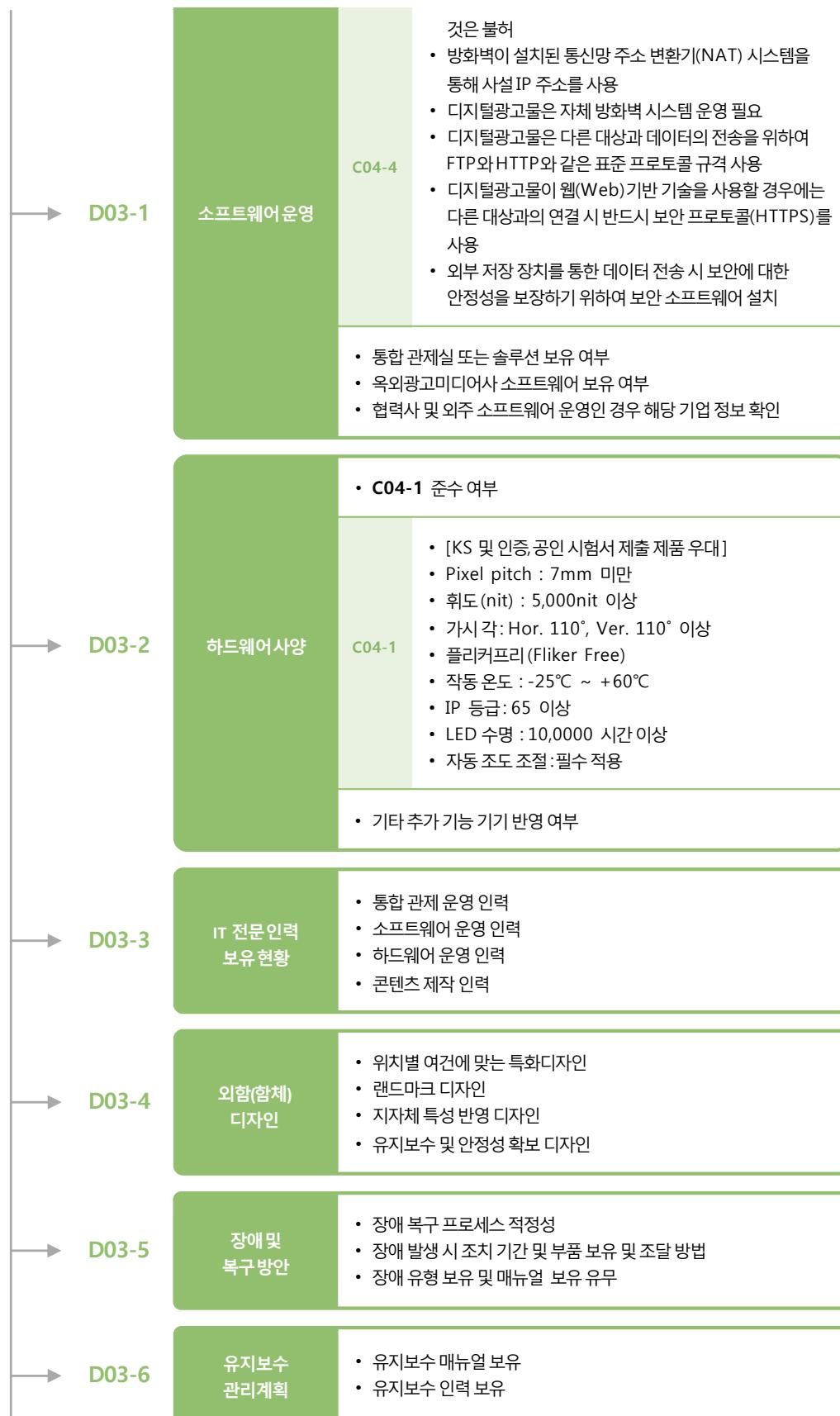
C04-3

- GS 인증 소프트웨어 우대
- 네트워크 통신 (인터넷 통신 등등)을 이용한 콘텐츠 관리 운영
- 콘텐츠를 전자계시대 셋탑으로 다운로드 받아 콘텐츠 스케줄 기반 광고 운영
- 전원 스케줄에 의한 전원 관리 운영
- 실시간 콘텐츠 운영 현황 확인
- 장비 운영 이력 관리 및 로그 관리 기능 포함
- 설치위치별 콘텐츠 관리 및 운영상황 모니터링 기능 포함
- 이미지, 동영상, URL 지원
- 자막 기능 및 긴급 송출 기능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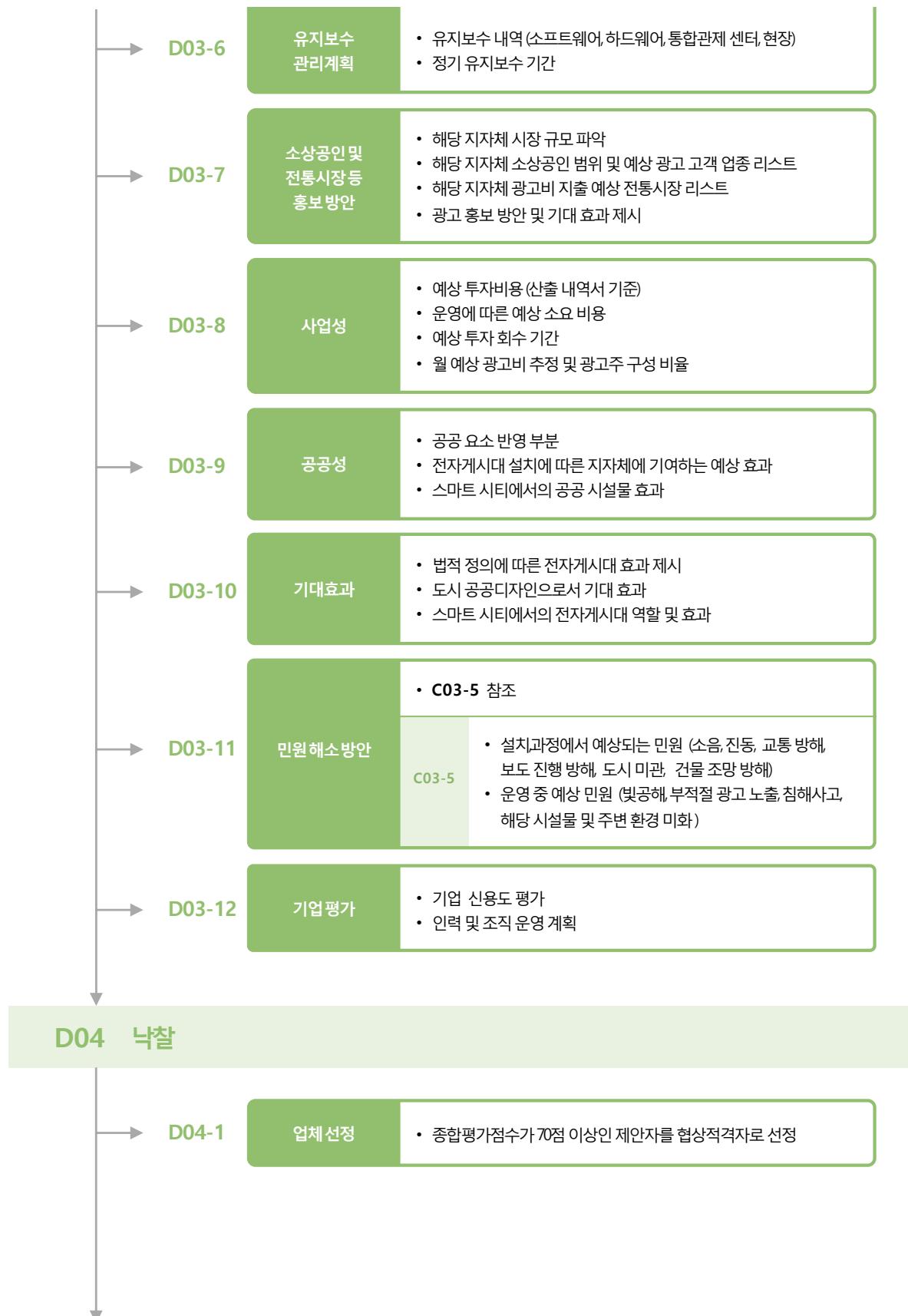
C04-4

-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디지털광고물에 접속하여 연결 - 인바운드(Inbound)하는

BTO-D. 사업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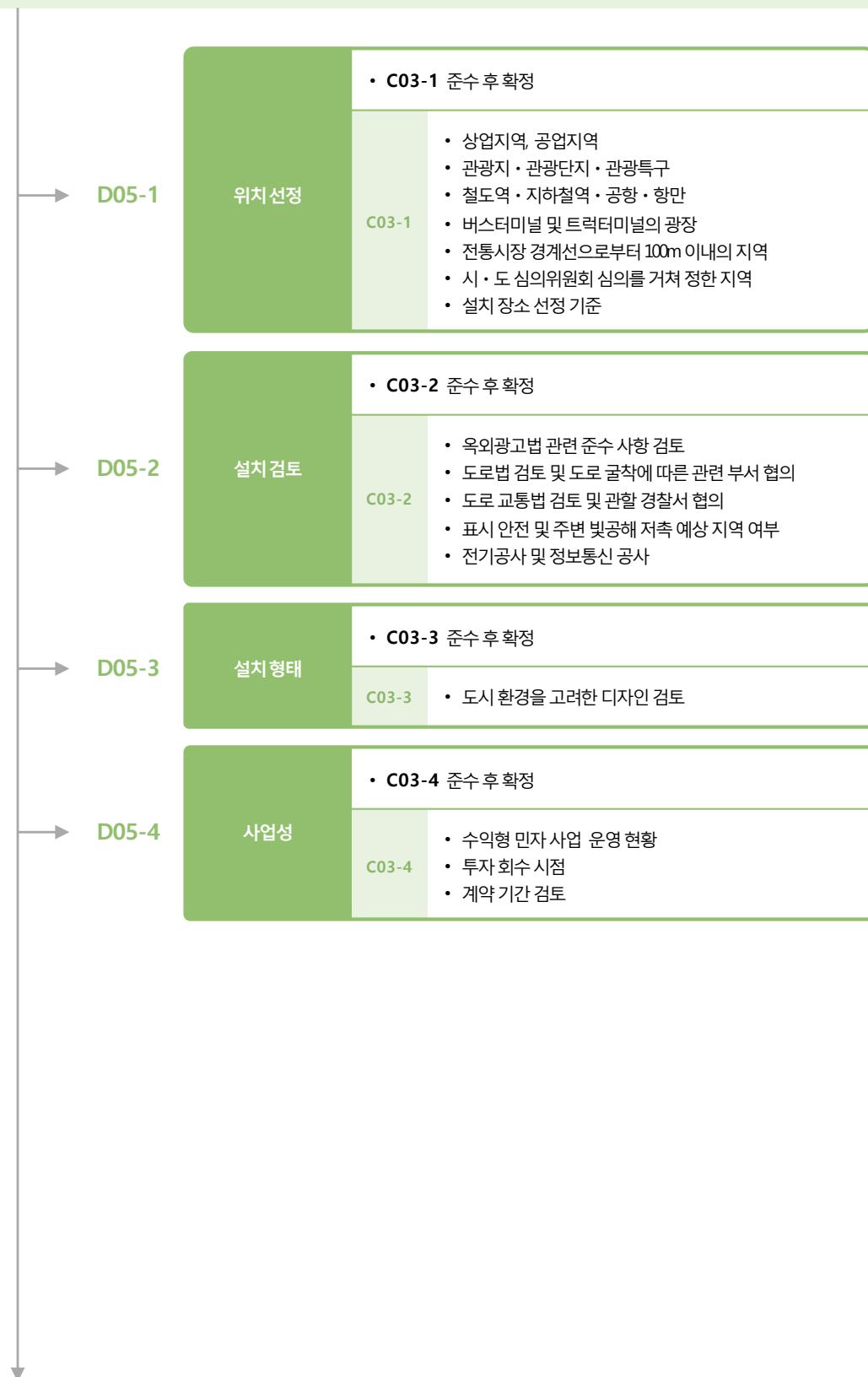


BTO-D. 사업자 선정



BTO-D. 사업자 선정

D05 위치획정



BTO-E. 설치

E01 실시설계서

E01-1

전자계시대 기기 및 설치

- 설치 장소 지적도 및 설계도서
- 전자계시대 시스템 구조도 (네트워크, 기기간 연계, 콘텐츠 흐름)
- 전자계시대 핵심 설계 도면
- 현장 지적도 및 공사 계획 및 설치 도면
- (필요시) 구조 계산 및 설계도서

E02 법제도

E02-1

관련 법 심의 및 신고, 허가

- 옥외광고법 검토 완료
- 경찰서 협의 승인
- 도로 점용 허가
- 빛공해방지법 검토 완료

E03 민원처리

E03-1

해결방안 및 프로세스

C03-5 참조

- C03-5
- 설치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소음, 진동, 교통 방해, 보도 진행 방해, 도시 미관, 건물 조망 방해)
 - 운영 중 예상 민원(빛공해, 부적절 광고 노출, 침해사고, 해당 시설물 및 주변 환경 미화)

E04 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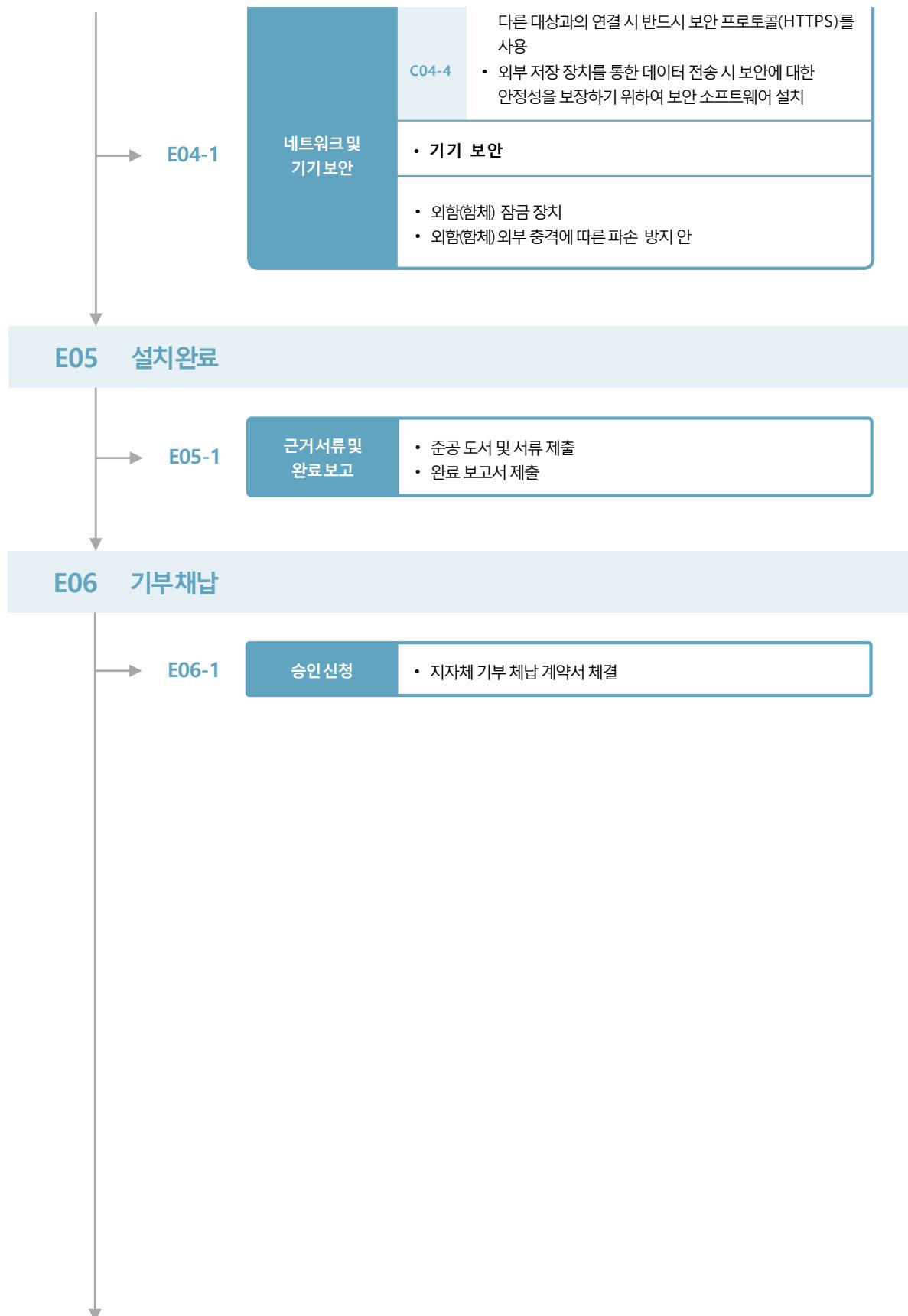
E04-1

네트워크 및 기기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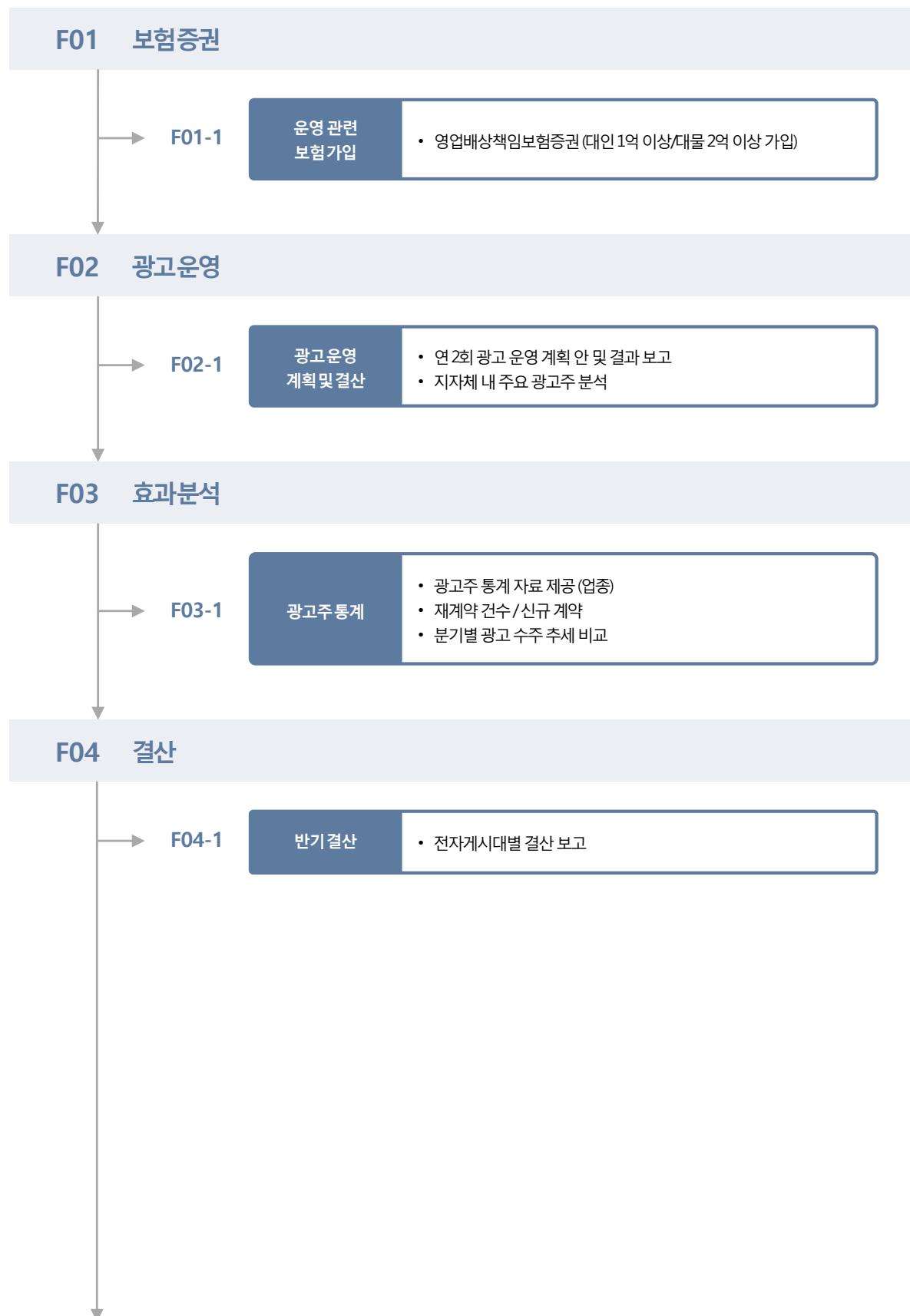
C04-4 참조

- C04-4
-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디지털광고물에 접속하여 연결 - 인바운드(Inbound) 하는 것은 불허
 - 방화벽이 설치된 통신망 주소 변환기(NAT) 시스템을 통해 사설 IP 주소를 사용
 - 디지털광고물은 자체 방화벽 시스템 운영 필요
 - 디지털광고물은 다른 대상과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FTP와 HTTP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 규격 사용
 - 디지털광고물이 웹(Web)기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BTO-E. 설치



BTO-F. 운영



BTO-G. 유지 보수



1.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 (BTO)

- 프로세스 핵심 코드**

BTO-A. 사업 추진 계획

| | | |
|-----|------|----|
| A01 | 목적수립 | 53 |
| A02 | 설치검토 | 56 |
| A03 | 기대효과 | 67 |

BTO-B. 사업 방식 결정

| | | |
|-----|---------|----|
| B01 | 수익형민자사업 | 68 |
|-----|---------|----|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 | | |
|-----|------------|-----|
| C01 | 계약방법 | 70 |
| C02 | 사업자이행조건 | 73 |
| C03 | 검토사항 | 82 |
| C04 | 전자계시대 기본사양 | 97 |
| C05 | 기본설계서검토 | 100 |

BTO-D. 사업자 선정

| | | |
|-----|-------------------|-----|
| D01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제출서류 | 101 |
| D02 | 평가위원구성(협상에 의한 계약) | 102 |
| D03 | 평가항목 | 103 |
| D04 | 낙찰 | 109 |
| D05 | 위치확정 | 110 |

1.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 (BTO)

● 프로세스 핵심 코드

BTO-E. 설치

| | | |
|-----|-------|-----|
| E01 | 실시설계서 | 114 |
| E02 | 법제도 | 115 |
| E03 | 민원처리 | 117 |
| E04 | 보안 | 118 |
| E05 | 설치완료 | 119 |
| E06 | 기부채납 | 120 |

BTO-F. 운영

| | | |
|-----|------|-----|
| F01 | 보험증권 | 121 |
| F02 | 광고운영 | 121 |
| F03 | 효과분석 | 122 |
| F04 | 결산 | 122 |

BTO-G. 유지 보수

| | | |
|-----|------|-----|
| G01 | 민원 | 123 |
| G02 | 유지보수 | 123 |
| G03 | 고장신고 | 124 |
| G04 | 재난재해 | 124 |

BTO-A. 사업 추진 계획

A01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사업 추진 계획(A) | 목적수립

전자게시대 목적 수립은 공공 목적 광고 표시/도시 미관/새로운 기술 적용 옥외광고물

▶ A01-1. 광고목적 및 대상

-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는 광고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 제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하거나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신설2016.7.6., 2021.12.14.>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전통시장법]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BTO-A. 사업 추진 계획

▶ A01-2. 도시 미관

-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 방지
- 쾌적한 거리문화조성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 사례]



[법규 위반 및 광고 주목도가 낮은 전자게시대 사례]



[해외 거리 문화 조성 사례]

BTO-A. 사업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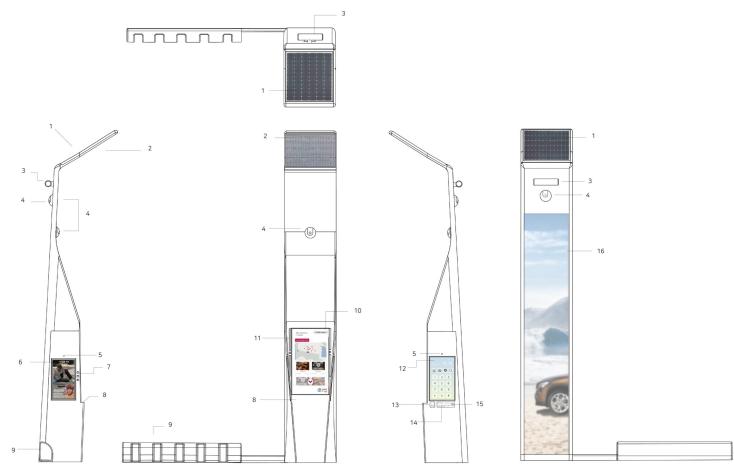
▶ A01-3. 기술

- 스마트 시티 기술 트렌드에 맞춘 전자계시대 구성

< 참고 사항 - 트렌드 >

트렌드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된 공공목적의 광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보 중심의 공공 미디어 서비스가 반영된 전자계시대가 필요함

| | | |
|-----|--------------------|-----------------------|
| Ex) | 1 태양열 전지 패널 | 9 킥보드 거치대 |
| | 2 스마트 가로등 | 10 도시·관광 정보 & 길 찾기 |
| | 3 IoT sensor box | 11 스피커, 마이크 |
| | 4 CCTV 카메라 | 12 도시 주요 기관 정보, 검색 기능 |
| | 5 화상 통화용 카메라 | 13 전화 |
| | 6 공공 정보 서비스 | 14 결제 기기 |
| | 7 긴급 상황 시 원격 연결 통신 | 15 아날로그 다이얼 |
| | 8 충전 박스(스마트폰, 킥보드) | 16 광고 디스플레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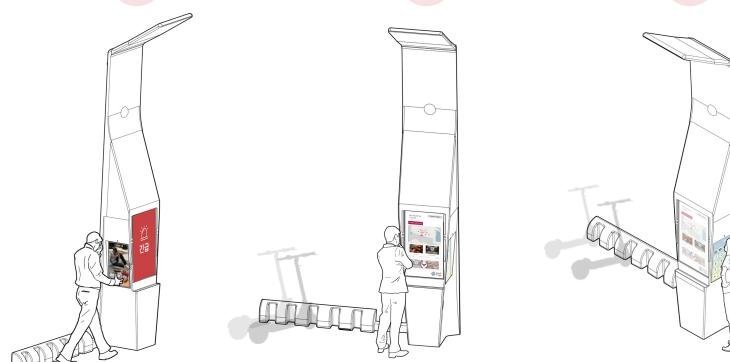


Concept Design by M&M Networks

공공 서비스

도시 관광 정보

전화 서비스



Concept Design by M&M Networks

[스마트시티에서의 전자계시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컨셉 이미지 예시]

BTO-A. 사업 추진 계획

A02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사업 추진 계획(A) | 설치 검토

전자계시대 설치·운영은 공공 목적 광고/도시 미관/새로운 ICT 적용 검토/
디지털 옥외광고물로 접근 필요

▶ A02-1. 옥외광고물 분류

- 지주를 이용한 간판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8.5.28, 2019.4.30>

6. 지주(□)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지주형 전자계시대 1]



[지주형 전자계시대 2]



[지주형 전자계시대 3]

▶ A02-2. 설치 장소

- 상업지역·공업지역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 제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BTO-A. 사업 추진 계획

1. 전자계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다. 그 밖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사도 조례 표준안]

제 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전자계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 다.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계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A02-3. 설치 방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물품 ----- 1
- 전기공사업법 준수 ----- 2
-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 3
- 전자계시대 다수설치 / 설치 높이 / 설치 위치 ----- 4
- 도로점용 ----- 5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29조 제 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2. 전자계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계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계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③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BTO-A. 사업 추진 계획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A02-3. 설치 방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물품 ----- 1
- 전기공사업법 준수 ----- 2
-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 3
- 전자게시대 다수 설치/ 설치 높이/ 설치 위치 ----- 4
- 도로 점용 ----- 5

1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정의)

6.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인증 등)

-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2

[전기공사업법]

제 2조(정의)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3. “공사업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BTO-A. 사업 추진 계획

제4조(공사업의 등록)

-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 A02-3. 설치 방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물품 ----- 1
- 전기공사업법 준수 ----- 2
-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 3
- 전자계시대 다수 설치/ 설치 높이/ 설치 위치 ----- 4
- 도로 점용 ----- 5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제한)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 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BTO-A. 사업 추진 계획

▶ A02-3. 설치 방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물품 ----- ①
- 전기공사업법 준수 ----- ②
-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 ③
- 전자계시대 다수 설치/ 설치 높이/ 설치 위치 ----- ④
- 도로 점용 ----- ⑤

④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③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 제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4. 전자계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애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BTO-A. 사업 추진 계획

▶ A02-3. 설치 방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물품 ----- ①
- 전기공사업법 준수 ----- ②
-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 ③
- 전자게시대 다수 설치/ 설치 높이/ 설치 위치 ----- ④
- 도로 점용 ----- ⑤

⑤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匝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23조(도로관리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 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의 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BTO-A. 사업 추진 계획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 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17.12.5., 2021.1.5>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설치위치·규격·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BTO-A. 사업 추진 계획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 · 점용장소 · 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신설 · 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 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BTO-A. 사업 추진 계획

▶ A02-4. 표시 방법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③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④ 광고물 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6조(전자계시대의 표출관리)

-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계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계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2. 전자계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계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BTO-A. 사업 추진 계획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계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A02-5. 표시 면적

-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m^2$ 이내

[옥외광고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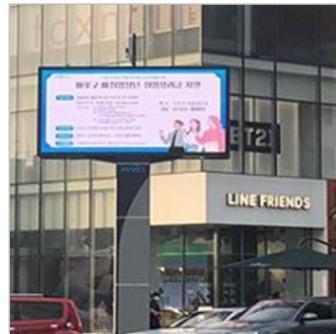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29조 제 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6비율–서울 서초구]



[3:4비율–서울 마포구]



[1:1 비율–부산 동구]

▶ A02-5. 표시 밝기

- 점멸/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및 반사 하용 기준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BTO-A. 사업 추진 계획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26>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도)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 구분 측정기준 | 적용 시간 | 기준값 | 조명 환경 관리 구역 | | | | 단위 |
|------------|-------------------------|-----|-------------|-----------|------------|------------|----------|
| | | | 제 1종 | 제 2종 | 제 3종 | 제 4종 |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24:00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m^2 |
| | 24:00 ~해뜨기 전 60 분 |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

▶ A02-7. 허가 대상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8.5.28., 2019.4.30>

6. 지주(□) 이용 간판·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개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BTO-A. 사업 추진 계획

A03**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사업 추진 계획(A) | 기대효과**

수익형 민자 사업 추진에 따른 전자계시대 운영 기대 효과는 법 제도, 재정 건전, 전문성 등

▶ A03-1. 법률 기준

• 법 제도 측면 전자계시대 설치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

- 지자체 홍보 및 공익 광고
-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마케팅 극대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 불법 광고물의 난립 방지
- 도시미관 개선

▶ A03-2. 수익형 민자 사업

• 민자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

- 민간의 우수한 기술 및 자본을 통해 사업 추진
- 투자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 전문 기업 참여로 운영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BTO-B. 사업 방식 결정

B01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사업방식결정(B) | 수익형 민자 사업

수익형 민자 사업은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근거함

▶ B01-1. 수익형 민자 사업

- 법적 근거 1
- 사업 개요 2
- 자격 요건 3

1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6.1.6., 2017.2.8>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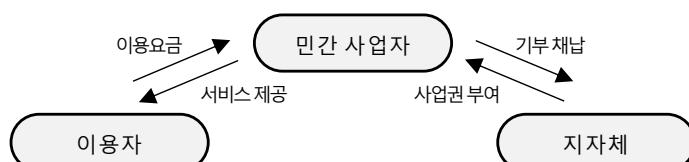
[민간투자사업(BTOBTI) 회계처리지침]

3.(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③)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간사업자는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

- ②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방식 민간사업자는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적용



BTO 사업 방식 추진 시 물품이 기부채납 되어 지자체의 자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물품 구매 관련 규정 준수 필요

BTO-B. 사업 방식 결정

▶ B01-1. 수익형 민자 사업

- 법적 근거 ----- ①
- 사업 개요 ----- ②
- 자격 요건 ----- ③

③

수익형 민자 사업자의 자격 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됨

- 1) 광고 운영을 위해서는 옥외광고자격을 갖춘 기업
- 2) 디지털광고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함
- 3) 전자케시대 제작, 설치를 위해서는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안내전광판 자격,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자격을 갖춘 기업

옥외광고자격을 갖춘 기업을 대표사로 하여 소프트웨어 자격 및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안내전광판,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 또는 협력 관계 증명을 갖추어야 함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광고 영업 | 옥외광고법 | - 옥외광고사업 등록 |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 - 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 사업 (1469) |
| 기업 자격 | 판로지원법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 지방계약법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가능 |

[BTO 사업 대표사 자격 요건]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하드웨어 | 나라장터 제조 물품 등록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4511189301) |
| | 판로지원법 | - 안내전광판 (5512190301)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1426) |
| 설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
| | 전기공사업법 | - 전기공사업 (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 (0036) |

[제조 설치 컨소시엄 또는 협업 기업 자격 요건]

* 대표사가 소프트웨어 자격을 충족할 경우 제조설치 자격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C01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사업 요청서 수립(C) | 계약방법

수익형 민자 사업은 옥외광고를 중심으로 ICT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으로
관련한 계약 방법 제시

▶ C01-1. 제한 입찰

- 참여 업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입찰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12.24>

▶ C01-2.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기술)으로 나누어 협상

- 낙찰자 결정 기준

1

2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
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
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 입
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2016.9.13>

⑨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C01-2.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기술)으로 나누어 협상 ----- 1
- 낙찰자 결정 기준 ----- 2

2

[참고 자료] *별첨 19: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1절 통칙

1. 목적

이 예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나.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 C01-3. 공동 보급 (분담 이행 방식)

- 업체가 상호 기술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2개 업체 제한)
- 대표사: 옥외광고사업등록법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개정 2009.4.8>
-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제7조(책임)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0>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 <개정 2009.4.8.>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공동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9.4.8, 단서신설 2014.1.10.>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5인 이하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C02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사업 요청서 수립(C) | 사업자 이행 조건

자본 투자 능력과 옥외광고사업 자격과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을 위한 ICT 관련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협력사에 대한 증빙 및 기업 역량 제시 필요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1
- 중소기업·소상공인 증명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3
- 옥외광고사업 등록 법인 4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5
- 전기공사 등록한 업체(협력사) 6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협력사)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협력사) 8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협력사) 9

1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

(□)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
 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
 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
 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 1
- 중소 기업·소상공인증명 -----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 3
- 옥외광고사업 등록 법인 ----- 4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 5
- 전기공사 등록한 업체(협력사) ----- 6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협력사) -----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협력사) ----- 8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협력사) ----- 9

3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 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0.10.20.>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설 2018.12.24.>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1
- 중소 기업·소상공인증명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거나 아니한 자 3
- 옥외광고사업 등록 법인 4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5
- 전기공사 등록한 업체(협력사) 6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협력사)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협력사) 8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협력사) 9

4 본 사업을 위해 필수 자격 요건 – 공동 수급 참여 시 대표사 자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5 대표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공동 수급 참여 시 참여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 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문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1
- 중소기업·소상공인 증명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3
- 옥외광고사업 등록 법인 4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5
- 전기공사등록한 업체(협력사) 6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협력사)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협력사) 8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협력사) 9

⑥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외주 용역인 경우 관련 증빙 자료 필요

[전기공사업]

제 2조(정의)

- 1.“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3.“공사업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

-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1
- 중소기업·소상공인 증명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3
- 옥외광고사업 등록 법인 4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5
- 전기공사등록한 업체(협력사) 6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협력사)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협력사) 8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협력사) 9

7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외주 용역인 경우 관련 증빙 자료 필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의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 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설계설명서·공사비명세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 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 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 ①
- 중소 기업·소상공인 증명 ----- ②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 ③
- 옥외광고사업 등록 법인 ----- ④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 ⑤
- 전기공사 등록한 업체(협력사) ----- ⑥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협력사) ----- ⑦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협력사) ----- ⑧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협력사) ----- ⑨

⑧ 전자계시대 물품 구매 시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제품 구매 증빙 자료 필요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2.18.>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 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1
- 중소기업·소상공인 증명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3
- 옥외광고사업 등록 법인 4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5
- 전기공사 등록한 업체(협력사) 6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협력사)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협력사) 8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협력사) 9

⑨ 전자계시대 물품 구매 시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제품 구매 증빙 자료 필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20. 12.29.>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 C02-2. 책임 범위

-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투자 이익으로 투자비 회수
-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운영시스템등은 제안사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설치
- 위탁운영에 의한 수익금으로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총당
- 시설물 설치 및 시설운영에 따른 유지보수책임을 부담

[참고 자료] * 별첨4: 민간투자사업(BTO BTL) 회계처리지침

3.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회계처리

(1) BTO 방식 회계처리

① 회계처리해설

BTO방식에 의해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준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 시 해당 자산이 취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은 자산의 차감계정인 사용수익권으로 계상한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액으로 하되 민간투자비 총액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서 상각한다. 이 경우 취득한 자산의 상각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되 사용수익권 제공기간이 자산 내용연수보다 길 경우 사용수익권 제공기간을 내용연수로 한다. 사용수익권의 상각은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처리한다.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C03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사업 요청서 수립(C) | 검토 사항

전자게시대 설치운영시 위치, 설치 형태, 사업성 그 외 검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C03-1. 위치 설정

- 상업지역, 공업지역 1
-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2
- 철도역 · 지하철역 · 공항 · 항만 3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4
-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5
- 시 ·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6
- 설치 장소 선정 기준

① ②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29조 제 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2016.7.6., 2021.12.14.>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다. 그 밖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③ ④ ⑤

[시·도 조례 표준안]

제 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 다.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 C03-1. 위치 선정

- 상업지역 공업지역 ----- ①
-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②
- 철도역 · 지하철역 · 공항 · 항만 ----- ③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④
-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⑤
- 시 ·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 ⑥
- 설치 장소 선정 기준 ----- ⑥

⑥ 본 자료는 2017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연구 보고서 자료 참조

[디지털사이니지 실증단지 조성 적격성 검토]로 수행기관은 (사)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이다.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 선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 제시

<1. 설치 지역 검토 기준>

| 1차 검토 | 2차 검토 | 최종 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산업, 경제 인구 등 일반현황 • 위치, 주변 환경, 지원시설 • 랜드마크 • 주요 콘텐츠 • 상가협의 민원 접근성, 동선 • 관련 기초자치단체 조례 • 유사사업 추진사례 • 해당지역 광고시장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상징성 • 지역 필요성 • 유동인구 • 설치 가능성 • 운영 안정성 • 민원발생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상징성 • 지역 필요성 • 유동인구 • 타겟 비중 • 설치 용이성 • 운영 안정성 |

| 지역 선정 기준 | 정의 |
|----------|---|
| 지역 상징성 | 사업 모델(사업 테마)을 적용하는데 있어 도시 내에서 해당 지역이 몇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장소인지에 대한 정도 |
| 지역 필요성 | 해당 사업 모델이 지역에서 실제 수요가 있는 사업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콘텐츠에 대한 지역 주민 또는 방문객의 수용 가능성, 활용도, 선호도 등의 정도 |
| 유동인구 | 해당 지역의 일평균 유동인구 수 |
| 타겟 밀집 비중 | 해당지역의 일평균 유동인구 중 해당 비즈모델의 타겟 인구 비중 |
| 설치 용이성 | 설치 가능한 장소가 목표 수량만큼 있고 전기수전 등이 용이하며 기존 거리 시설물의 방해를 받지 않는 정도 |
| 운영 안정성 | 설치 이후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파손, 오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와 민원 발생 소지가 없거나 발생 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 |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2. 지역 검토 방법>

평가테이블에서 각 항목별 배점은 지역 상징성 10점, 지역 필요성 10점, 유동인구 10점, 타겟 비중 6점, 설치용이성 8점, 운영안정성 6점으로서 총 합계 5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의 기준에 따라 검토

| 구분 | 검토 기준 | 평가 방법 | | | | | 배점 |
|-------|--------|--------|--------|--------|--------|--------|----|
|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지역 선정 | 지역 상징성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10 |
| | 지역 필요성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10 |
| | 유동인구 | 20만 이상 | 15만 이상 | 8만 이상 | 5만 이상 | 5만 미만 | 10 |
| | 타겟 비중 | 3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15% 이상 | 15% 미만 | 6 |
| | 설치 용이성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8 |
| | 운영 안정성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6 |
| 소계 | | | | | | | 50 |

[지역 검토 평가 예시]

<3. 2016년 광고자유표시구역 선정 공모에서 활용한 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평가 내용 | 평가항목 |
|-----------|-------------------|-------|---|
| 정량적 (30%) | 광장의 면적/ 상업 중심지 면적 | 25 | 광장은 설치된 광고물을 공유하고 문화적 활동이 일어나기 위한 기본 요소 |
| | 유동인구 | 20 | 광고물에 대한 사업성을 위해 유동인구 많은 지역 선정 |
| | 관광 인프라 | 15 | 운동, 오락, 휴양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
| | 숙박 | 5 | 지역 체류객 확보를 통한 관광 경쟁력 확보 |
| | 교통 | 15 | 지자체의 광역적 접근 및 지역 내 이동의 편리성 |
| | 문화시설 | 10 | 방문자들이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설 |
| | 축제 | 10 | 축제 등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광고물 활용성 중대 |
| 정성적 (70%) | 지역 명소화 전략 | 30 |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한 명소화 전략에 대한 평가 |
| | 실현 가능성 | 20 |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실현되기 위한 조치 |
| | 옥외광고 구성 | 15 | 사업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
| | 안정성 | 20 | 주거성 침해, 교통 보행의 안정 영향 여부 |
| | 재원 및 인력투자 계획 | 15 | 재원투자규모 및 지속적인 관리 운영 방안 |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 C03-2. 설치

- 옥외광고법 관련 준수사항 검토 1
- 도로법 검토 및 도로 점용 허가 관련 부서 협의 2
- 도로 교통법 검토 및 관할 경찰서 협의 3
- 표시 안전 및 주변 빛공해 저촉 예상 지역 여부 4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 5

1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 제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1. 전자계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계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계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계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③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사도 조례 표준안]

제 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계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 다.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계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 C03-2. 설치

- 옥외광고법 관련 준수사항 검토 ----- 1
- 도로법 검토 및 도로 점용 허가 관련 부서 협의 ----- 2
- 도로 교통법 검토 및 관할 경찰서 협의 ----- 3
- 표시 안전 및 주변 빛공해 저촉 예상 지역 여부 ----- 4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 ----- 5

2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로”란 차도, 보도(匝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고랑,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23조(도로관리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의 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17.12.5., 2021.1.5>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C03-2. 설치

- 옥외광고법 관련 준수사항 검토 ----- 1
- 도로법 검토 및 도로점용 허가 관련 부서 협의 ----- 2
- 도로 교통법 검토 및 관할 경찰서 협의 ----- 3
- 표시 안전 및 주변 빛공해 저촉 예상 지역 여부 ----- 4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 ----- 5

3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 제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계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계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도로교통법]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애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14.>
 - 1. 제 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灯火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C03-2. 설치

- 옥외광고법 관련 준수사항 검토 ----- 1
- 도로법 검토 및 도로 점용 허가관련 부서 협의 ----- 2
- 도로 교통법 검토 및 관할 경찰서 협의 ----- 3
- 표시안전 및 주변 빛공해 저촉 예상 지역 여부 ----- 4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 ----- 5

4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③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④ 광고물 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⑤ 제 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29조 제 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사도 조례 표준안]

제 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사군구 조례 표준안]

제6조(전자계시대의 표출관리)

-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계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계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계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계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계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26.>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 구분 측정 기준 | 적용 시간 | 기준값 | 조명 환경 관리 구역 | | | | 단위 |
|-------------|---------------------|-----|-------------|-----------|------------|------------|----------|
| | | | 제 1종 | 제 2종 | 제 3종 | 제 4종 |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24:00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m^2 |
| | 24:00 ~해뜨기 전 60분 |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

▶ C03-2. 설치

- 옥외광고법 관련 준수 사항 검토 ----- 1
- 도로법 검토 및 도로 점용허가 관련 부서 협의 ----- 2
- 도로 교통법 검토 및 관할 경찰서 협의 ----- 3
- 표시 안전 및 주변 빛공해 저촉 예상 지역 여부 ----- 4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 ----- 5

5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3.3.23., 2013.12.30., 2021.4.20.>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9.1.>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제한)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 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5 [도로 점용 전자계시대 설치 과정 예시]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설치 공사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0036) |

1 기초 터파기 공사



5. 기초 타설



2 접지 공사



6. 통신 및 전기케이블 포설 및 전원 공사



3 배관 굴착 공사



7. 전자계시대 설치



4. 기초 타설



- 위 1~7의 과정은 전자계시대 설치 공사 관련 유사 사례 제시
- 과정은 현장 설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 C03-3. 설치 형태

• 도시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검토

<참고 사항>

- 아래 사진은 현재 설치된 지자체 주요 전자계시대 디자인 유형 정리
- 현재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에 따른 기본형(62,43화면 비율) 디스플레이의 ㄱ자형, T자형이 주류



[ㄱ자형-대구 수성구]



[ㄱ자형-경북 구미]



[ㄱ자형-서울 노원구]



[T자형-부산 진구]



[T자형-대구 동구]



[T자형-인천 서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도심 미관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전자계시대 디자인 반영 검토 필요

[공공디자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참고]

-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 단 공공디자인 심의 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를 통해 전자계시대 디자인 안수립 가능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전자계시대 공공디자인 설계 관련 조항 반영 후 협상의 의한 계약 추진 시 활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참고 사례>



[공공디자인 적용 해외 사례 1]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공공디자인 적용 해외 사례 2]

▶ C03-4. 사업성

- 수익형 민자사업 운영 현황 ----- ①
- 투자회수 시점 ----- ②
- 계약 기간 검토 ----- ③

①

<수익형 민자 사업 운영 현황>

전자계시대 운영 지자체 및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조사 내용 기반]

- 총 매출/당 = (전체 구좌수 * 계첨율) * 구좌단가
- 계첨율 : 서울 평균 40~50%, 광역시 및 수도권 평균 30~40%, 지방 지자체 평균 20~30% 수준

<서울 지역 기준 전자계시대 운영 현황>

| 월 광고 금액 | 총 구좌 수 | 상업 광고비율 | 평균 계첨율 | 비용 내역 |
|---------|--------|---------|--------|---|
| 500,000 | 25 | 80% | 40~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 (현장, IT) • 광고 영업 수수료 • 내부 인건비 • 기타 운영 비용 등등 |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 C03-4. 사업성

- 수익형 민자사업 운영 현황 ①
- 투자 회수 시점 ②
- 계약 기간 검토 ③

②

<투자 회수 시점>

- 1기당 11억 투자하였을 경우 평균 5년 차 내외에서 옥외광고를 통해 투자비 회수 가능
- 본 자료는 전자계시대 운영 지자체 및 옥외광고사업자 설문 내용 기반 추정 자료

| 전자계시대 수량 | 투자비 | 계첨율 | 5년차 | 6년차 | 8년차 | 10년차 |
|----------|------------|-----|-------------|-------------|-------------|-------------|
| | | | 순이익 | 순이익 | 순이익 | 순이익 |
| 1 | 11,000,000 | 30% | 72,000,000 | 86,400,000 | 115,200,000 | 144,000,000 |
| | | 40% | 96,000,000 | 115,200,000 | 153,600,000 | 192,000,000 |
| | | 50% | 120,000,000 | 144,000,000 | 192,000,000 | 240,000,000 |
| | | 60% | 144,000,000 | 172,800,000 | 230,400,000 | 288,000,000 |
| | | 70% | 168,000,000 | 201,600,000 | 268,800,000 | 336,000,000 |
| | | 80% | 192,000,000 | 230,400,000 | 307,200,000 | 384,000,000 |

③

<계약 기간 검토>

- 5년 + 1회 연장: 총 10년 간 계약으로 추진 되고 있음
- 1회 연장 시 LED 디스플레이 및 일부 기기의 교체 협약하는 경우도 있음
- 본 자료는 전자계시대 운영 지자체 및 옥외광고사업자 설문 내용 기반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광고 영업 | 옥외광고법 | 옥외광고사업 등록 |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 C03-5. 민원제기

-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
- 운영 중 예상 민원

| 민원 종류 | 정의 |
|---------|--|
| 설치 과정 예 | 소음, 진동, 교통 방해, 보도 진행 방해, 도시 미관, 건물 조망 방해, 상가 간판 가림 |
| 운영 중 | 빛공해, 부적절 광고 노출, 전자계시대 주변 환경 미화 |



[소음, 진동 요소]



[교통 방해 요소]



[건물 조망 및 간판 가림 요소]



[빛공해 요소]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일반민원
 -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 ·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 · 월 ·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C04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사업 요청서 수립(C) | 전자게시대 기본 사양

전자게시대는 디지털광고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통신 및 네트워크, 기구 구조물 등으로 구성_관련한 참고 기본 사양 제시

▶ C04-1. 전자게시대 (LED형) 기본 사양

- [KS 및 인증, 공인 시험서 제출 제품 우대]
 - Pixel pitch : 7mm 미만
 - 휘도(nit) : 5,000nit 이상
 - 가시각: Hor. 110°, Ver. 110° 이상
 - 폴리커프리(Fliker Free)
 - 작동온도:-25°C ~ +60°C
 - IP 등급: 65 이상
 - LED 수명 : 10,0000 시간 이상
 - 자동 조도 조절: 필수 적용

<기술 인증 부품 및 제품>

제품 및 부품은 KS규격품 및 전자제품형식 승인품을 사용하고, KS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최우량품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을 사용 원칙 관련 인증서 제출

KC전자파 적합인증 제품 우선

- 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전자기파 적합성: 외부로부터의 전자기파 간섭 내성시험
- EMS시험(전자파 간섭장해): EMS는 방사에 의해 다른기기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하며 시험하는 기기에서 동중으로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해 다른 기기가 영향을 받는 전체적인 현상을 시험
- EMS시험(전자파 내성, 감응성): 전자파 장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 장치, 시스템 등 기기 작동의 성능 저하 없이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시험하는 기기에 다른 기기로부터 전자기적 방해를 받아도 정상동작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시험

<KS 기술규격>

- 저온 시험: KS CIEC 60068-2-1: 상온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을 방치하거나, 동작하였을 때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고온 시험: KS CIEC 60068-2-1: 상온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을 방치하거나, 동작하였을 때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온습도 시험: KS CIEC 60068-2-78: 고온, 고습한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
- 방수방진 시험: KS CIEC 60529: 생활방수 및 강수가 존재하는 환경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
- 외부 충격 시험: KS CIEC 62262: 외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해 디지털광고물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를 확인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하드웨어 | 나라장터 제조 물품 등록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
| | 판로지원법 | - 안내 전광판(5512190301) |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 C04-2. 공공디자인 요소

- 전자기시대 디자인은 각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부합
- 필요시 공공디자인 심의 위원회 의견 반영
- 도시 경관에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
-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외부 노출금지

[공공디자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기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설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

▶ C04-3. CMS 소프트웨어

- GS 인증 소프트웨어 우대
- 네트워크통신(인터넷 통신 등등)을 이용한 콘텐츠 관리 운영
- 콘텐츠를 전자기시대 셋탑으로 다운로드 받아 콘텐츠 스케줄 기반 광고 운영
- 전원 스케줄에 의한 전원 관리 운영
- 실시간 콘텐츠 운영 현황 확인
- 장비 운영 이력 관리 및 로그 관리 기능 포함
- 설치위치별 콘텐츠 관리 및 운영상황 모니터링 기능 포함
- 이미지, 동영상, URL 지원
- 자막 기능 및 간접 송출 기능 포함

[참고자료]

*별첨 9 : 소프트웨어 기본사양서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 C04-4. 보안

-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디지털광고물에 접속하여 연결 - 인바운드(Inbound)하는 것은 불허
- 방화벽이 설치된 통신망 주소 변환기(NAT) 시스템을 통해 사설 IP 주소를 사용
- 디지털광고물은 자체 방화벽 시스템 운영 필요
- 디지털광고물은 다른 대상과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FTP와 HTTP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 규격 사용
- 디지털광고물이 웹(Web)기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대상과의 연결 시 반드시 보안 프로토콜(HTTPS)를 사용
-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한 데이터 전송 시 보안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 C04-5. 지원 콘텐츠 형식

- 지원 이미지 파일 포맷:BMP, JPEG, PNG
- 동영상파일 포맷: mp4, 비디오코덱은H264, MPEG-1, 오디오코덱 MP3, MPEG-2 AAC
- 동영상최소프레임수:24프레임/초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1426) |

BTO-C. 사업 요청서 수립

C05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 (BTO) – 사업 요청서 수립 (C) | 기본 설계서 검토

전자게시대 제안 요청서 반영을 위한 설계서, 사양서가 포함된 시방서

▶ C05-1. 시방서

- 설계서 및 사양서 참조

[참고자료]

* 별첨 24: 지자체 시방서 샘플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하드웨어 | 나라장터 제조 물품 등록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
| | 판로지원법 | - 안내전광판(5512190301)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1468)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1426) |
| 설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
| | 전기공사업법 | - 전기공사업(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0036) |

BTO-D. 사업자 선정

D01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사업자 선정(D)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서 제출 서류

공모 참가 및 평가를 위한 참여 기업 준비 서류

- ▶ D01-1.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응모자 등록용) 및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신고필증 등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 ▶ D01-2. 구비 서류
(평가자료)
- 일반현황 및 연혁
 - 전자게시대 운영사업 수행실적 증명자료
 - 기술인력 및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신용평가증명서
 - 업체 경영상태 확인서(또는 공인회계사가 증명하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 신인도 증빙자료 등

[참고자료]

* 별첨 19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별첨 20: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BTO-D. 사업자 선정

D02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사업자 선정(D) | 평가위원 구성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 평가 위원 구성_ 옥외광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의 전문가로 구성 추천

▶ D02-1. 구성 인원

- 전문 평가 위원 구성은 3배수 풀 구성 후 7인 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⑨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참고 자료]

- * 별첨 19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별첨 20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별첨 21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265호)

BTO-D. 사업자 선정

D03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사업자 선정(D) | 평가 항목

입찰 참가업체 역량 평가를 위한 항목 기준 제시

D03-1. 소프트웨어 운영

C04-3 / C04-4 준수 여부

- 통합 관제실 또는 솔루션 보유 여부
- 옥외광고미디어사 소프트웨어 보유 여부
- 협력사 및 외주 소프트웨어 운영인 경우 해당 기업 정보 확인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소프트 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1426) |

C04-3. CMS 소프트웨어

GS 인증 소프트웨어 우대

- 네트워크통신(인터넷 통신 등등)을 이용한 콘텐츠 관리 운영
- 콘텐츠를 전자계시대 셋톱으로 다운로드 받아 콘텐츠 스케줄 기반 광고 운영
- 전원 스케줄에 의한 전원 관리 운영
- 실시간 콘텐츠 운영 현황 확인
- 장비 운영 이력 관리 및 로그 관리 기능 포함
- 설치위치별 콘텐츠 관리 및 운영 상황 모니터링 기능 포함
- 이미지, 동영상, URL 지원
- 자막 기능 및 긴급 송출 기능 포함

C04-4.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디지털광고물에 접속하여 연결 - 인바운드(Inbound)하는 것은 불허

- 방화벽이 설치된 통신망 주소 변환기(NAT) 시스템을 통해 사설 IP 주소를 사용
- 디지털광고물은 자체 방화벽 시스템 운영 필요
- 디지털광고물은 다른 대상과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FTP와 HTTP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 규격 사용
- 디지털광고물이 웹(Web)기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대상과의 연결 시 반드시 보안 프로토콜(HTTPS)를 사용
-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한 데이터 전송 시 보안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참고자료]

*별첨 9: 소프트웨어 기본 사양서

BTO-D. 사업자 선정

▶ D03-2. 하드웨어 사양

- C04-1 준수 여부
- 기타 추가기능 기기반영 여부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하드웨어 | 나라장터 제조 물품 등록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
| | 판로지원법 | - 안내 전광판(5512190301) |

C04-1. LED 디스플레이

- [KS 및 인증, 공인 시험서 제출 제품 우대]
- Pixel pitch : 7mm 미만
- 휘도(nit) : 5,000nit 이상
- 가시각: Hor. 110°, Ver. 110° 이상
- 플리커프리 (Flicker Free)
- 작동 온도:-25°C ~ +60°C
- IP 등급: 65 이상
- LED 수명 : 10,0000 시간 이상
- 자동 조도 조절: 필수 적용

<기술 인증 부품 및 제품>

제품 및 부품은 KS규격품 및 전자제품형식 승인품을 사용하고, KS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최우량품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을 사용 원칙 관련 인증서 제출

KC전자파 적합인증 제품 우선

- 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전자기파 적합성: 외부로부터의 전자기파 간섭 내성시험
- EMS시험(전자파 간섭장해): EMF는 방사에 의해 다른기기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하며 시험하는 기기에서 동
중으로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해 다른 기기가 영향을 받는 전체적인 현상을 시험
- EMS시험(전자파 내성, 감응성): 전자파 장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 장치, 시스템 등 기기 작동의 성능 저하
없이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시험하는 기기에 다른 기기로부터 전자기적 방해를 받아도 정상동
작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시험

<KS 기술규격>

- 저온 시험: KS CIEC 60068-2-1: 상온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을 방치하거나, 동작하였을 때 정상 동
작하는 지 확인
- 고온 시험: KS CIEC 60068-2-1: 상온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을 방치하거나, 동작하였을 때 정상 동
작하는 지 확인
- 온습도 시험: KS CIEC 60068-2-78: 고온, 고습한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
- 방수방진 시험: KS CIEC 60529: 생활방수 및 강수가 존재하는 환경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디지털광고
물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
- 외부 충격 시험: KS CIEC 62262: 외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해 디지털광고물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를 확인

[참고자료]

* 별첨 3: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BTO-D. 사업자 선정

▶ D03-3. IT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통합 관제 운영 인력
- 소프트웨어 운영 인력
- 하드웨어 운영 인력
- 콘텐츠 제작 인력

[참고 자료]

* 별첨 1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력 기술자
보유 현황 참조

D03- 4 ~ 8 사업자 선정 시 입찰 참여업체 사업 준비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요소로 필요시 요청 가능

▶ D03-4. 외함(함체) 디자인

- 위치별 여건에 맞는 특화디자인
- 랜드마크 디자인
- 지자체 특성 반영 디자인
- 유지보수 및 안정성 확보 디자인

▶ D03-5. 장애 및 복구 방안

- 장애 복구 프로세스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조치 기간 및 부품 보유 및 조달 방법
- 장애 유형 보유 및 매뉴얼 보유 유무

▶ D03-6. 유지보수 관리계획

- 유지보수 매뉴얼 보유
- 유지보수 인력 보유
- 유지보수 내역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관제 센터, 현장)
- 정기 유지보수 기간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하드웨어 | 나라장터 제조 물품 등록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
| | 판로지원법 | -안내전광판(5512190301)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1468)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1426) |
| 설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
|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 (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0036) |

BTO-D. 사업자 선정

▶ D03-7.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홍보 방안

- 해당 지자체 시장 규모 파악
-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 범위 및 예상 광고 고객 업종 리스트
- 해당 지자체 광고비 지출 예상 전통시장 리스트
- 광고 홍보 방안 및 기대 효과 제시

▶ D03-8. 사업성

- 예상 투자비용(산출내역서 기준)
- 운영에 따른 예상 소요 비용
- 예상 투자회수 기간
- 월 예상 광고비 추정 및 광고주 구성 비율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광고 영업 | 옥외광고법 | 옥외광고사업 등록 |

BTO-D. 사업자 선정

▶ D03-9. 공공성

- 공공 요소 반영 부분
- 전자계시대 설치에 따른 지자체에 기여하는 예상 효과
- 스마트 시티에서의 공공 시설물 효과

<스마트 시티에서의 공공 시설물>

1. 장소



[서울 성동구 스마트 쉼터]



[서울 서초구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서울 스마트 버스 안내]

2. 게시 형태



[서울 마포구 디지털 홍보 게시대]



[서울 중구관광 안내도]



[돈의문 역사 정보]

3. 해외



BTO-D. 사업자 선정

▶ D03-10. 기대효과

- 법적 정의에 따른 전자정부 시대 효과 제시
- 도시 공공디자인으로서 기대 효과
- 스마트 시티에서의 전자정부 역할 및 효과

▶ D03-11. 민원 해소 방안

- C03-5 참조

C03-5. 민원제기

-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
- 운영 중 예상 민원

| 민원 종류 | 정의 |
|---------|--|
| 설치 과정 예 | 소음, 진동, 교통 방해, 보도 진행 방해, 도시 미관, 건물 조망 방해, 상가 간판 가림 |
| 운영 중 | 빛공해, 부적절 광고 노출, 전자정부 주변 환경 미화 |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일반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D03-12. 기업 평가

- 기업 신용도 평가
-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

[참고 자료]

* 별첨 19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BTO-D. 사업자 선정

D04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 (BTO) – 사업자 선정(D) | 낙찰

종합평가점수를 충족한 업체들 중에서 협상적격자 선정

▶ D04-1. 업체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참고자료]

* 별첨 19: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 5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BTO-D. 사업자 선정

D05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사업자 선정(D) | 위치 확정

수익형 민자 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설치 위치 형태 선정

▶ D05-1. 위치 선정

• C03-1 준수 후 확정

C03-1. 위치선정

- 상업지역, 공업지역
-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철도역 · 지하철역 · 공항 · 항만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시 ·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 설치 장소 선정 기준

<1.설치 지역 검토 기준>

| 지역 선정 기준 | 정의 |
|----------|--|
| 지역 상징성 | 사업 모델(사업 테마)을 적용하는데 있어 도시 내에서 해당지역이 몇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장소인지에 대한 정도 |
| 지역 필요성 | 해당 사업 모델이 지역에서 실제 수요가 있는 사업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콘텐츠에 대한 지역 주민, 또는 방문객의 수용 가능성, 활용도, 선호도 등의 정도 |
| 유동인구 | 해당 지역의 일평균 유동인구 수 |
| 타겟 밀집 비중 | 해당지역의 일평균 유동인구 중 해당 비즈모델의 타겟 인구 비중 |
| 설치 용이성 | 설치 가능한 장소가 목표 수량만큼 있고 전기수전 등이 용이하며 기존 거리 시설물의 방해를 받지 않는 정도 |
| 운영 안정성 | 설치 이후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파손, 오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와 민원 발생 소지가 없거나 발생 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 |

<2.지역 검토 방법>

| 구분 | 검토 기준 | 평가 방법 | | | | | 배점 |
|-------|--------|--------|--------|--------|--------|--------|----|
|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지역 선정 | 지역 상징성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10 |
| | 지역 필요성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10 |
| | 유동인구 | 20만 이상 | 15만 이상 | 8만 이상 | 5만 이상 | 5만 미만 | 10 |
| | 타겟 비중 | 3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15% 이상 | 15% 미만 | 6 |
| | 설치 용이성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8 |
| | 운영 안정성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6 |
| 소계 | | | | | | | 50 |

[지역 검토 평가 예시]

BTO-D. 사업자 선정

▶ D05-2. 설치 검토

• C03-2 준수후 확정

C03-2. 설치

- 옥외광고법 관련 준수 사항 검토
- 도로법 검토 및 도록 굴착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 도로 교통법 검토 및 관할 경찰서 협의
- 표시 안전 및 주변 빛공해 저촉 예상 지역 여부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

[도로 점용 전자게시대 설치 과정 예시]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설치 공사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0036) |

1. 기초 터파기 공사



5. 기초 타설



2. 접지 공사



6. 통신 및 전기케이블 포설 및 전원 공사



3. 배관 굴착 공사



7. 전자게시대 설치



4. 기초 타설



- 위 1~7의 과정은 전자게시대 설치 공사 관련 유사 사례 제시
- 과정은 현장 설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BTO-D. 사업자 선정

▶ D05-3. 설치 형태

• C03-3 준수후 확정

C03-3. 설치 형태

• 도시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검토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전자계시대 공공디자인 설계 관련 조항 반영 후 협상의 의한 계약 추진 시 활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 · 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공공디자인 적용 해외 사례 1]

BTO-D. 사업자 선정

▶ D05-4. 사업성

• C03-4 준수후 확정

C03-4. 사업성

- 수익형 민자 사업 운영 현황
- 투자 회수 시점
- 계약 기간 검토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광고 영업 | 옥외광고법 | 옥외광고사업 등록 |

<수익형 민자 사업 운영 현황>

전자계시대 운영 지자체 및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조사 내용 기반]

- 총 매출 / 당 = (전체 구좌수 * 계첨율) * 구좌단가
- 월 광고 금액 서울 및 일부 수도권 & 광역시 평균 50만원 수준, 일부 광역시 및 지방 중소도시 20~30만원 수준
- 계첨율 : 서울 평균 40~50%, 광역시 및 수도권 평균 30~40%, 지방 지자체 평균 20~30% 수준

<서울 지역 기준 전자계시대 운영 현황>

| 월광고 금액 | 총 구좌수 | 상업 광고비율 | 평균 계첨율 | 비용 내역 |
|---------|-------|---------|--------|---|
| 500,000 | 25 | 80% | 40~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 (현장, IT) • 광고 영업 수수료 • 내부 인건비 • 기타 운영 비용 등등 |

<투자 회수 시점>

- 월 광고 50만원 기준 1기당 11억 투자 하였을 경우 평균 5년 차 내외에서 옥외광고를 통해 투자비 회수 가능
- 본 자료는 전자계시대 운영 지자체 및 옥외광고사업자 설문 내용 기반 추정 자료

| 전자계시대 수량 | 투자비 | 계첨율 | 5년차 | 6년차 | 8년차 | 10년차 |
|----------|------------|-----|-------------|-------------|-------------|-------------|
| | | | 순이익 | 순이익 | 순이익 | 순이익 |
| 1 | 11,000,000 | 30% | 72,000,000 | 86,400,000 | 115,200,000 | 144,000,000 |
| | | 40% | 96,000,000 | 115,200,000 | 153,600,000 | 192,000,000 |
| | | 50% | 120,000,000 | 144,000,000 | 192,000,000 | 240,000,000 |
| | | 60% | 144,000,000 | 172,800,000 | 230,400,000 | 288,000,000 |
| | | 70% | 168,000,000 | 201,600,000 | 268,800,000 | 336,000,000 |
| | | 80% | 192,000,000 | 230,400,000 | 307,200,000 | 384,000,000 |

<계약 기간 검토>

- 5년 + 1회 연장. 총 10년 간 계약으로 추진 되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4년 + 1회 연장도 있음)
- 1회 연장 시 LED 디스플레이 및 일부 기기의 교체 협약 하는 경우도 있음
- 본 자료는 전자계시대 운영 지자체 및 옥외광고사업자 설문 내용 기반

BTO-E. 설치

E01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 (BTO) – 설치(E) | 실시설계서

실시설계서 및 시방서 반영 내용을 확인

▶ E01-1. 전자게시대 기기 및 설치

- 설치장소 지적도 및 설계도서
- 전자게시대 시스템 구조도 (네트워크, 기기간 연계, 콘텐츠 흐름)
- 전자게시대 험체 설계도면
- 현장 지적도 및 공사 계획 및 설치 도면
- (필요시)구조 계산 및 설계도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정의)

6.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인증 등)

-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3.3.23., 2013.12.30., 2021.4.20>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10.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BTO-E. 설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 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

-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 별첨9 :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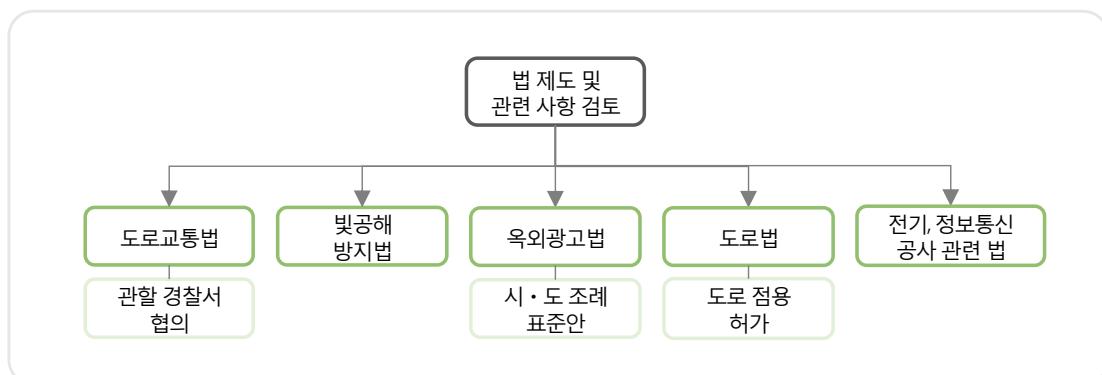
E02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 (BTO) – 설치(E) | 법 제도

전자계시대 설치를 위한 법 준수 검토

▶ E02-1. 관련 법 심의 및 신고, 허가

- 옥외광고법 검토 완료
- 경찰서 협의승인
- 도로 점용 허가
- 빛공해방지법 검토 완료



BTO-E. 설치

[도로 점용 전자계시대 설치 과정 예시]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설치 공사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0036) |

1.기초 터파기 공사



5.기초 타설



2.접지 공사



6.통신 및 전기케이블 포설 및 전원 공사



3.배관 굴착 공사



7.전자계시대 설치



4.기초 타설



- 위 1~7의 과정은 전자계시대 설치 공사 관련 유사 사례 제시
- 과정은 현장 설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BTO-E. 설치

E03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설치(E) | 민원처리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

▶ E03-1. 해결 방안 및
프로세스 • C03-5 참조

C03-5. 민원제기

-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
- 운영 중 예상 민원

| 민원 종류 | 정의 |
|---------|--|
| 설치 과정 예 | 소음, 진동, 교통 방해, 보도 진행 방해, 도시 미관, 건물 조망 방해, 상가 간판 가림 |
| 운영 중 | 빛공해, 부적절 광고 노출, 전자게시대 주변 환경 미화 |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3) 건의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BTO-E. 설치

E04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설치(E) | 보안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운영 보안 사항 점검 및 보안 인증 제품 검토

▶ E04-1. 네트워크 및 기기 보안

- C04-4 참조
- 기기 보안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1426) |
| 설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

C04-4. 보안

-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디지털광고물에 접속하여 연결 - 인바운드(Inbound)하는 것은 불허
- 방화벽이 설치된 통신망 주소 변환기(NAT) 시스템을 통해 사설 IP 주소를 사용
- 디지털광고물은 자체 방화벽 시스템 운영 필요
- 디지털광고물은 다른 대상과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FTP와 HTTP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 규격 사용
- 디지털광고물이 웹(Web)기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대상과의 연결 시 반드시 보안 프로토콜(HTTPS)를 사용
-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한 데이터 전송 시 보안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 기기 보안

- 외함(함체) 잠금 장치
- 외함(함체) 외부 충격에 따른 파손 방지 안

BTO-E. 설치

E05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 (BTO) – 설치(E) | 설치 완료

제안서류 내역과 설치 완료 비교 현장 검수 등을 위한 서류

▶ E05-1. 근거 서류 및 완료 보고

- 준공 도서 및 서류 제출
- 완료 보고서 제출

[참고 자료]

* 별첨 13: 준공관련 서류 및 도서 리스트

BTO-E. 설치

E06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BTO) – 설치(E) | 기부 채납

설치 완료 확인 후 소유권 이전을 통한 기부 채납 체결

▶ E06-1. 승인 신청

- 지자체 기부 체납 계약서 체결

[공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기부채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9조(공부 등록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BTO-F. 운영

F01**수익형 민자 사업 (BTO) – 운영(F) | 보험증권**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 **F01-1. 운영 관련 보험 가입**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대인 1억 이상/대물 2억 이상 가입)

<참고 사항–용어>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명기된 지역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F02**수익형 민자 사업 (BTO) – 운영(F) | 광고 운영**

광고 운영 상황 보고 및 현황 검토 공유 요청

▶ **F02-1. 광고 운영 계획 및 결산** • 연 2회 광고 운영 계획안 및 결과보고
• 지자체 내 주요 광고주 분석

BTO-F. 운영

F03

수익형 민자 사업 (BTO) – 운영(F) | **효과분석**

지역 광고 현황 및 현황 분석 공유 보고서 요청

▶ F03-1. 광고주 통계

- 광고주 통계 자료 제공(업종)
- 재계약 건수/신규 계약
- 분기별 광고 수주 추세 비교

F04

수익형 민자 사업 (BTO) – 운영(F) | **결산**

반기별 전자계시대 결산 보고 요청

▶ F04-1. 반기 결산

- 전자계시대별 결산 보고

BTO-G. 유지 보수

G01수익형 민자 사업 (BTO) – 유지보수(G) | **민원**

반기마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보고 요청

▶ G01-1. 민원 처리

- 민원 건수 내용 처리 결과 보고서
- 반기 1회 제출

G02수익형 민자 사업 (BTO) – 유지보수(G) | **유지보수**

전자게시대의 상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작성 요청

▶ G02-1. 현장 관리

- 정기유지 보수 보고서
- 유지보수 내역 및 현황
- 부품 교체 및 수리 내역
- 현장 사진 및 관리 내역

▶ G02-2. 현장 안전 점검

- 안전 점검 항목 구성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시기 및 결과 보고

▶ G02-3. IT관련 유지보수

- 하드웨어 유지보수 및 수리 내역
- 유지보수 부품 재고 관리 현황
-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버전 관리
- 보안 상황 및 이슈 보고서

BTO-G. 유지 보수

G03

수익형 민자 사업 (BTO) – 유지보수(G) | 고장신고

반기 기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 처리 보고서 작성 요청

▶ G03-1. 고장 처리 프로세스

- 고장 접수 및 해결 프로세스
- 사안별 고장 처리 기간 설정 및 결과 보고

G04

수익형 민자 사업 (BTO) – 유지보수(G) | 재난재해

재난 재해 발생 시 프로세스에 긴급 콘텐츠 송출 요청

▶ G04-1. 콘텐츠 운영

- 긴급 재난 재해 및 공지 사항 송출 프로세스 체계
- 긴급 콘텐츠 템플릿 구성

Ⅱ.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절차 가이드라인

2. 물품 구매

PD (Product)

-
- A. 사업 추진 계획
 - B. 사업 방식 결정
 - C. 사업 요청서 수립
 - D. 사업자 선정
 - E. 설치
 - G. 유지 보수

PD-A. 사업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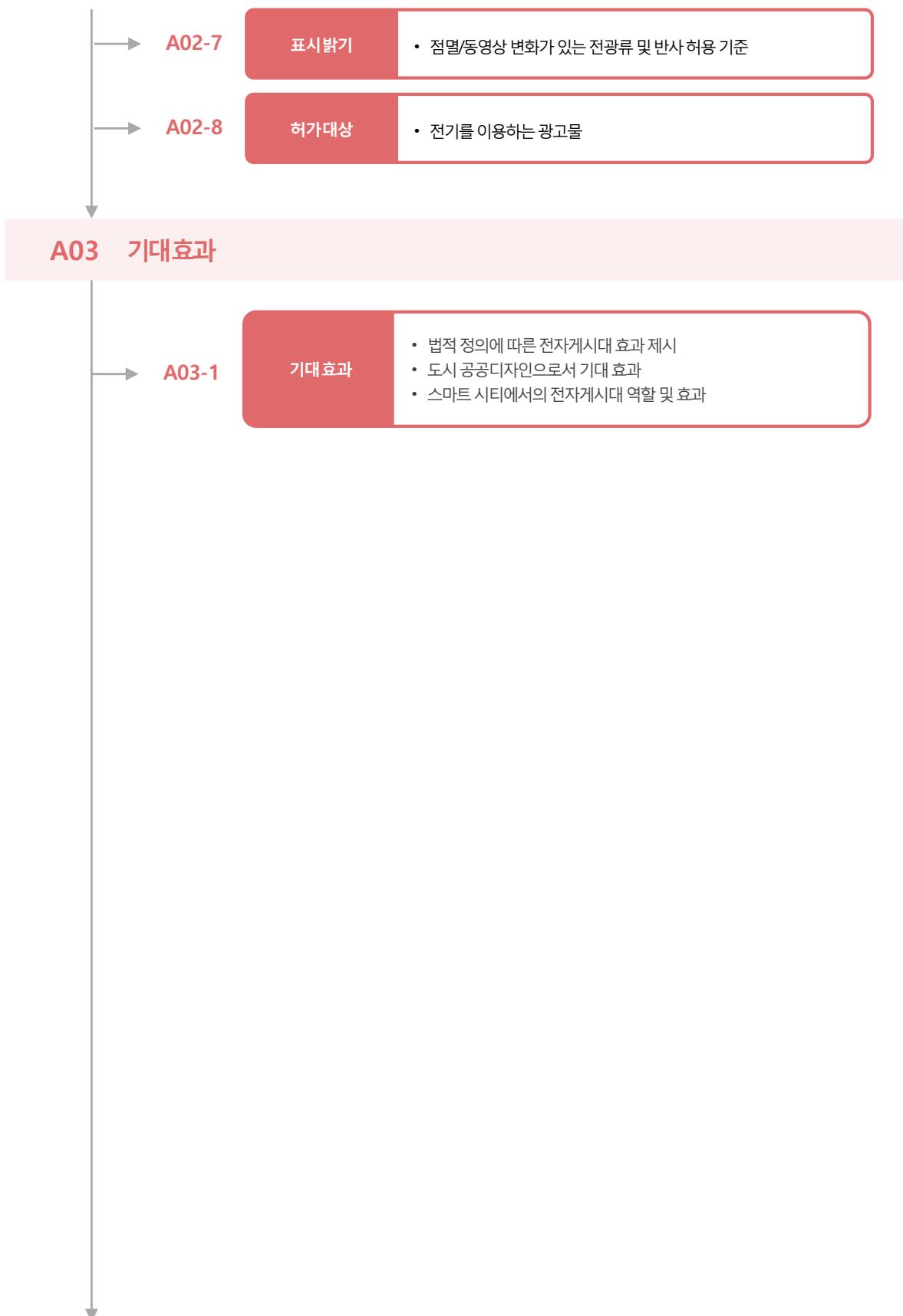
A01 목적수립

- A01-1 광고목적 및 대상
 -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는 광고
- A01-2 도시미관
 -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 방지
 -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
- A01-3 기술
 - 스마트 시티 기술 트렌드에 맞춘 전자계시대 구성

A02 설치검토

- A02-1 옥외광고물 분류
 - 지주를 이용한 간판
- A02-2 설치 장소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 A02-3 위치 선정
 - 상업지역, 공업지역
 -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철도역 · 지하철역 · 공항 · 항만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시 ·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 설치 장소 선정 기준
- A02-4 설치 방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물품
 - 전기공사업법 준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 전자계시대 다수 설치 / 설치 높이 / 설치 위치
 - 도로 점용
- A02-5 표시 방법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 A02-6 표시 면적
 - 광고 내용의 표시 면적은 $12m^2$ 이내

PD-A. 사업 추진 계획



PD-B. 사업 방식 결정

B01 물품구매사업

B01-1

물품구매

- 법적 근거
- 사업 개요
- 자격 요건

PD-C. 사업 요청서 수립

C01 계약방법

C01-1

제한입찰

- 참여 업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입찰

C01-2

계약이행 능력심사

-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경우 일정한 가격 보전(낙찰 하한율 88%)

C02 사업자이행조건

C02-1

자격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 중소 기업·소상공인 증명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 전기공사 등록한 업체(협력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협력사)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협력사)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협력사)

C02-2

민원제기

-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

C03 전자게시대기본사항

C03-1

전자게시대
(LED 형)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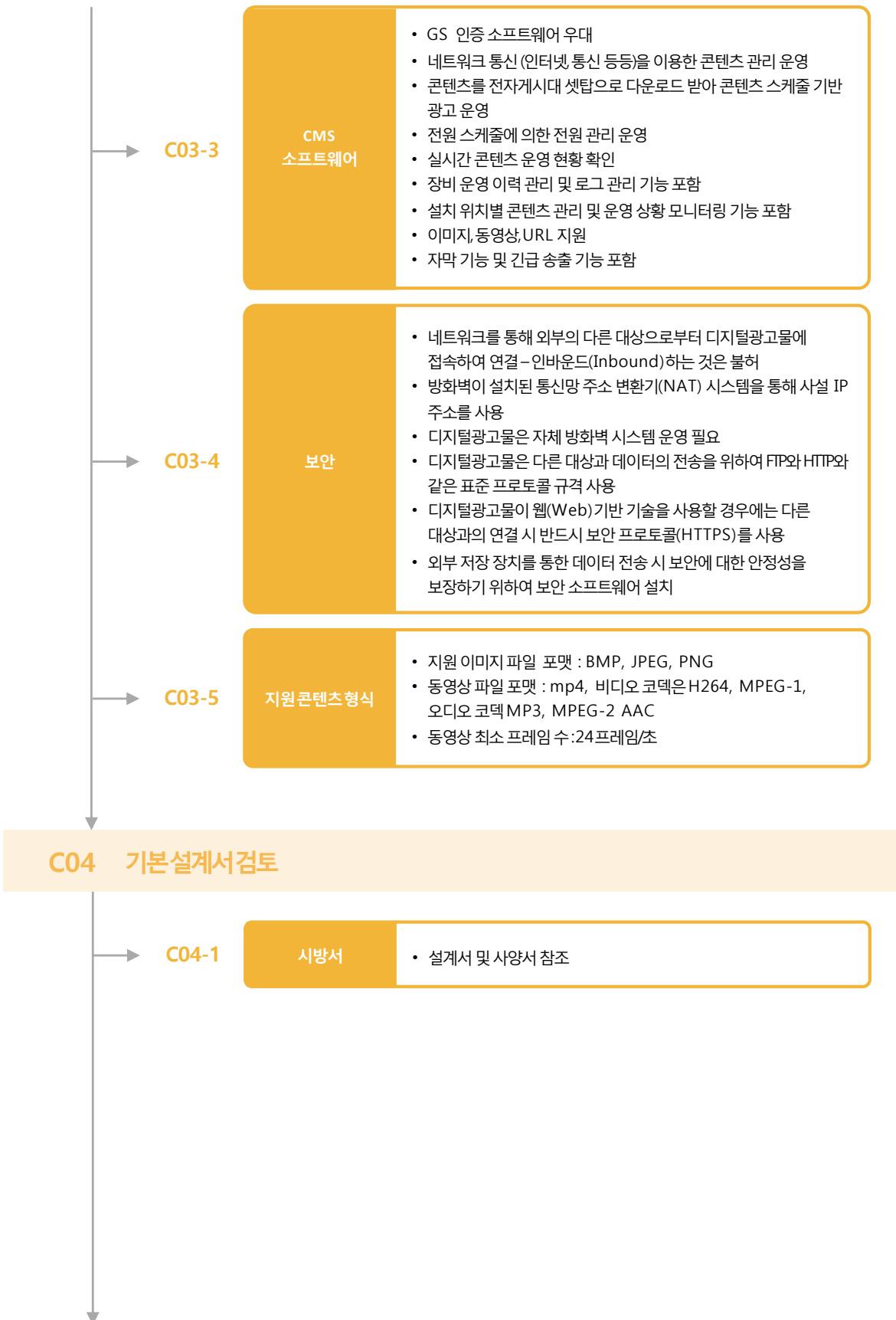
- [KS 및 인증/공인 시험서 제출 제품 우대]
- Pixel pitch : 7mm 미만
- 휘도(nit) : 5,000nit 이상
- 가시각 : Hor. 110°, Ver. 110° 이상
- 플리커프리(Flicker Free)
- 작동온도 : -25°C ~ +60°C
- IP 등급 : 65 이상
- LED 수명 : 10,0000 시간 이상
- 자동 조도 조절 : 필수 적용

C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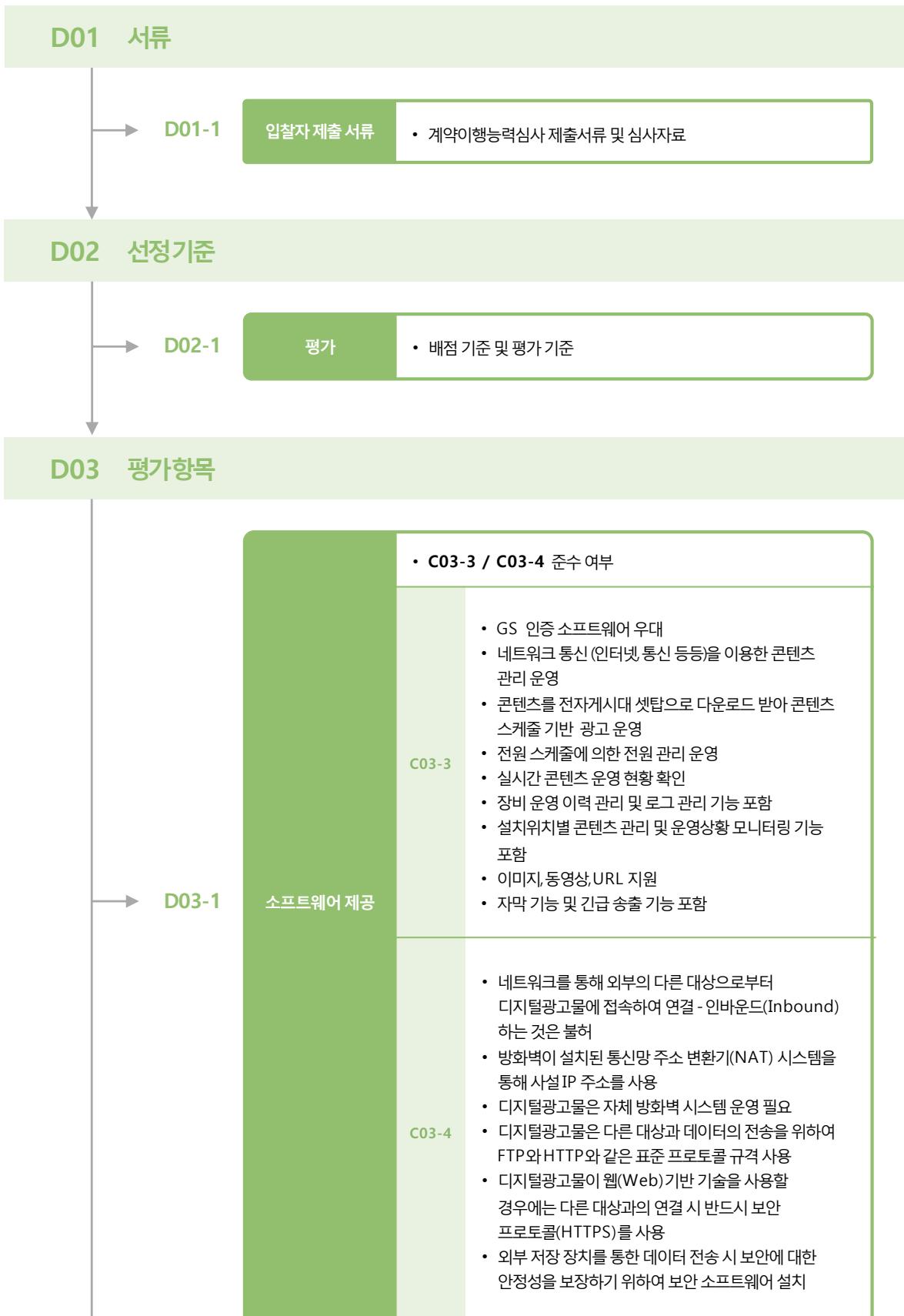
공공디자인
요소

- 전자게시대 디자인은 각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부합
- 필요시 공공디자인 심의 위원회 의견 반영
- 도시 경관에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
-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외부 노출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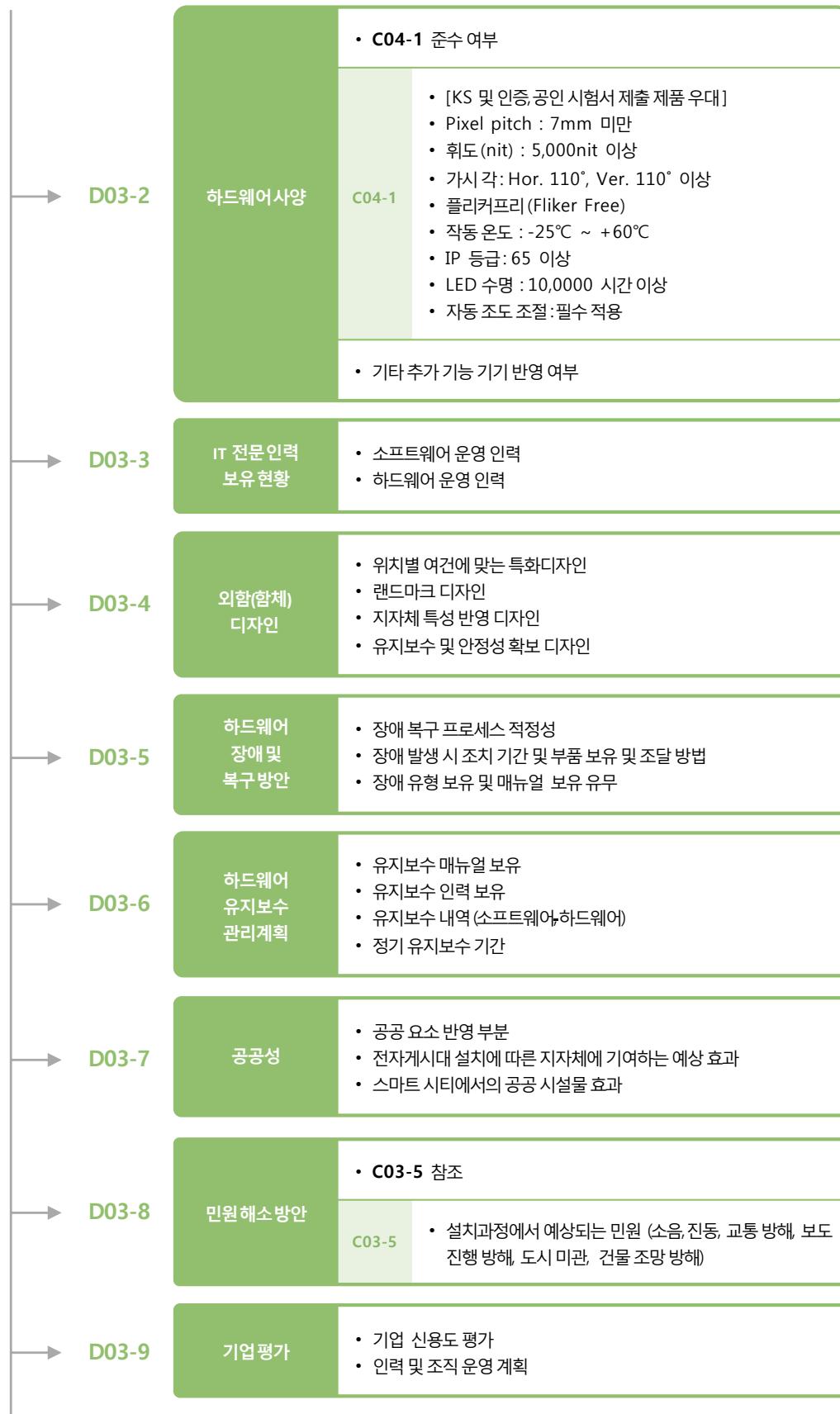
PD-C. 사업 요청서 수립



PD-D. 사업자 선정



PD-D. 사업자 선정



PD-D. 사업자 선정

D04 낙찰

→ D04-1

업체평가방법

• 업체 선정 평가 방법 제시

PD-E. 설치

E01 실시설계서

E01-1

전자계시대 기기 및 설치

- 설치 장소 지적도 및 설계도서
- 전자계시대 시스템 구조도 (네트워크, 기기간 연계, 콘텐츠 흐름)
- 전자계시대 핵심 설계 도면
- 현장 지적도 및 공사 계획 및 설치 도면
- (필요시) 구조 계산 및 설계도서

E02 법제도

E02-1

관련 법 심의 및 신고, 허가

- 옥외광고법 검토 완료
- 경찰서 협의 승인
- 도로 점용 허가
- 빛공해방지법 검토 완료

E03 민원처리

E03-1

해결방안 및 프로세스

C02-2 참조

- C02-2
- 설치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
(소음, 진동, 교통 방해, 보도 진행 방해, 도시 미관, 건물 조망 방해)

E04 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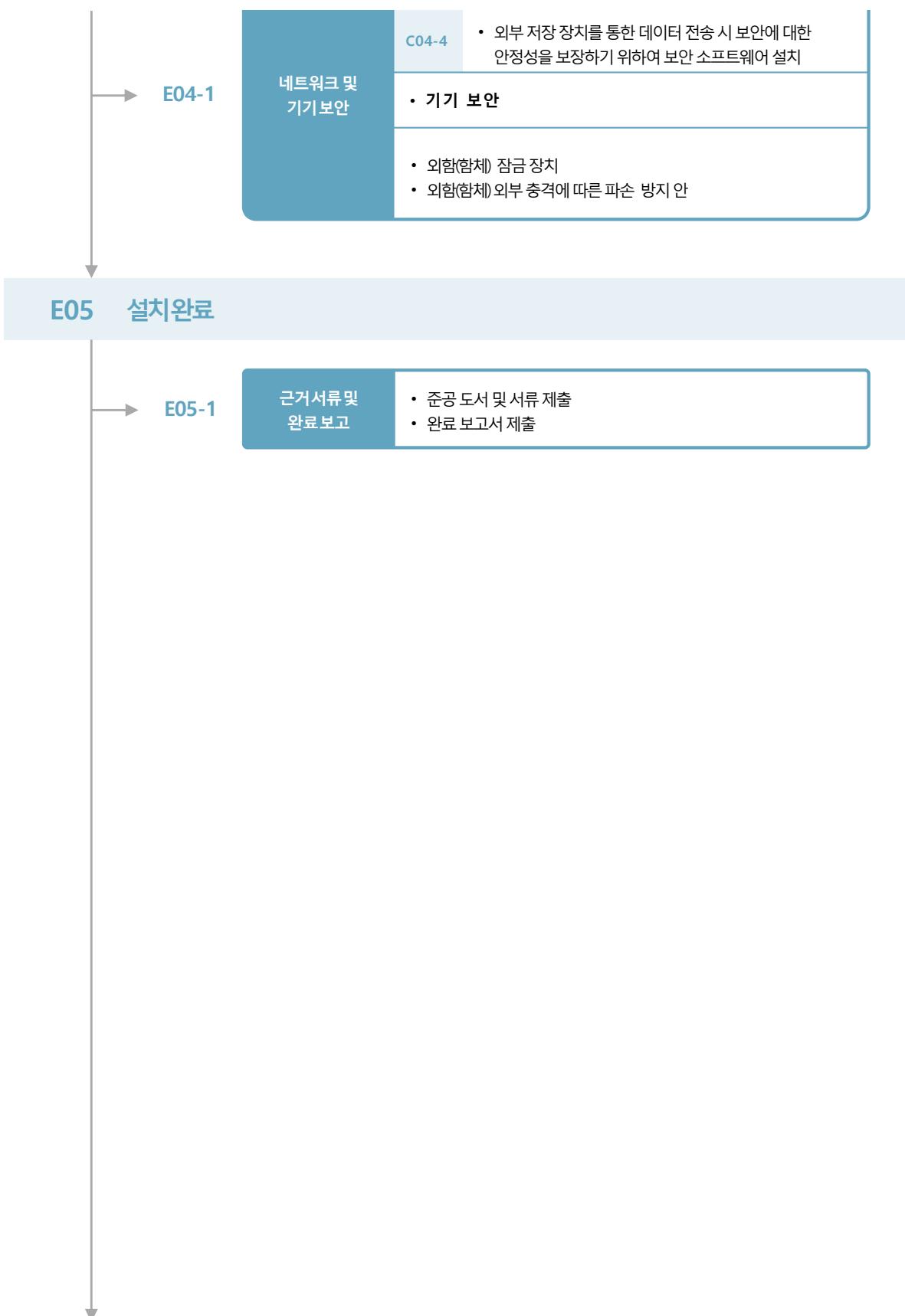
E04-1

네트워크 및 기기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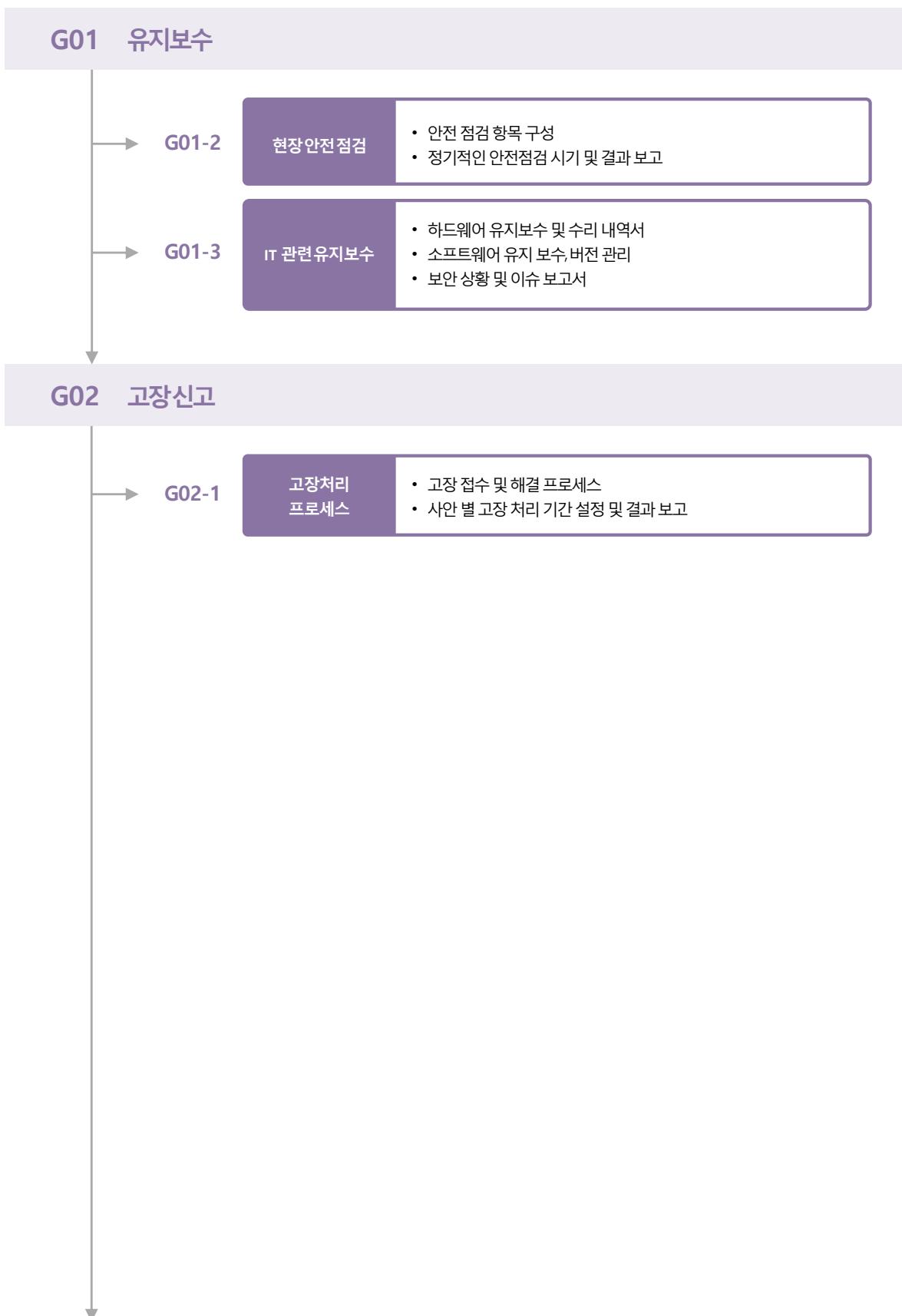
C03-4 참조

- C03-4
-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디지털광고물에 접속하여 연결 – 인바운드(Inbound)하는 것은 불허
 - 방화벽이 설치된 통신망 주소 변환기(NAT) 시스템을 통해 사설 IP 주소를 사용
 - 디지털광고물은 자체 방화벽 시스템 운영 필요
 - 디지털광고물은 다른 대상과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FTP와 HTTP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 규격 사용
 - 디지털광고물이 웹(Web)기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대상과의 연결 시 반드시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

PD-E. 설치



PD-G. 유지 보수



2. 물품 구매 (PD)

- **프로세스 핵심 코드**

PD-A. 사업 추진 계획

| | | |
|-----|------|-----|
| A01 | 목적수립 | 139 |
| A02 | 설치검토 | 142 |
| A03 | 기대효과 | 155 |

PD-B. 사업 방식 결정

| | | |
|-----|--------|-----|
| B01 | 물품구매사업 | 156 |
|-----|--------|-----|

PD-C. 사업 요청서 수립

| | | |
|-----|-----------|-----|
| C01 | 계약방법 | 157 |
| C02 | 사업자이행 조건 | 158 |
| C03 | 전자게시대기본사양 | 166 |
| C04 | 기본설계서검토 | 169 |

PD-D. 사업자 선정

| | | |
|-----|------|-----|
| D01 | 서류 | 170 |
| D02 | 선정기준 | 171 |
| D03 | 평가항목 | 172 |
| D04 | 낙찰 | 177 |

PD-E. 설치

| | | |
|-----|-------|-----|
| E01 | 실시설계서 | 178 |
|-----|-------|-----|

2. 물품 구매 (PD)

● 프로세스 핵심 코드

E02 법제도 179

E03 민원처리 181

E04 보안 182

E05 설치완료 183

PD-G. 유지 보수

G01 유지보수 184

G02 고장신고 184

PD-A. 사업 추진 계획

A01

물품 구매(PD) – 사업 추진 계획(A) | 목적수립

전자게시대 목적 수립은 공공 목적 광고 표시 / 도시 미관 / 새로운 기술 적용 옥외광고물

▶ A01-1. 광고목적 및 대상

-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는 광고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 제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하거나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신설2016.7.6., 2021.12.14.>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전통시장법]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PD-A. 사업 추진 계획

▶ A01-2. 도시 미관

-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 방지
- 쾌적한 거리문화조성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 사례]



[법규 위반 및 광고 주목도가 낮은 전자게시대 사례]



[해외 거리 문화 조성 사례]

PD-A. 사업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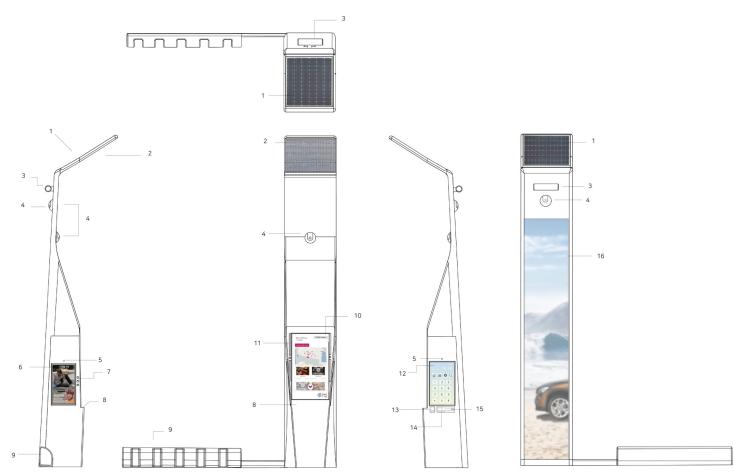
▶ A01-3. 기술

- 스마트 시티 기술 트렌드에 맞춘 전자계시대 구성

< 참고 사항 - 트렌드 >

트렌드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된 공공목적의 광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보 중심의 공공 미디어 서비스가 반영된 전자계시대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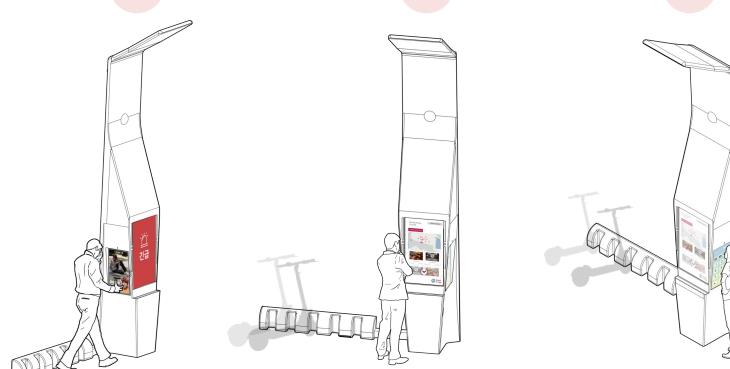
| | | |
|-----|--------------------|-----------------------|
| Ex) | 1 태양열 전지 패널 | 9 킥보드 거치대 |
| | 2 스마트 가로등 | 10 도시·관광 정보 & 길 찾기 |
| | 3 IoT sensor box | 11 스피커, 마이크 |
| | 4 CCTV 카메라 | 12 도시 주요 기관 정보, 검색 기능 |
| | 5 화상 통화용 카메라 | 13 전화 |
| | 6 공공 정보 서비스 | 14 결제 기기 |
| | 7 긴급 상황 시 원격 연결 통신 | 15 아날로그 다이얼 |
| | 8 충전 박스(스마트폰, 킥보드) | 16 광고 디스플레이 |



공공 서비스

도시 관광 정보

전화 서비스



[스마트시티에서의 전자계시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컨셉 이미지 예시]

PD-A. 사업 추진 계획

A02

물품 구매(PD) – 사업 추진 계획(A) | 설치 검토

전자계시대 설치·운영은 공공 목적 광고/도시 미관/새로운 ICT 적용 검토/
디지털 옥외광고물로 접근 필요

▶ A02-1. 옥외광고물 분류

- 지주를 이용한 간판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8.5.28, 2019.4.30>

6. 지주(□)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지주형 전자계시대 1]



[지주형 전자계시대 2]



[지주형 전자계시대 3]

▶ A02-2. 설치 장소

- 상업지역·공업지역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 제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PD-A. 사업 추진 계획

1. 전자계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다. 그 밖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사도 조례 표준안]

제 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계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 다.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계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A02-3. 위치 선정

- 상업지역 공업지역 ----- ①
-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②
- 철도역 · 지하철역 · 공항 · 항만 ----- ③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④
-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⑤
- 시 ·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 ⑥
- 설치장소 선정 기준 ----- ⑦

① ②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 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29조 제 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1. 전자계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다. 그 밖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PD-A. 사업 추진 계획

▶ A02-3. 위치 선정

- 상업지역 공업지역 ----- ①
-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②
- 철도역 · 지하철역 · 공항 · 항만 ----- ③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④
-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⑤
- 시 ·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 ⑥
- 설치 장소 선정 기준 ----- ⑥

③ ④ ⑤

[시·도 조례 표준안]

제 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본 자료는 2017년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의 연구 보고서 자료 참조

[디지털사이니지 실증단지 조성 적격성 검토]로 수행기관은 (사)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이다.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 선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 제시

<1. 설치 지역 검토 기준>

| 1차 검토 | 2차 검토 | 최종 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산업, 경제, 인구 등 일반현황 • 위치, 주변 환경, 지원시설 • 랜드마크 • 주요 콘텐츠 • 상가협의 민원 접근성, 동선 • 관련 기초자치단체 조례 • 유사사업 추진사례 • 해당지역 광고시장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상징성 • 지역 필요성 • 유동인구 • 설치 가능성 • 운영 안정성 • 민원발생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상징성 • 지역 필요성 • 유동인구 • 타겟 비중 • 설치 용이성 • 운영 안정성 |

PD-A. 사업 추진 계획

| 지역 선정 기준 | 정의 |
|----------|---|
| 지역 상징성 | 사업 모델(사업 테마)을 적용하는데 있어 도시 내에서 해당 지역이 몇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장소인지에 대한 정도 |
| 지역 필요성 | 해당 사업 모델이 지역에서 실제 수요가 있는 사업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콘텐츠에 대한 지역 주민 또는 방문객의 수용 가능성, 활용도, 선호도 등의 정도 |
| 유동인구 | 해당 지역의 일평균 유동인구 수 |
| 타겟 밀집 비중 | 해당지역의 일평균 유동인구 중 해당 비즈모델의 타겟 인구 비중 |
| 설치 용이성 | 설치 가능한 장소가 목표 수량만큼 있고 전기수전 등이 용이하며 기존 거리 시설물의 방해를 받지 않는 정도 |
| 운영 안정성 | 설치 이후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파손, 오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와 민원 발생 소지가 없거나 발생 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 |

<2. 지역 검토 방법>

평가테이블에서 각 항목별 배점은 지역 상징성 10점, 지역 필요성 10점, 유동인구 10점, 타겟 비중 6점, 설치용이성 8점, 운영안정성 6점으로서 총 합계 5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의 기준에 따라 검토

| 구분 | 검토 기준 | 평가 방법 | | | | | 배점 |
|-------|--------|--------|--------|--------|--------|--------|----|
|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지역 선정 | 지역 상징성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10 |
| | 지역 필요성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10 |
| | 유동인구 | 20만 이상 | 15만 이상 | 8만 이상 | 5만 이상 | 5만 미만 | 10 |
| | 타겟 비중 | 3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15% 이상 | 15% 미만 | 6 |
| | 설치 용이성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8 |
| | 운영 안정성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6 |
| 소계 | | | | | | | 50 |

[지역 검토 평가 예시]

▶ A02-4. 설치 방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물품 1
- 전기공사업법 준수 2
-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3
- 전자계시대 다수설치 / 설치 높이 / 설치 위치 4
- 도로 점용 5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 제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2. 전자계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PD-A. 사업 추진 계획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계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계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③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A02-4. 설치 방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물품 1
- 전기공사업법 준수 2
-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3
- 전자계시대 다수설치/설치 높이/설치 위치 4
- 도로 점용 5

1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정의)

6.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인증 등)

-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PD-A. 사업 추진 계획

▶ A02-4. 설치 방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물품 ----- 1
- 전기공사업법 준수 ----- 2
-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 3
- 전자계시대 디수설치 / 설치 높이 / 설치 위치 ----- 4
- 도로 점용 ----- 5

②

[전기공사업법]

제 2조(정의)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3. "공사업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

-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 문자 ·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 제어 ·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제한)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 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PD-A. 사업 추진 계획

▶ A02-4. 설치 방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물품 ----- 1
- 전기공사업법 준수 ----- 2
-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 3
- 전자계시대 디수설치 / 설치 높이 / 설치 위치 ----- 4
- 도로 점용 ----- 5

4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③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29조 제 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4. 전자계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애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제 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뛰 련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D-A. 사업 추진 계획

▶ A02-4. 설치 방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물품 ----- 1
- 전기공사업법 준수 ----- 2
-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 ----- 3
- 전자게시대 다수설치 / 설치 높이 / 설치 위치 ----- 4
- 도로 점용 ----- 5

5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고랑,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23조(도로관리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의 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PD-A. 사업 추진 계획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17.12.5., 2021.1.5>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설치위치·규격·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PD-A. 사업 추진 계획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 · 점용장소 · 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신설 · 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 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 A02-5. 표시 방법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③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④ 광고물 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 · 도지사가 시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PD-A. 사업 추진 계획

[사군구 조례 표준안]

제6조(전자계시대의 표출관리)

-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계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계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자계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계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계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A02-6. 표시 면적

•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m² 이내

[옥외광고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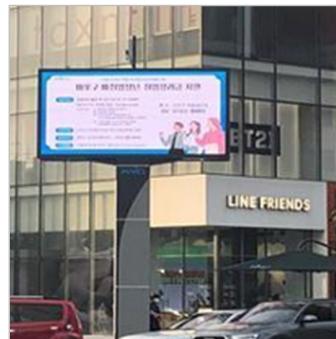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29조 제 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계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PD-A. 사업 추진 계획



[2:6비율-서울 서초구]



[3:4비율-서울 마포구]



[1:1 비율-부산 동구]

▶ A02-7. 표시 밝기

- 점멸/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및 반사하용 기준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26.>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 구분 측정기준 | 적용 시간 | 기준값 | 조명 환경 관리 구역 | | | | 단위 |
|------------|---------------------|-----|-------------|-----------|------------|------------|----------|
| | | | 제 1종 | 제 2종 | 제 3종 | 제 4종 |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24:00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m^2 |
| | 24:00 ~해뜨기 전 60분 |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

PD-A. 사업 추진 계획

▶ A02-8. 허가 대상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개정 2014.12.9., 2016.7.6., 2018.5.28., 2019.4.30>

6. 지주(의)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 · 네온 · 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의)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의)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
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 · 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
광고물

PD-A. 사업 추진 계획

A03

물품 구매 (PD) – 사업 추진 계획 (A) | **기대효과**

법 제도의 취지에 따른 공공 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

▶ A03-1. 기대효과

- 법적 정의에 따른 전자계시대 효과 제시
- 도시 공공디자인으로서 기대 효과
- 스마트 시티에서의 전자계시대 역할 및 효과

- 자체 홍보 및 공익 광고
-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마케팅 극대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 불법 광고물의 난립 방지
- 도시미관 개선
- 스마트 시티 기술 적용에 따른 도시 편의 증대 기대

PD-B. 사업 방식 결정

B01

물품 구매(PD) – 사업방식결정(B) | 물품 구매 사업

물품 구매는 지자체 예산으로 구매 설치 후 운영하는 전자게시대 사업

▶ B01-1. 물품 구매

- 법적 근거 ----- 1
- 사업 개요 ----- 2
- 자격 요건 ----- 3

1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2

조달청 구매로 내자(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방식으로 추진

전자게시대 물품은 지주 이용 디지털광고물 설치를 위한 1) 지주용 구조 기구물, 2) 디지털 디스플레이, 3) 관련 주변기기와 4) 통신, 네트워크 장비 및 디지털광고물 운영을 위한 5)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6) 컴퓨터 일체를 포함.

디지털디스플레이에는 소자 종류에 따라 옥외용 LCD 디스플레이와 LED디스플레이로 디스플레이 표시 면적 $12m^2$ 이내의 제품

3

전자게시대는 구매 및 설치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제작, 소프트웨어 납품, 콘텐츠 제작, 통신, 네트워크 장비 공급, 전기, 통신 공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이 참여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하드웨어 | 나라장터 제조 물품 등록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
| | 판로지원법 | - 안내전광판(5512190301)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1468)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1426) |
| 설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
| | 전기공사업법 | - 전기공사업(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0036) |
| 기업 자격 | 판로지원법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 지방계약법 | - 분점소재지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

PD-C. 사업 요청서 수립

C01

물품 구매(PD) – 사업 요청서 수립(C) | 계약방법

조달을 통한 물품(제조)구매 시 계약 방법 제시

▶ C01-1. 제한 입찰

- 참여업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입찰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12.24>

▶ C01-2. 계약 이행 능력 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 일정한 가격 보전(낙찰 하한율 8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PD-C. 사업 요청서 수립

C02

물품 구매(PD) – 사업 요청서 수립(C) | 사업자 이행 조건

물품(제조)구매에 따른 사업자 자격 조건 제시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1
- 중소기업·소상공인증명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자 3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4
- 전기공사 등록한 업체(협력사) 5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협력사)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협력사) 7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협력사) 8

1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

(□)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PD-C. 사업 요청서 수립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
 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
 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
 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1
- 중소 기업·소상공인증명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3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4
- 전기공사 등록한업체(협력사) 5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업체(협력사)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전광판)를 소지한업체(협력사) 7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업체(협력사) 8

3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 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0.10.20.>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PD-C. 사업 요청서 수립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 아.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 할 염려가 있는 자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PD-C. 사업 요청서 수립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설 2018.12.24.>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1
- 중소기업·소상공인증명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3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4
- 전기공사 등록한 업체(협력사) 5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협력사)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협력사) 7
- 금속구조물장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협력사) 8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PD-C. 사업 요청서 수립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 1
- 중소기업·소상공인증명 -----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 3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 4
- 전기공사 등록한 업체(협력사) ----- 5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협력사) -----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협력사) ----- 7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협력사) ----- 8

5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외주 용역인 경우 관련 증빙 자료 필요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 1.“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3.“공사업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

-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 1.“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2.“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 3.“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 자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4.“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8.“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PD-C. 사업 요청서 수립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 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 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1
- 중소기업·소상공인증명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거나 아니한 자 3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4
- 전기공사 등록한 업체(협력사) 5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협력사)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협력사) 7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협력사) 8

7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2.18.>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21>

PD-C. 사업 요청서 수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 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1
- 중소 기업·소상공인증명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3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4
- 전기공사 등록한 업체(협력사) 5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협력사)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협력사) 7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협력사) 8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20. 12.29>

PD-C. 사업 요청서 수립

▶ C02-2. 민원제기

-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

| 민원 종류 | 정의 |
|---------|---|
| 설치 과정 예 | 소음, 진동, 교통 방해, 보도 진행 방해, 도시 미관, 건물 조망 방해, 상가 간판 가림, 빛공해 |



[소음, 진동 요소]



[교통 방해 요소]



[건물 조망 및 간판 가림 요소]



[빛공해 요소]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일반민원
 -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D-C. 사업 요청서 수립

C03

물품 구매(PD) – 사업 요청서 수립(C) | 전자게시대 기본 사양

전자게시대는 디지털광고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통신 및 네트워크, 기구 구조물 등으로 구성_관련한 참고 기본 사양 제기

▶ C03-1. 전자게시대 (LED형) 기본 사양

- [KS 및 인증, 공인시험서 제출 제품 우대]
- Pixel pitch : 7mm 미만
- 휘도(nit) : 5,000nit 이상
- 가시각: Hor. 110°, Ver. 110° 이상
- 폴리커프리(Fliker Free)
- 작동온도:-25°C ~ +60°C
- IP 등급: 65 이상
- LED 수명 : 10,0000 시간 이상
- 자동 조도 조절: 필수 적용

<기술 인증 부품 및 제품>

제품 및 부품은 KS규격품 및 전자제품형식 승인품을 사용하고, KS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최우량품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을 사용 원칙 관련 인증서 제출

KC전자파 적합인증 제품 우선

- 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전자기파 적합성: 외부로부터의 전자기파 간섭 내성시험
- EMS시험(전자파 간섭장해): EMS는 방사에 의해 다른기기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하며 시험하는 기기에서 동중으로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해 다른 기기가 영향을 받는 전체적인 현상을 시험
- EMS시험(전자파 내성, 감응성): 전자파 장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 장치, 시스템 등 기기 작동의 성능 저하 없이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시험하는 기기에 다른 기기로부터 전자기적 방해를 받아도 정상동작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시험

<KS 기술규격>

- 저온 시험: KS CIEC 60068-2-1: 상온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을 방치하거나, 동작하였을 때 정상 동작하는 지 확인
- 고온 시험: KS CIEC 60068-2-1: 상온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을 방치하거나, 동작하였을 때 정상 동작하는 지 확인
- 온습도 시험: KS CIEC 60068-2-78: 고온, 고습한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
- 방수방진 시험: KS CIEC 60529: 생활방수 및 강수가 존재하는 환경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
- 외부 충격 시험: KS CIEC 62262: 외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해 디지털광고물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를 확인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하드웨어 | 나라장터 제조 물품 등록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
| | 판로지원법 | - 안내 전광판(5512190301) |

PD-C. 사업 요청서 수립

▶ C03-2. 공공디자인 요소

- 전자계시대 디자인은 각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부합
- 필요시 공공디자인 심의 위원회 의견 반영
- 도시 경관에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
-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외부 노출금지

[공공디자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설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

▶ C03-3. CMS 소프트웨어

- GS 인증 소프트웨어 우대
- 네트워크 통신(인터넷 통신 등등)을 이용한 콘텐츠 관리 운영
- 콘텐츠를 전자계시대 셋탑으로 다운로드 받아 콘텐츠 스케줄 기반 광고 운영
- 전원 스케줄에 의한 전원 관리 운영
- 실시간 콘텐츠 운영 현황 확인
- 장비 운영 이력 관리 및 로그 관리 기능 포함
- 설치 위치별 콘텐츠 관리 및 운영 상황 모니터링 기능 포함
- 이미지, 동영상, URL 지원
- 자막 기능 및 간접 송출 기능 포함

[참고자료]

* 별첨 9 : 소프트웨어 표준 사양서

PD-C. 사업 요청서 수립

▶ C03-4. 보안

-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디지털광고물에 접속하여 연결 - 인바운드(Inbound)하는 것은 불허
- 방화벽이 설치된 통신망 주소 변환기(NAT) 시스템을 통해 사설 IP 주소를 사용
- 디지털광고물은 자체 방화벽 시스템 운영 필요
- 디지털광고물은 다른 대상과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FTP와 HTTP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 규격 사용
- 디지털광고물이 웹(Web)기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대상과의 연결에 반드시 보안 프로토콜(HTTPS)를 사용
-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한 데이터 전송 시 보안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1426) |

▶ C03-5. 지원 콘텐츠 형식

- 지원 이미지 파일 포맷:BMP, JPEG, PNG
- 동영상파일 포맷: mp4, 비디오 코덱은 H264, MPEG-1, 오디오 코덱 MP3, MPEG-2 AAC
- 동영상최소 프레임 수:24프레임/초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1426) |

PD-C. 사업 요청서 수립

C04

물품 구매(PD) – 사업 요청서 수립(C) | 기본 설계서 검토

전자게시대 제안 요청서 반영을 위한 설계서, 사양서가 포함된 시방서

▶ C04-1. 시방서

- 설계서 및 사양서 참조

[참고자료]

* 별첨 24: 지자체 시방서 샘플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하드웨어 | 나라장터 제조 물품 등록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
| | 판로지원법 | - 안내전광판(5512190301)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1468)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1426) |
| 설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
| | 전기공사업법 | - 전기공사업(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0036) |

PD-D. 사업자 선정

D01

물품 구매(PD) – 사업자 선정(D) | 서류

입찰 참여를 위한 준비 기업 준비 서류

▶ D01-1. 입찰자 제출 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②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이행능력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이행능력 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이행능력 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PD-D. 사업자 선정

D02

물품 구매(PD) – 사업자 선정(D) | 선정 기준

입찰 참여업체 법적 평가 기준 제시

▶ D02-1. 평가

- 배점 기준 및 평가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이행능력 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중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의 개방대상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3] [별표 1-3] [별표 2-3]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라 기타 항목의 수출우수기업 가점은 제외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수출우수기업 가점은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PD-D. 사업자 선정

D03

물품 구매(PD) – 사업자 선정(D) | 평가 항목

입찰 참여 업체 역량 평가 항목_ 물품(제조) 구매이지만 소프트웨어와 설치,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평가 필요

▶ D03-1. 소프트웨어 제공

• C03-3 / C03-4 준수 여부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1426) |

C03-3. CMS 소프트웨어

- GS 인증 소프트웨어 우대
- 네트워크통신(인터넷 통신 등등)을 이용한 콘텐츠 관리 운영
- 콘텐츠를 전자게시대 셋톱으로 다운로드 받아 콘텐츠 스케줄 기반 광고 운영
- 전원 스케줄에 의한 전원 관리 운영
- 실시간 콘텐츠 운영 현황 확인
- 장비 운영 이력 관리 및 로그 관리 기능 포함
- 설치위치별 콘텐츠 관리 및 운영 상황 모니터링 기능 포함
- 이미지, 동영상, URL 지원
- 자막 기능 및 긴급 송출 기능 포함

C03-4. 보안

-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디지털광고물에 접속하여 연결 - 인바운드(Inbound)하는 것은 불허
- 방화벽이 설치된 통신망 주소 변환기(NAT) 시스템을 통해 사설 IP 주소를 사용
- 디지털광고물은 자체 방화벽 시스템 운영 필요
- 디지털광고물은 다른 대상과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FTP와 HTTP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 규격 사용
- 디지털광고물이 웹(Web)기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대상과의 연결 시 반드시 보안 프로토콜(HTTPS)를 사용
-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한 데이터 전송 시 보안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참고자료]

*별첨 9 : 소프트웨어 기본 시방서

PD-D. 사업자 선정

▶ D03-2. 하드웨어 사양

- C04-1 준수 여부
- 기타 추가 기능 기기 반영 여부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하드웨어 | 나라장터 제조 물품 등록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
| | 판로지원법 | - 안내 전광판(5512190301) |

C03-1. LED 디스플레이

- [KS 및 인증, 공인 시험서 제출 제품 우대]
- Pixel pitch : 7mm 미만
- 휘도(nit) : 5,000nit 이상
- 가시각: Hor. 110°, Ver. 110° 이상
- 플리커프리 (Flicker Free)
- 작동 온도:-25°C ~ +60°C
- IP 등급: 65 이상
- LED 수명 : 10,0000 시간 이상
- 자동 조도 조절: 필수 적용

<기술 인증 부품 및 제품>

제품 및 부품은 KS 규격품 및 전자제품형식 승인품을 사용하고, KS 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최우량품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을 사용 원칙 관련 인증서 제출

KC전자파 적합인증 제품 우선

- 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전자기파 적합성: 외부로부터의 전자기파 간섭 내성시험
- EMI시험(전자파 간섭장해): EMI는 방사에 의해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하며 시험하는 기기에서 동종으로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해 다른 기기가 영향을 받는 전체적인 현상을 시험
- EMS시험(전자파 내성, 감응성): 전자파 장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 장치, 시스템 등 기기 작동의 성능 저하 없이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시험하는 기기에 다른 기기로부터 전자기적 방해를 받아도 정상동작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시험

<KS 기술규격>

- 저온 시험: KS CIEC 60068-2-1: 상온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을 방치하거나, 동작하였을 때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고온 시험: KS CIEC 60068-2-1: 상온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을 방치하거나, 동작하였을 때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온습도 시험: KS CIEC 60068-2-78: 고온, 고습한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
- 방수방진 시험: KS CIEC 60529: 생활방수 및 강수가 존재하는 환경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디지털광고물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
- 외부 충격 시험: KS CIEC 62262: 외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해 디지털광고물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를 확인

[참고 자료]

* 별첨 3 :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PD-D. 사업자 선정

▶ D03-3. IT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소프트웨어 운영 인력
- 하드웨어 운영 인력

[참고 자료]

* 별첨19: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력 기술자
보유 현황 참조

D03- 4 ~ 6 사업자 선정 시 입찰 참여 업체 사업 준비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요소로 요청 가능

▶ D03-4. 외함(합체) 디자인

- 위치별 여건에 맞는 특화디자인
- 랜드마크 디자인
- 지자체 특성 반영 디자인
- 유지보수 및 안정성 확보 디자인

▶ D03-5. 하드웨어 장애 및 복구 방안

- 장애 복구 프로세스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조치 기간 및 부품 보유 및 조달 방법
- 장애 유형 보유 및 매뉴얼 보유 유무

▶ D03-6. 하드웨어 유지보수 관리계획

- 유지보수 매뉴얼 보유
- 유지보수 인력 보유
- 유지보수 내역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 정기 유지보수 기간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하드웨어 | 나라장터 제조 물품 등록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4511189301) |
| | 판로지원법 | - 안내전광판 (5512190301)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1468)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1426) |
| 설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
| | 전기공사업법 | - 전기공사업 (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 (0036) |

PD-D. 사업자 선정

▶ D03-7. 공공성

- 공공 요소 반영 부분
- 전자계시대 설치에 따른 지자체에 기여하는 예상 효과
- 스마트 시티에서의 공공 시설물 효과

<스마트 시티에서의 공공 시설물>

1. 장소



[서울 성동구 스마트 쉼터]



[서울 서초구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서울 스마트 버스 안내]

2. 계시 형태



[서울 마포구 디지털 홍보 게시대]



[서울 중구관광 안내도]



[둔의문 역사 정보]

3. 해외



PD-D. 사업자 선정

▶ D03-8. 민원 해소 방안

- C03-5 참조

C02-2. 민원제기

-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

| 민원 종류 | 정의 |
|---------|--|
| 설치 과정 예 | 소음, 진동, 교통 방해, 보도 진행 방해, 도시 미관, 건물 조망 방해, 상가 간판 가림 |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D03-9. 기업 평가

- 기업 신용도 평가
- 인력 및 조직 운영 계획

[참고 자료]

* 별첨 19: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PD-D. 사업자 선정

D04

물품 구매(PD) – 사업자 선정(D) | 낙찰

협상 적격자 선정 기준 제시

▶ D04-1. 업체 평가 방법

• 업체 선정 평가 방법 제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6조(평가방법)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1]에 따른다
 -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 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
 -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3]에 따른다.
-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3-1], [별표 3-2]에 따른다.
 -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등급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 배점한도 (+3~ -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라. 기타 항목의 수출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은 심사분야별로 합산한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PD-E. 설치

E01

물품 구매(PD) – 설치(E) | 실시설계서

실시설계서 및 시방서 반영 내용을 확인

▶ E01-1. 전자게시대 기기 및 설치

- 설치장소 지적도 및 설계도서
- 전자게시대 시스템 구조도 (네트워크, 기기간 연계 콘텐츠 흐름)
- 전자게시대 험체 설계도면
- 현장 지적도 및 공사 계획 및 설치 도면
- (필요시)구조 계산 및 설계도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정의)

6.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인증 등)

-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3.3.23., 2013.12.30., 2021.4.20>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10.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PD-E. 설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 별첨 11: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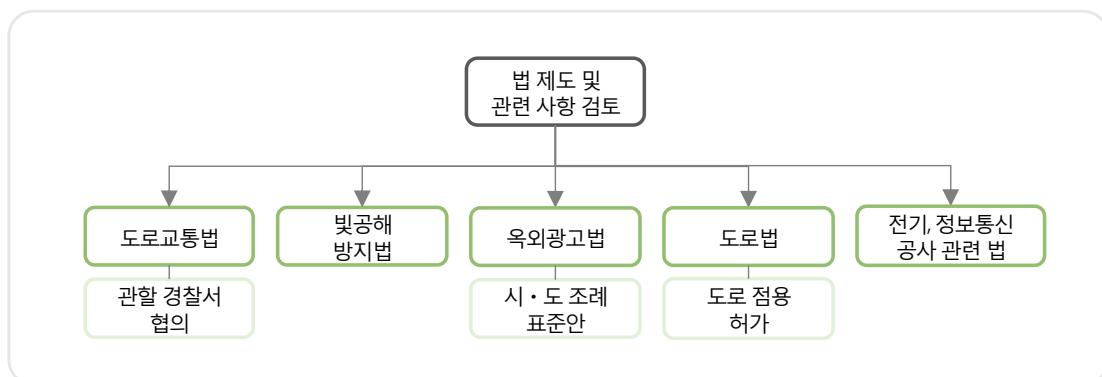
E02

물품 구매(PD) – 설치(E) | 법 제도

전자게시대 설치를 위한 법 준수 검토

▶ E02-1. 관련 법 심의 및 신고, 허가

- 옥외광고법 검토 완료
- 경찰서 협의승인
- 도로 점용 허가
- 빛공해방지법 검토 완료



PD-E. 설치

[도로 점용 전자계시대 설치 과정]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설치 공사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0036) |

1.기초 터파기 공사



5.기초 타설



2.접지 공사



6.통신 및 전기케이블 포설 및 전원 공사



3.배관 굴착 공사



7.전자계시대 설치



4.기초 타설



- 위 1~7의 과정은 전자계시대 설치 공사 관련 유사 사례 제시
- 과정은 현장 설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PD-E. 설치

E03

물품 구매(PD) – 설치(E) | 민원처리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

▶ E03-1. 해결 방안 및
프로세스 • C02-2 참조

C02-2. 민원제기

-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

| | |
|---------|--|
| 민원 종류 | 정의 |
| 설치 과정 예 | 소음, 진동, 교통 방해, 보도 진행 방해, 도시 미관, 건물 조망 방해, 상가 간판 가림 |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일반민원
 -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D-E. 설치

E04

물품 구매(PD) – 설치(E) | 보안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운영 보안 사항 점검 및 보안 인증 제품 검토

▶ E04-1. 네트워크 및 기기 보안 • C03-4 참조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1426) |
| 설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

C03-4. 보안

-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디지털광고물에 접속하여 연결 - 인바운드(Inbound)하는 것은 불허
- 방화벽이 설치된 통신망 주소 변환기(NAT) 시스템을 통해 사설IP 주소를 사용
- 디지털광고물은 자체 방화벽 시스템 운영 필요
- 디지털광고물은 다른 대상과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FTP와 HTTP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 규격 사용
- 디지털광고물이 웹(Web)기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대상과의 연결 시 반드시 보안 프로토콜(HTTPS)를 사용
-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한 데이터 전송 시 보안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 기기 보안

- 외함(함체) 잠금 장치
- 외함(함체) 외부 충격에 따른 파손 방지 안

PD-E. 설치

E05

물품 구매(PD) – 설치(E) | 설치 완료

제안서류 내역과 설치 완료 비교, 현장 검수 등을 위한 서류

▶ E05-1. 근거 서류 및 완료 보고

- 준공 도서 및 서류 제출
- 완료 보고서 제출

[참고 자료]

* 별첨 13: 준공관련 서류 및 도서 리스트

PD-G. 유지 보수

G01물품 구매(PD) – 유지보수(G) | **유지보수**무상 유지보수 사항 내역 및 정기 점검 사항 보고 요청**▶ G02-1. 현장 안전 점검**

- 안전점검 항목 구성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시기 및 결과 보고

▶ G02-2. IT관련 유지보수

- 하드웨어 유지보수 및 수리 내역서
- 유지보수 부품 재고 관리 현황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버전 관리
- 보안 상황 및 이슈 보고서

G02물품 구매(PD) – 유지보수(G) | **고장신고**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 처리 보고서 작성 요청**▶ G03-1. 고장 처리 프로세스**

- 고장 접수 및 해결 프로세스
- 사안 별 고장 처리 기간 설정 및 결과 보고

Ⅱ.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절차 가이드라인

3. 광고 위탁 용역

AD (Advertisement)

- A. 사업 추진 계획
- B. 사업 방식 결정
- C. 사업 요청서 수립
- D. 사업자 선정
- E. 운영
- F. 유지 보수

AD-A. 사업 추진 계획

A01 목적수립

A01-1

광고목적 및 대상

-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는 광고

A01-2

도시미관

-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 방지
-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

A01-3

기술

- 스마트 시티 기술 트렌드에 맞춘 전자계시대 구성

A02 기대효과

A03-1

법률기준

- 법 제도 측면 전자계시대 설치 ·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

A03-2

광고위탁

- 지역 광고 산업 지원 육성 효과

AD-B. 사업 방식 결정

B01 광고위탁사업

B01-1

광고위탁사업

- 법적 근거
- 사업 개요
- 자격 요건

AD-C. 사업 요청서 수립

C01 계약방법

C01-1

제한입찰

- 참여 업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입찰

C01-2

협상에 의한계약

- 가격(기술)으로 나누어 협상
- 낙찰자 결정 기준

C02 사업자이행조건

C02-1

자격요건

- 해당 자체 소재 등록법인
- 중소 기업소상공인 증명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사업 등록 법인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한 법인

C02-2

책임범위

-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 운영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는 광고 영업
- 전자계시대 광고 콘텐츠 운영·관리

C03 검토사항

C03-1

사업성

- 최소 운영·유지비 충당 검토
-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 운영 효과 추정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는 광고 효과 추정

C03-2

민원제기

- 운영 중 예상 민원
(부공해, 부적절 광고 노출, 침해사고, 해당 시설물 및 주변 환경 미화)

AD-D. 사업자 선정

D01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제출 서류

D01-1

공모참가 등록서류

-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응모자 등록용) 및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신고필증 등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D01-2

구비서류
(평가자료)

- 일반현황 및 연혁
- 전자계시대 운영사업 수행실적 증명자료
- 기술인력 및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신용평가증명서
- 업체 경영상태 확인서(또는 공인회계사가 증명하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 신인도 증빙자료 등

D02 평가위원구성(협상에의한계약)

D02-1

구성인원

- 전문 평가위원 구성은 3배수 풀 구성 후 7인 선정

D03 평가항목

D03-1

소프트웨어운영

CMS
소프트
웨어

- GS 인증 소프트웨어 우대
- 네트워크통신(인터넷, 통신 등등)을 이용한 콘텐츠 관리 운영
- 콘텐츠를 전자계시대 셋탑으로 다운로드 받아 콘텐츠 스케줄 기반 광고 운영
- 전원 스케줄에 의한 전원 관리 운영
- 실시간 콘텐츠 운영 현황 확인
- 장비 운영 이력 관리 및 로그 관리 기능 포함
- 설치위치별 콘텐츠 관리 및 운영상황 모니터링 기능 포함
- 이미지, 동영상, URL 지원
- 자막 기능 및 긴급 송출 기능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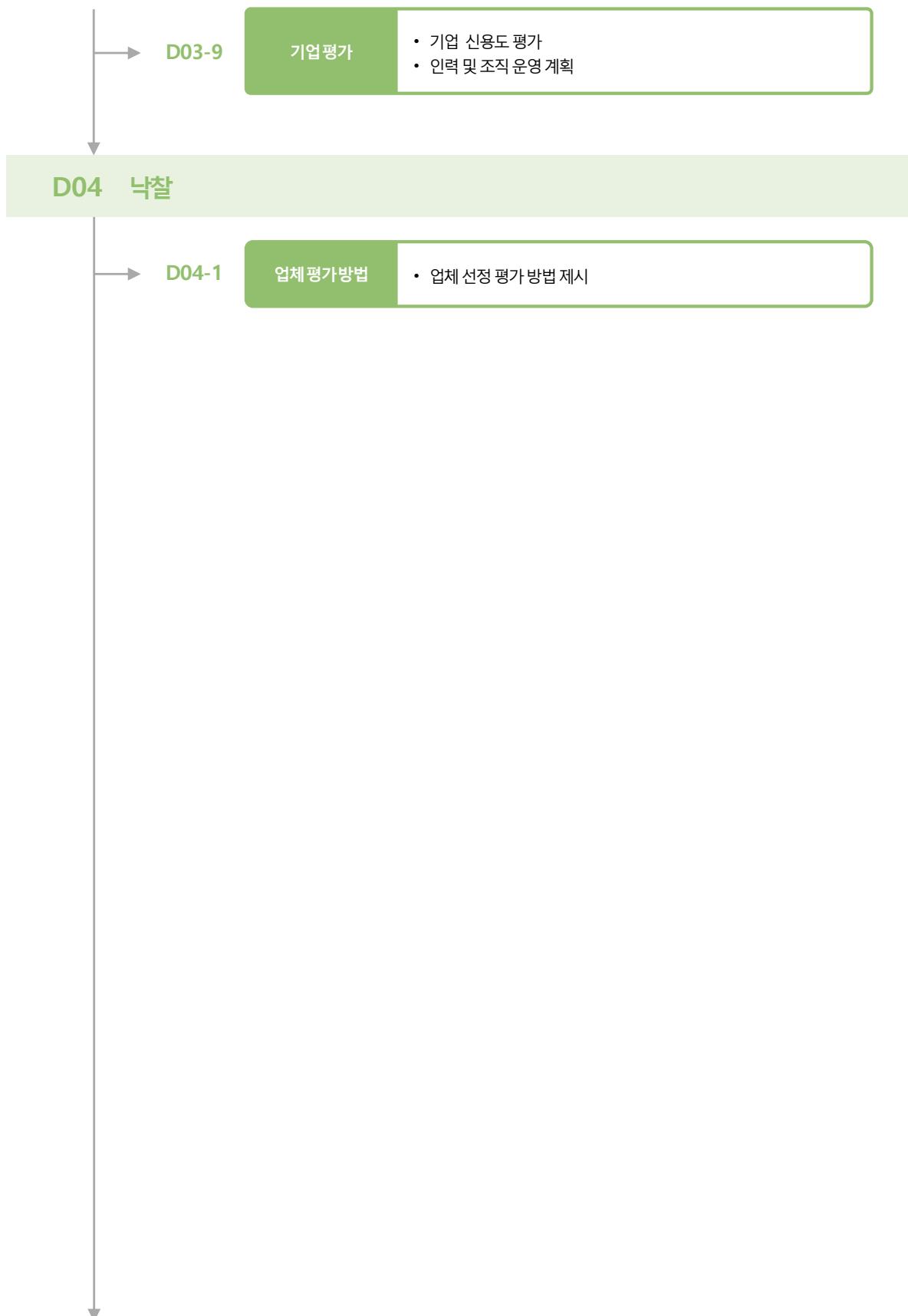
보안

-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디지털광고물에 접속하여 연결 -인바운드(Inbound) 하는 것은 불허
- 방화벽이 설치된 통신망 주소 변환기(NAT) 시스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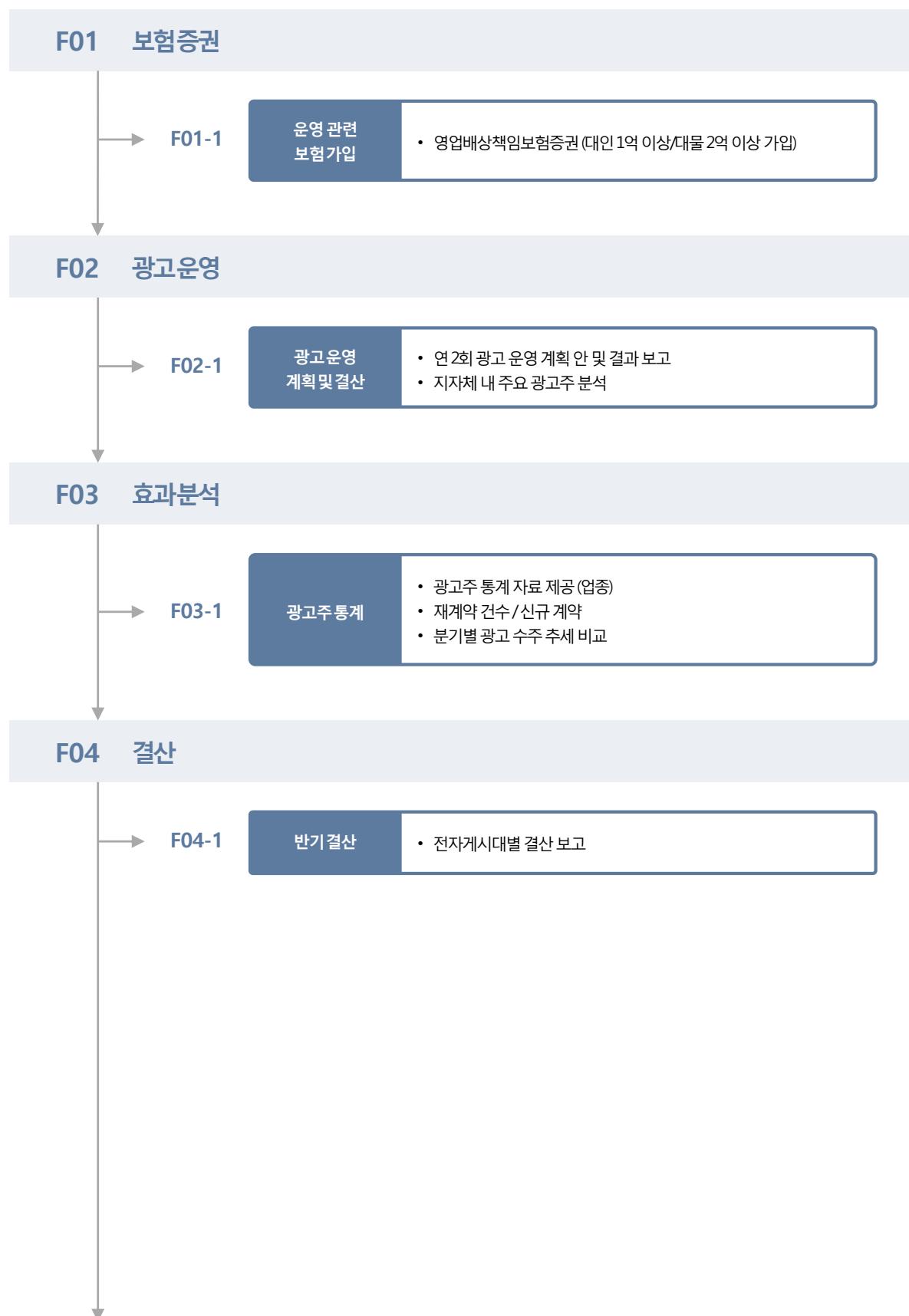
AD-D. 사업자 선정



AD-D. 사업자 선정



AD-F. 운영



AD-G. 유지 보수



3. 광고 위탁 용역 (AD)

- **프로세스 핵심 코드**

AD-A. 사업 추진 계획

| | | |
|-----|------|-----|
| A01 | 목적수립 | 196 |
| A02 | 기대효과 | 199 |

AD-B. 사업 방식 결정

| | | |
|-----|--------|-----|
| B01 | 광고위탁사업 | 200 |
|-----|--------|-----|

AD-C. 사업 요청서 수립

| | | |
|-----|---------|-----|
| C01 | 계약방법 | 202 |
| C02 | 사업자이행조건 | 204 |
| C03 | 검토사항 | 208 |

AD-D. 사업자 선정

| | | |
|-----|-----------------|-----|
| D01 |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제출서류 | 210 |
| D02 | 평가위원구성(협상에의한계약) | 211 |
| D03 | 평가항목 | 212 |
| D04 | 낙찰 | 215 |

AD-F. 운영

| | | |
|-----|------|-----|
| F01 | 보험증권 | 216 |
| F02 | 광고운영 | 216 |

3. 광고 위탁 용역 (AD)

- **프로세스 핵심 코드**

F03 **효과분석**

217

F04 **결산**

217

AD-G. 유지 보수G01 **민원**

218

G03 **고장신고**

218

G04 **재난재해**

219

AD-A. 사업 추진 계획

A01

광고 위탁 용역(AD) – 사업 추진 계획(A) | 목적수립

전자게시대 목적 수립은 공공 목적 광고 표시 / 도시 미관 / 새로운 기술 적용 옥외광고물

▶ A01-1. 광고목적 및 대상

-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는 광고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 제2항 각 호의 법(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하거나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신설2016.7.6., 2021.12.14.>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전통시장법]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AD-A. 사업 추진 계획

▶ A01-2. 도시 미관

-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 방지
-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 사례]



[법규 위반 및 광고 주목도가 낮은 전자게시대 사례]



[해외 거리 문화 조성 사례]

AD-A. 사업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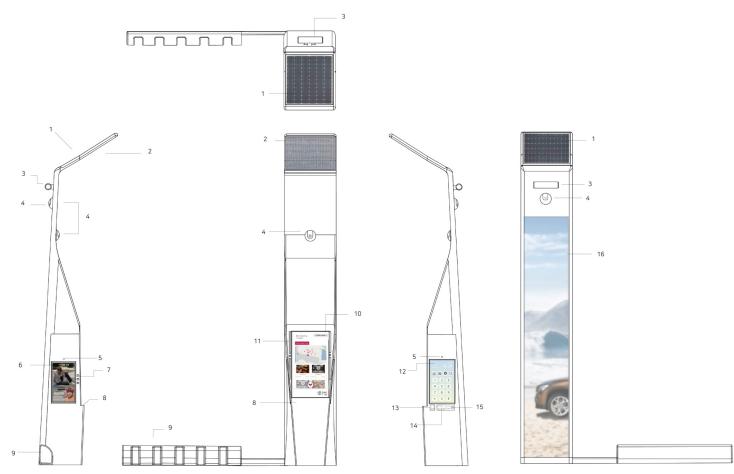
▶ A01-3. 기술

- 스마트 시티 기술 트렌드에 맞춘 전자계시대 구성

< 참고 사항 - 트렌드 >

트렌드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된 공공목적의 광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보 중심의 공공 미디어 서비스가 반영된 전자계시대가 필요함

| | | |
|-----|--------------------|-----------------------|
| Ex) | 1 태양열 전지 패널 | 9 킥보드 거치대 |
| | 2 스마트 가로등 | 10 도시·관광 정보 & 길 찾기 |
| | 3 IoT sensor box | 11 스피커, 마이크 |
| | 4 CCTV 카메라 | 12 도시 주요 기관 정보, 검색 기능 |
| | 5 화상 통화용 카메라 | 13 전화 |
| | 6 공공 정보 서비스 | 14 결제 기기 |
| | 7 긴급 상황 시 원격 연결 통신 | 15 아날로그 다이얼 |
| | 8 충전 박스(스마트폰, 킥보드) | 16 광고 디스플레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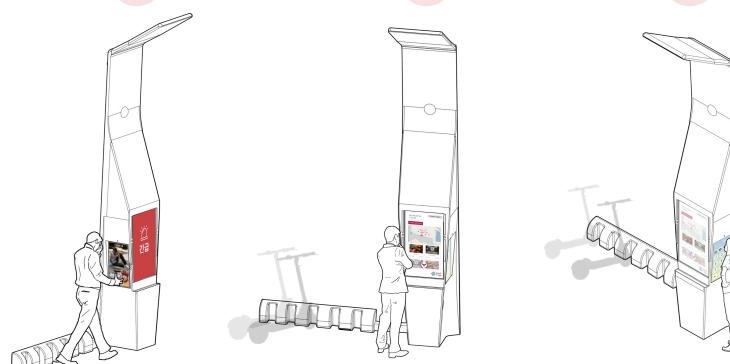


Concept Design by M&M Networks

공공 서비스

도시 관광 정보

전화 서비스



Concept Design by M&M Networks

[스마트시티에서의 전자계시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컨셉 이미지 예시]

AD-A. 사업 추진 계획

A02**광고 위탁 용역(AD)–사업 추진 계획(A) | 기대효과**

광고 위탁 용역으로 효과적인 지자체 공익광고 운영과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기대

▶ A02-1. 법률 기준

- 법 제도 측면 전자계시대 설치·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

- 지자체 홍보 및 공익 광고
-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마케팅 극대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 불법 광고물의 난립 방지
- 도시미관 개선

▶ A02-2. 광고 위탁

- 지역 광고 산업 지원 육성 효과

-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광고 위탁 운영
- 전자계시대 운영 수익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
- 광고 위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익 광고 운영

AD-B. 사업 방식 결정

B01

광고 위탁 용역 (AD) – 사업방식결정 (B) | 광고 위탁 사업

광고 위탁 사업자 요건 및 사업 개요

▶ B01-1. 광고 위탁 사업

- 법적근거 ----- 1
- 사업개요 ----- 2
- 자격요건 ----- 3

1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 ③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6_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 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 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 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 자격취득자

비고

1. 별표 6_기술능력_ 1,2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은 상시 근무해야 한다.

2

광고위탁 용역사업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을 광고주로 한 광고 영업을 수행할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 후
옥외광고영업과 전자계시대 광고 게재 및 운영, 관리 담당

AD-B. 사업 방식 결정

▶ B01-1. 광고 위탁 사업

- 법적 근거 ----- ①
- 사업 개요 ----- ②
- 자격 요건 ----- ③

③

온라인광고사업자격을 갖춘 자로 디지털광고물을 운영을 위해 콘텐츠 제작 및 소프트웨어 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함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광고 영업 | 온라인광고법 | - 온라인광고사업 등록 |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 - 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 사업(1469) |
| 기업 자격 | 판로지원법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제20조) |

AD-C. 사업 요청서 수립

C01

광고 위탁 용역(AD) – 사업 요청서 수립(C) | 계약방법

옥외광고를 중심으로 ICT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으로 관련한 계약 방법 제시

▶ C01-1. 제한 입찰

- 참여 업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입찰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12.24>

▶ C01-2.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기술)으로 나누어 협상

- 낙찰자 결정 기준

1

2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2016.9.13>

⑨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AD-C. 사업 요청서 수립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C01-2.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기술)으로 나누어 협상 ----- 1
- 낙찰자 결정 기준 ----- 2

2

[참고 자료] *별첨 19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1절 통칙

1. 목적

이 예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나.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AD-C. 사업 요청서 수립

C02

광고 위탁 용역(AD) – 사업 요청서 수립(C) | 사업자 이행 조건

자본 투자 능력과 옥외광고사업 자격과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을 위한 ICT 관련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협력사에 대한 증빙 및 기업 역량 제시 필요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1
- 중소기업·소상공인 증명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3
- 옥외광고사업 등록 법인 4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한 법인 5

1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 (□)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AD-C. 사업 요청서 수립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사적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1
- 중소기업·소상공인증명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거나 아니한 자 3
- 옥외광고사업 등록 법인 4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한 법인 5

3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 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0.10.20.>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AD-C. 사업 요청서 수립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순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설 2018.12.24.>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AD-C. 사업 요청서 수립

▶ C02-1. 자격 요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 1
- 중소기업·소상공인증명 ----- 2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자 ----- 3
- 옥외광고사업 등록 법인 ----- 4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한 법인 ----- 5

4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 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문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C02-2. 책임 범위

-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 운영
-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는 광고 영업
- 전자계시대 광고 콘텐츠 운영 관리

AD-C. 사업 요청서 수립

C03

광고 위탁 용역(AD) – 사업 요청서 수립(C) | 검토 사항

광고 위탁 용역을 통한 효과 예측

▶ C03-1. 사업성

- 최소 운영 유지비 충당 검토
-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 운영 효과 추정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는 광고 효과 추정

<광고 사업 운영 현황>

전자계시대 운영 지자체 및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조사 내용 기반

- 총 매출 / 당 = (전체 구좌수 * 계첨율) * 구좌단가
- 월 광고 금액 서울 및 일부 수도권 & 광역시 평균 50만원 수준, 일부 광역시 및 지방 중소도시 20~30만원 수준
- 계첨율 : 서울 평균 40~50%, 광역시 및 수도권 평균 30~40%, 지방 지자체 평균 20~30% 수준

<서울 지역 기준 전자계시대 운영 현황>

| 월 광고 금액 | 총 구좌 수 | 상업 광고비율 | 평균 계첨율 | 비용 내역 |
|---------|--------|---------|--------|---|
| 500,000 | 25 | 80% | 40~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 (현장, IT) • 광고 영업 수수료 • 내부 인건비 • 기타 운영 비용 등등 |

<지방 지자체 지역 기준 전자계시대 운영 현황>

| 월 광고 금액 | 총 구좌 수 | 상업 광고비율 | 평균 계첨율 | 비용 내역 |
|-------------------|--------|---------|--------|---|
| 200,000 ~ 300,000 | 25 | 80% | 20~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인건비 • 기타 운영 비용 등등 |

AD-C. 사업 요청서 수립

▶ C03-2. 민원제기

- 운영중 예상 민원

| | |
|-------|--------------------------------|
| 민원 종류 | 정의 |
| 운영 중 | 빛공해, 부적절 광고 노출, 전자계시대 주변 환경 미화 |



[빛공해 요소]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 ·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 · 월 ·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AD-D. 사업자 선정

D01

광고 위탁 용역(AD) – 사업자 선정(D)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
서류

공모 참가 및 평가를 위한 참여 기업 준비 서류

▶ D01-1. 공모 참가등록 서류

-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응모자 등록용) 및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신고필증 등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 D01-2. 구비 서류
(평가자료)

- 일반현황 및 연혁
- 전자계시대 운영사업 수행실적 증명자료
- 기술인력 및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신용평가증명서
- 업체 경영상태 확인서(또는 공인회계사가 증명하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 신인도 증빙자료 등

[참고자료]

* 별첨 19: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별첨 20: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AD-D. 사업자 선정

D02

광고 위탁 용역(AD) – 사업자 선정(D) | 평가 위원 구성(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 평가 위원 구성_ 옥외광고, 소프트웨어 등의 전문가로
구성 추천

▶ D02-1. 구성 인원

- 전문 평가 위원 구성은 3배수 풀 구성 후 7인 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⑨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참고 자료]

- * 별첨 1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별첨 20: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별첨 21: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265호)

AD-D. 사업자 선정

D03

광고 위탁 용역(AD) – 사업자 선정(D) | 평가 항목

입찰 참가 업체 역량 평가를 위한 항목 기준 제시

▶ D03-1. 소프트웨어 운영

- 소프트웨어 및 보안 관련 솔루션 운영 능력
- 통합 관제실 또는 솔루션 보유 여부
- 옥외광고미디어사 소프트웨어 보유 여부
- 협력사 및 외주 소프트웨어 운영인 경우 해당 기업 정보 확인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소프트웨어 | 판로지원법 |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1426) |

CMS 소프트웨어

- GS 인증 소프트웨어 우대
- 네트워크 통신(인터넷, 통신 등등)을 이용한 콘텐츠 관리 운영
- 콘텐츠를 전자계시대 셋탑으로 다운로드 받아 콘텐츠 스케줄 기반 광고 운영
- 전원 스케줄에 의한 전원 관리 운영
- 실시간 콘텐츠 운영 현황 확인
- 장비 운영 이력 관리 및 로그 관리 기능 포함
- 설치위치별 콘텐츠 관리 및 운영 상황 모니터링 기능 포함
- 이미지, 동영상, URL 지원
- 자막 기능 및 긴급 송출 기능 포함

보안

-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디지털광고물에 접속하여 연결– 인바운드(Inbound)하는 것은 불허
- 방화벽이 설치된 통신망 주소 변환기(NAT) 시스템을 통해 사설 IP 주소를 사용
- 디지털광고물은 자체 방화벽 시스템 운영 필요
- 디지털광고물은 다른 대상과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FTP와 HTTP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 규격 사용
- 디지털광고물이 웹(Web) 기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대상과의 연결 시 반드시 보안 프로토콜(HTTPS)를 사용
-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한 데이터 전송 시 보안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참고자료]

*별첨 9 : 소프트웨어 기본 시방서

AD-D. 사업자 선정

▶ D03-2. IT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통합 관제 운영 인력
- 소프트웨어 운영 인력
- 콘텐츠 제작 인력

[참고자료]

* 별첨19: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력 기술자
보유 현황 참조

D03- 3 ~ 6 사업자 선정 시 입찰 참여 업체 사업 준비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요소로 요청 가능

▶ D03-3. 디지털광고물 장애 및 복구 방안

- 장애 복구 프로세스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법
- 장애 유형 보유 및 매뉴얼 보유 유무

▶ D03-4.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계획

- 유지보수 매뉴얼 보유
- 유지보수 인력 보유
- 유지보수 내역(소프트웨어, 통합관제 센터)
- 정기 유지보수 기간

▶ D03-5.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홍보 방안

- 해당 지자체 시장 규모 파악
-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 범위 및 예상 광고 고객 업종 리스트
- 해당 지자체 광고비 지출 예상 전통시장 리스트
- 광고 홍보 방안 및 기대 효과 제시

▶ D03-6. 사업성

- 예상 투자비용(산출 내역서 기준)
- 운영에 따른 예상 소요 비용
- 예상 투자 회수 기간
- 월 예상 광고비 추정 및 광고주 구성 비율

AD-D. 사업자 선정

▶ D03-7. 기대효과

- 법적 정의에 따른 전자계시대 효과 제시
- 도시 공공디자인으로서 기대 효과
- 스마트 시티에서의 전자계시대 역할 및 효과

▶ D03-8. 민원 해소 방안

- C03-2 참조

C03-2. 민원제기

- 운영 중 예상 민원

| 민원 종류 | 정의 |
|-------|--------------------------------|
| 운영 중 | 빛공해, 부적절 광고 노출, 전자계시대 주변 환경 미화 |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일반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D03-9. 기업 평가

- 기업 신용도 평가
-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

[참고 자료]

* 별첨 19: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AD-D. 사업자 선정

D04

광고 위탁 용역 (AD) – 사업자 선정(D) | 낙찰

종합평가점수를 충족한 업체들 중에서 협상적격자 선정

▶ D04-1. 업체 평가 방법

- 업체 선정 평가 방법 제시

[참고자료]

* 별첨 19: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 5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AD-F. 운영

F01광고 위탁 용역(AD) – 운영(F) | **보험증권**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 ▶ **F01-1. 운영 관련 보험 가입**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대인 1억 이상/대물 2억 이상 가입)

<참고 사항–용어>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명기된 지역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F02광고 위탁 용역(AD) – 운영(F) | **광고 운영**

광고 운영 상황 보고 및 현황 검토 공유 요청

- ▶ **F02-1. 광고 운영 계획 및 결산** • 연 2회 광고 운영 계획안 및 결과보고
• 지자체 내 주요 광고주 분석

AD-F. 운영

F03

광고 위탁 용역(AD) – 운영(F) | **효과 분석**

지역 광고 현황 및 현황 분석 공유 보고서 요청

▶ F03-1. 광고주 통계

- 광고주 통계 자료 제공(업종)
- 재계약 건수/신규 계약
- 분기별 광고 수주 추세 비교

F04

광고 위탁 용역(AD) – 운영(F) | **결산**

반기별 전자계시대 결산 보고 요청

▶ F04-1. 반기 결산

- 전자계시대별 결산 보고

AD-G. 유지 보수

G01

광고 위탁 용역 (AD) – 유지보수(G) | **민원**

반기마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보고 요청

▶ G01-1. 민원 처리

- 민원 건수내용 처리 결과보고서
- 반기1회 제출

G02

광고 위탁 용역 (AD) – 유지보수(G) | **고장신고**

반기 기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 처리 보고서 작성 요청

▶ G02-1. 고장 처리 프로세스

- 고장접수 및 해결프로세스
- 사안별 고장 처리 기간 설정 및 결과보고

AD-G. 유지 보수

G03

광고 위탁 용역 (AD) – 유지보수(G) | 재난재해

재난 재해 발생 시, 프로세스에 긴급 콘텐츠 송출 요청

▶ G03-1. 콘텐츠 운영

- 긴급 재난 재해 및 공지 사항 송출 프로세스 체계
- 긴급 콘텐츠 템플릿 구성

Ⅱ.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절차 가이드라인

4. 철거 공사

DM (Demolition)



H. 철거

DM-H. 철거

H01 철거계획

H01-1

철거기준

- LED 디스플레이 내구 연한 만료
- 부품 수급이 불가능하여 기능 구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
- 기타 신 기술적용에 따른 업그레이드 발생

H02 법제도검토

H02-1

협업부서 협의 및 관련법 검토

- | | |
|----------------|---|
| • 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 | |
| 협의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검토 및 도로 굴착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 도로 교통법 검토 및 관할 경찰서 협의 • 전기 정보통신 공사 추가 여부 |
| • 검토 및 확인 | |
| 검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장소 지적도 및 설계도서 • 전자계시대 시스템 구조도 전자계시대 핵심 설계 도면 • 현장 지적도 및 공사 계획 및 설치 도면 • (필요시)구조 계산 및 설계도서 |

H03 입찰

H03-1

입찰내용

- | | |
|-------------------|---|
| • 기준 입찰 안내문 및 시방서 | |
| 위치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 공업지역 •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철도역 · 지하철역 · 공항 · 항만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시 ·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 설치 장소 선정 기준 |
| 설치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장소 지적도 및 설계도서 • 전자계시대 시스템 구조도 • 전자계시대 핵심 설계 도면 • 현장 지적도 및 공사 계획 및 설치 도면 • (필요시)구조 계산 및 설계도서 |

DM-H. 철거

H04 업체선정

H04-1

자격요건

-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 중소 기업소상공인 증명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

H05 철거

H05-1

철거수행완료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 업체 계약 및 철거 시행
- 준공 도서 및 서류 제출
- 완료 보고서 제출

4. 철거 공사

● 프로세스 핵심 코드

DM-H. 철거

| | | |
|-----|--------|-----|
| H01 | 철거계획 | 224 |
| H02 | 법 제도검토 | 225 |
| H03 | 입찰 | 226 |
| H04 | 업체선정 | 227 |
| H05 | 철거 | 231 |

DM-H. 철거

H01

철거 공사(DM) – 철거(H) | 철거 계획

철거 기준에 부합한 경우, 전자계시대 철거 계획 수립

▶ H01-1. 철거 기준

- LED디스플레이 내구 연한 만료
- 부품 수급이 불가능하여 기능·구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
- 기타 신 기술적용에 따른 업그레이드 발생

가) 사업 개요

전자계시대가 내구연한 및 성능 한계로 더 이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거 결정

나) 자격 요건

전기, 정보통신 기기, 구조물 철거 공사, 도로 포장 등등의 공사 범위에 따라 관련 자격 소지자 참여

| 분류 | 관련 법 제도 | 자격 요건 |
|-------|---------------------|------------------------|
| 철거 | 건설업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0012) |
| | 전기공사업법 | - 전기공사업 (003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 (0036) |
| 기업 자격 | 판로지원법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제 20조) |



[전광판 철거 사례]

< 참고 사항 >

- 관련 전문가(인, 안전점검)를 자문 및 용역 결과 근거로 하는 것을 권장
- 신 기술적용에 따른 업그레이드인 경우 기술적용 목적과 용도 제시
- 내구 연한이 7년 미만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거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
 - *특별한 사유 : 자연재해, 사고, 파손 등으로 인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DM-H. 철거

H02**철거 공사(DM) – 철거(H) | 법 제도 검토**

전자게시대 철거와 관련된 설치 시 검토했던 제반 사항 검토

▶ H02-1. 협업 부서 협의 및 관련 법 검토

- BTO-C의 C03-2 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
- BTO-E의 E01-1 검토 및 확인

- BTO-C의 C03-2 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



- BTO-E의 E01-1 검토 및 확인

**전자게시대 기기
및 설치**

- 설치 장소 지적도 및 설계도서
- 전자게시대 시스템 구조도 (네트워크, 기기간 연계, 콘텐츠 흐름)
- 전자게시대 핵심 설계 도면
- 현장 지적도 및 공사 계획 및 설치 도면
- (필요시) 구조 계산 및 설계도서

DM-H. 철거

H03

철거 공사(DM) – 철거(H) | 입찰

철거 공사를 위한 입찰 수행 검토

▶ H03-1. 입찰 내용

- 기준 입찰 안내문 및 시방서

[지방계약법]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2.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 나.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제9조(계약의 방법)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12.24>

- 총액입찰, 지역제한
- **BTO-D, 의 BTO-E의 E01-1** 기준 입찰 안내문 및 시방서 작성

위치 확인

- 상업지역, 공업지역
- 관광지 · 관광단지 · 관광특구
- 철도역 · 지하철역 · 공항 · 항만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시 ·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 설치 장소 선정 기준

전자계시대 기기 및 설치 현황 파악

- 설치 장소 지적도 및 설계도서
- 전자계시대 시스템 구조도
(네트워크, 기기간 연계, 콘텐츠 흐름)
- 전자계시대 함체 설계 도면
- 현장 지적도 및 공사 계획 및 설치 도면
- (필요시)구조 계산 및 설계도서

DM-H. 철거

H04

철거 공사(DM) – 철거(H) | 업체 선정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

▶ H04-1. 자격 요건

-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①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②
- 중소 기업·소상공인 증명 ③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④
-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 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二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DM-H. 철거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H04-1. 자격 요건

-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1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2
- 중소기업·소상공인 증명 3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4
-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 5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

3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 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0.10.20.>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DM-H. 철거

-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 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설 2018.12.24.>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DM-H. 철거

▶ H04-1. 자격 요건

-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①
- 해당 지자체 소재 등록법인 ②
- 중소기업·소상공인증명 ③
-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한 자 ④
-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 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

④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3.3.23., 2013.12.30., 2021.4.20>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9.1.>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 자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DM-H. 철거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려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 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달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 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H05

철거 공사(DM) – 철거(H) | 철거

철거 완료 후 철거 관련 서류 제출

▶ H05-1. 철거 수행 완료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 업체 계약 및 철거 시행
- 준공 도서 및 서류 제출
- 완료 보고서 제출

[참고자료]

* 별첨 13 :준공관련 서류 및 도서 리스트

III. 국내외 주요 참고 사례

1. 지도 기반 전자게시대 현황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사례
3. 해외 공공디자인 적용 DOOH 사례

III. 국내외 주요 참고 사례

1. 지도 기반 전자게시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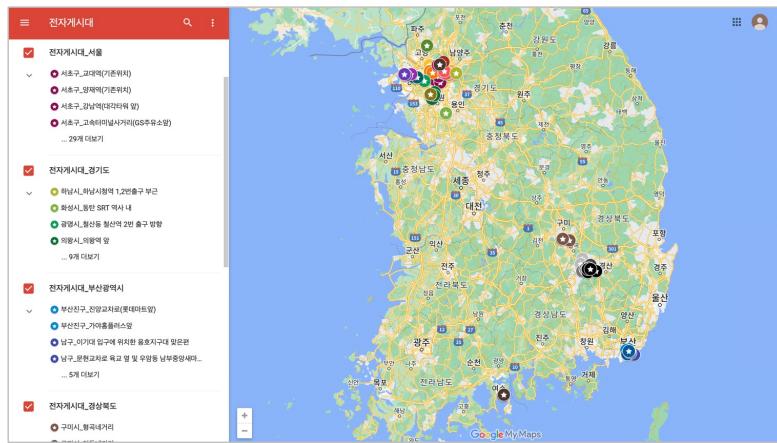
Ⅲ 국내외 주요 참고 사례

1. 지도 기반 전자계시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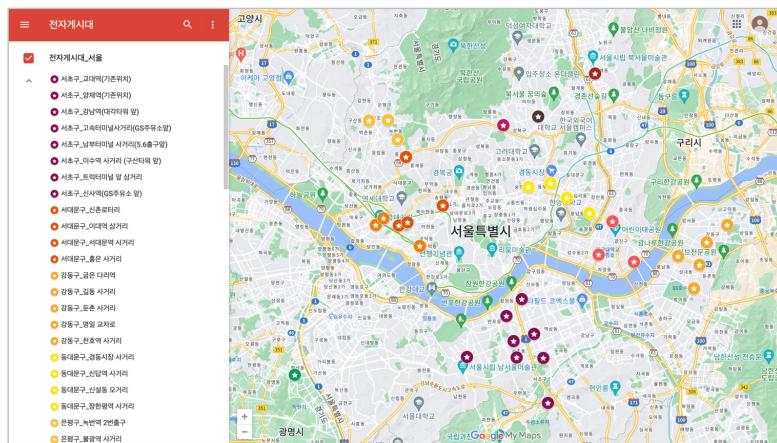
● 전자계시대 지도 URL

<https://url.kr/v17x9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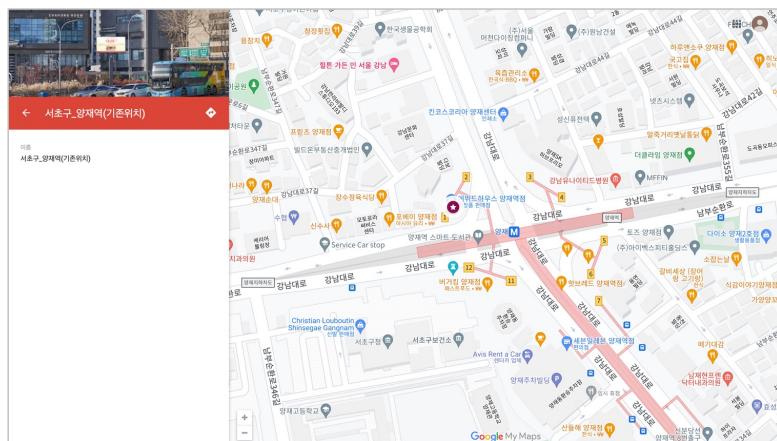
● 전국 현황



● 시도 현황



● 설치 장소



III. 국내외 주요 참고 사례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 (BTO)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 본 정보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담당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 | | | | | | | | | | | | | | | | | | |
|-------------|---|--|----|---------|-------|---|-------|---|---|--------|---|---|--------|---|---|--------|---|---|---------|---|
| 설치예정 | 2019.01 | | | | | | | | | | | | | | | | |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구좌수 광고단가(1구좌당) | 25구좌 (상업80%, 공공20%) 560,000원 (500,000원 + 부가세50,000원 + 수수료10,000원) | | | | | | | | | | | | | | | | | | |
| | 광고운영시간 공익광고비율 | 06:00 ~ 24:00 (1일 18시간) 상업광고80% -20구좌 (1일14시간24분) 공익광고20% -5구좌 (1일3시간) | | | | | | | | | | | | | | | | | | |
| 기타참고사항 | | 규격4600 x 2600, 표출시간15초(1구좌기준) (월기준 시스템 장비 점검으로 1~2일 일시정지될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운영사 | 버스티브이 | | | | | | | | | | | | | | | | | | | |
| 설치위치 |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설치 장소</th> <th>설치 대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굽은다리역</td> <td>1</td> </tr> <tr> <td>2</td> <td>길동 사거리</td> <td>1</td> </tr> <tr> <td>3</td> <td>둔촌 사거리</td> <td>1</td> </tr> <tr> <td>4</td> <td>명일 교차로</td> <td>1</td> </tr> <tr> <td>5</td> <td>천호역 사거리</td> <td>1</td> </tr> </tbody> </table> |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1 | 굽은다리역 | 1 | 2 | 길동 사거리 | 1 | 3 | 둔촌 사거리 | 1 | 4 | 명일 교차로 | 1 | 5 | 천호역 사거리 | 1 |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 | | | | | | | | | | | | | | |
| 1 | 굽은다리역 | 1 | | | | | | | | | | | | | | | | | | |
| 2 | 길동 사거리 | 1 | | | | | | | | | | | | | | | | | | |
| 3 | 둔촌 사거리 | 1 | | | | | | | | | | | | | | | | | | |
| 4 | 명일 교차로 | 1 | | | | | | | | | | | | | | | | | | |
| 5 | 천호역 사거리 | 1 | | | | | | | | | | | | | | | | | | |
| 설치사진 | | | | | | | | | | | | | | | | | | | | |
| ①굽은다리역 | | ②길동 사거리 | | ③둔촌 사거리 | | | | | | | | | | | | | | | | |
| ④명일 교차로 | | ⑤천호역 사거리 | | | | | | | | | | | | | | | | |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홍보담당관 뉴미디어 팀 | | | | | | | | | | | | | |
|--------|---|---|----|-------|-------|---|-------------------|---|---|-------------|---|---|------------------|---|
| 설치예정 | 2011.10 | | | | | | | | | | |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구좌수 광고단가(1구좌당) | <p>LED전자게시대 1기당 20구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요금은 10일 1구좌(표출 위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상업광고: 125,000원 - 단기공익광고: 55,000원 * 장기요금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간으로 신청 가능 (제시일은 매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상업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월: 560,000원 / 3개월: 1,660,000원 / 6개월: 3,310,000원 / 12개월: 6,610,000원 - 장기공익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월: 165,000원 / 3개월: 495,000원 / 6개월: 990,000원 / 12개월: 1,980,000원 | | | | | | | | | | | | |
| 광고계약기간 | 단기 (1일~10일, 11일~20일, 21일~31일) 장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간) | | | | | | | | | | | | | |
| 광고운영시간 | 1회주기(330초) 중 15초 이내(1일 약 196회 표출) | | | | | | | | | | | | | |
| 공익광고비율 | 상업광고 80% - 20구좌 (1일 14시간 24분) 공익광고 20% - 5구좌 (1일 3시간) | | | | | | | | | | | | | |
| 기타참고사항 | 규격 6200 x 1640, 표출시간 15초(1구좌 기준) (월기준 시스템 장비 점검으로 1~2일 일시 정지될 수 있음) | | | | | | | | | | | | | |
| 운영사 | 한성디자인 기획 | | | | | | | | | | | | | |
| 설치위치 |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설치 장소</th> <th>설치 대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건대역 사거리 (롯데백화점 앞)</td> <td>1</td> </tr> <tr> <td>2</td> <td>강변역 1번 출구 앞</td> <td>1</td> </tr> <tr> <td>3</td> <td>군자역 3번 출구 신한은행 앞</td> <td>1</td> </tr> </tbody> </table> |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1 | 건대역 사거리 (롯데백화점 앞) | 1 | 2 | 강변역 1번 출구 앞 | 1 | 3 | 군자역 3번 출구 신한은행 앞 | 1 |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 | | | | | | | | |
| 1 | 건대역 사거리 (롯데백화점 앞) | 1 | | | | | | | | | | | | |
| 2 | 강변역 1번 출구 앞 | 1 | | | | | | | | | | | | |
| 3 | 군자역 3번 출구 신한은행 앞 | 1 | | | | | | | | | | | | |
| 설치사진 |    | | | | | | | | | | | |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전자게시대 위탁 관리) | | | | | | | | | | | | | | | | |
|--------|--|---|----|-------|-------|---|----------|---|---|---------|---|---|---------|---|---|----------|---|
| 설치예정 | 2018.04 | | | | | | | | | | | | | |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구좌수 | LED전자게시대 1기당 20구좌 | | | | | | | | | | | | | | | |
| | 광고운영시간 | 06:00 ~ 24:00 (1일 18시간) | | | | | | | | | | | | | | | |
| | 기타참고사항 | 규격 6144 x 1344 (6.3m x 1.5m), 표출시간 15초(1구좌 기준) (월기준 시스템 장비 점검으로 1~2일 일시정지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운영사 | 버스티브이 | | | | | | | | | | | | | | | | |
| 설치위치 |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설치 장소</th> <th>설치 대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경동시장 사거리</td> <td>1</td> </tr> <tr> <td>2</td> <td>신답역 사거리</td> <td>1</td> </tr> <tr> <td>3</td> <td>신설동 오거리</td> <td>1</td> </tr> <tr> <td>4</td> <td>장한평역 사거리</td> <td>1</td> </tr> </tbody> </table> |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1 | 경동시장 사거리 | 1 | 2 | 신답역 사거리 | 1 | 3 | 신설동 오거리 | 1 | 4 | 장한평역 사거리 | 1 |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 | | | | | | | | | | | |
| 1 | 경동시장 사거리 | 1 | | | | | | | | | | | | | | | |
| 2 | 신답역 사거리 | 1 | | | | | | | | | | | | | | | |
| 3 | 신설동 오거리 | 1 | | | | | | | | | | | | | | | |
| 4 | 장한평역 사거리 | 1 | | | | | | | | | | | | | | | |

설치사진

① 경동시장 사거리



② 신답역 사거리



③ 신설동 오거리



④ 장한평역 사거리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 | | |
|-------------|---------------------|--|-------|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광고물팀 | | |
| 설치예정 | 2021.11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구좌수 광고단가(1구좌당) | LED전자게시대1기당20구좌 560,000원 (500,000원 + 부가세50,000원 + 수수료10000원) | |
| | 광고운영시간 | 06:00 ~ 24:00 (1일 18시간), 1구좌(1회) 스텔컷이미지(정지화면15초씩표출) | |
| | 공익광고비율 | 상업광고80% -20구좌 (1일14시간24분) 공익광고20% -5구좌 (1일3시간) | |
| | 기타참고사항 | 규격4600 x 2600 광고게시는접수순번에따라정하지며 광고게시7일전까지이메일또는문자전송으로통보 | |
| 운영사 | (주)탭애드 | | |
| 설치위치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1 | 홍대입구역 사거리 (동교동 160-15) | 1 |
| | 2 | 동교동 삼거리 (동교동 191-2) | 1 |
| | 3 | 공덕 오거리 (공덕동 237-9) | 1 |
| 설치사진 | | | |
| ① 녹번역 2번출구 | | ② 불광역 사거리 | |
| ③ 구산역 사거리 | |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 | | |
|-------------|--|--|-------|
| 담당부서 |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광고물관리팀 | | |
| 설치예정 | 2019.10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구좌수 광고단가(1구좌당) | LED전자게시대1기당20구좌 560,000원 (500,000원 + 부가세50,000원 + 수수료10,000원) | |
| | 광고운영시간 공익광고비율 | 06:00 ~ 24:00 (1일 18시간) 상업광고80% -20구좌 (1일14시간24분) 공익광고20% -5구좌 (1일3시간) | |
| 기타참고사항 | | 규격4600 x 2600, 표출시간(1구좌기준)15초 (월기준시스템장비점검으로1~2일 일시정지될수 있음) | |
| 운영사 | 버스티브이 | | |
| 설치위치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1 | 신촌로터리 | 1 |
| | 2 | 이대역 삼거리 | 1 |
| | 3 | 서대문역 사거리 | 1 |
| | 4 | 홍은사거리 | 1 |
| 설치사진 | | | |
| ① 신촌로터리 |  | | |
| ② 이대역 삼거리 |  | | |
| ③ 서대문역 사거리 |  | | |
| ④ 홍은사거리 |  |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 | | |
|---|---|--|------|
| 담당부서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 | |
| 설치예정 | 2018.08 ~ 2018.09 중(예정) (○시설물 설치 및 기부채납)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구좌수 광고단가(1구좌당) | 25구좌(상업80%, 공공20%) 560,000원 (500,000원 + 부기세50,000원 + 수수료10,000원) | |
| | 광고운영시간 | 06:00 ~ 24:00 | |
| | 공익광고비율 | 1회9초이상 표출(서초구 광고는 무료) | |
| | 기타참고사항 | 1구좌(1회) 스틸컷 이미지(정지화면) 15초씩 표출 | |
| 운영사 | (주)인풍 | | |
| 설치위치 | No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 | 1 | 교대역(기존위치) | 1 |
| | 2 | 양재역(기존위치) | 1 |
| | 3 | 강남역(대각타워앞) | 1 |
| | 4 | 고속터미널사거리(GS주유소앞) | 1 |
| | 5 | 남부터미널사거리(5,6출구앞) | 1 |
| | 6 | 이수역사거리(구산타워앞) | 1 |
| | 7 | 트럭터미널앞삼거리 | 1 |
| | 8 | 신사역(GS주유소앞) | 1 |
| 설치사진 | | | |
| ① 교대역(기존 위치) | ② 양재역(기존 위치) | ③ 강남역 대각타워 앞 | |
|  |  |  | |
| ④ 고속터미널사거리 | ⑤ 이수역 사거리 | ⑥ 트럭터미널앞삼거리 | |
|  |  |  | |
| ⑧ 신사역 (GS주유소 앞) | | | |
|  | |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서울특별시 - 성북구

| | | |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단가(1구좌당) | 상업광고(일반) 10일 50,000원/1개월 160,000원 상업광고(전통시장) 10일 17,000원/1개월 50,000원 | |
| 광고계약기간 광고운영시간 | | 단기(10일) 또는 장기(1개월) 중 선택 10:00 ~ 16:00 1광고당 1회(10초/1일 총 90회(900초) 송출 | |
| 운영사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 | |
| 설치위치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1 | 정릉시장 공영주차장 앞 (정릉동405-5) | 1 |

설치사진

① 정릉시장 공영주차장 앞(정릉동405-5)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서울특별시 - 은평구

| | | | | | |
|------------------|---|--|---|-----------|--|
|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 | | |
| 설치예정 | 2020.12 | |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구좌수 광고단가(1구좌당) | LED전자게시대1기당20구좌 556,000원 (500,000원 + 부가세50,000원 + 수수료6000원) | | | |
| 광고운영시간 공익광고비율 | | 06:00 ~ 24:00 (1일 18시간) 상업광고80% -20구좌 (1일14시간24분) 공익광고20% -5구좌 (1일3시간) | | | |
| 기타참고사항 | | 규격4600 x 2600, 표출시간(1구좌기준)15초 (월기준 시스템장비 점검으로 1~2일 일시정지될수 있음) | | | |
| 운영사 | 버스티브이 | | | | |
| 설치위치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 | 1 | 녹번역 2번출구 | 1 | | |
| | 2 | 불광역 사거리 | 1 | | |
| | 3 | 구산역 사거리 | 1 | | |
| 설치사진 | | | | | |
| ① 녹번역 2번출구 |  | ② 불광역 사거리 |  | ③ 구산역 사거리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인천광역시 - 서구

| | | | |
|-------------|---|---|-------|
| 담당부서 |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구좌수 광고단가(1구좌당) | LED전자게시대1기당20구좌 562,000원 (500,000원 + 부가세50,000원 + 수수료12,000원) | |
| 광고운영시간 | 매일오전6시부터밤12시까지 | | |
| 공익광고비율 | 상업광고80% 공익광고20% | | |
| 기타참고사항 | 1기당25개광고가20초이내정지화면으로송출 규격4600 x 2600, 표출시간15초(1구좌기준), (월기준시스템 장비 점검으로1~2일 일시정지될수있음) | | |
| 운영사 | 버스티브이 | | |
| 설치위치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1 | 가정역 사거리 | 1 |
| | 2 | 홈플러스 청라점 | 1 |
| 설치사진 | | | |
| ① 가정역 사거리 |  | | |
| ② 홈플러스 청라점 |  |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경기도 – 의왕시

| | | | |
|---------------|---|--|------|
| 담당부서 | 의왕시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 | |
| 설치예정 | 2018.02 ~ 2018.03 중(예정)(○시설물 설치 및 기부채납)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운영시간 공익광고비율 | 06:00~24:00 공익광고비율 -1회 9초 이상 표출 공익표출비율 20% (공익광고 수수료 무료) | |
| 설치위치 | No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 | 1 | 의왕역 앞(예정) | 1 |
| | 2 |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 앞(예정) | 1 |
| | 3 | 오전동 사거리(예정) | 1 |
| 시스템사양 | 사양 | 내역 | |
| | 표시면적 | 최대 12m ² (약 6m(가로)×2m(세로)) ※ 가로·세로의 규격은 최대 12m ² 범위 내에서 수정 가능 | |
| | 해상도 | 50,000pixels 이상, Full color 등 표출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경상북도 – 구미시

| | | | |
|--------|-----------------------------------|---|-------|
| 담당부서 | 구미시청 도시재생과 | | |
| 설치예정 | 2021.09 ~ 10 (예정) (시설물 설치 및 기부채납)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운영시간 | 매일 06:00 ~ 24:00 | |
| | 공익광고비율 | 1회 9초 이상 표출 상업광고 70%, 공익광고 30% | |
| | 기타참고사항 | (구미시청 광고는 무료) 송출방식은 9초 이상의 정지화면으로 송출되며 2021.10.05 ~ 2021.10.31까지는 시범운영기간으로 전국체전과 시정정책 홍보 등 공익광고 100%으로 활용하는 효과 | |
| 설치위치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1 | 형곡네거리 | 1 |
| | 2 | 인동네거리 | 1 |
| | 3 | 터미널 네거리 | 1 |

설치사진

① 형곡네거리



② 인동네거리



③ 터미널네거리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경상북도 – 경산시

| |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단가 | 387,200원(1개소기준) 광고료 340,000원+부가세 34,000원+시청허가비 13,200원 |
| 광고운영시간 | | 매일 06:00 ~ 24:00 |
| 기타참고사항 | | 크기 512*224cm, 픽셀 1024*448, 송출방식 MP4 |
| 광고표출시간 | | 12초/일 250회 이상 송출(25구좌기준) |

| 설치위치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 1 | 임당역 | 1 |
| | 2 | 중산지구 | 1 |

설치사진

① 임당역



② 중산지구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전라남도 – 여수시

| 담당부서 | 여수시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 | | | | | | | | | | |
|--|---|---|----|-------|-------|---|--------------|---|---|-----------------|---|
| 설치예정 | 2020.10. ~ 12. (시설물 설치 및 기부채납) - 임시운영: 2021. 6. 1. ~ - 정상운영: 임시운영 종료 후부터 5년간 정상운영 | | | | | | | |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 단가(1구좌당) | 10일당 1단은 8만 원 2단은 11만 3000 원에 이용 | | | | | | | | | |
| | 광고 운영 시간 | 06:00~24:00(18시간) | | | | | | | | | |
| | 공익 광고비율 | 9초~15초 이내 표출 상업광고 70%, 공익광고 30% | | | | | | | | | |
| | 기타참고사항 | 15초 이내로 1일(06:00~24:00) 144회 이상 표출 광고 내용 표시 면적: 4.8m×2.4m 내외(최대 12m ² 이내) | | | | | | | | | |
| 운영사 | 비엠티 | | | | | | | | | | |
| 설치위치 |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설치 장소</th> <th>설치 대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여서동 도시관리공단 앞</td> <td>1</td> </tr> <tr> <td>2</td> <td>오림동 여수종합버스터미널 앞</td> <td>1</td> </tr> </tbody> </table> |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1 | 여서동 도시관리공단 앞 | 1 | 2 | 오림동 여수종합버스터미널 앞 | 1 |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 | | | | | |
| 1 | 여서동 도시관리공단 앞 | 1 | | | | | | | | | |
| 2 | 오림동 여수종합버스터미널 앞 | 1 | | | | | | | | | |
| 설치사진 | | | | | | | | | | | |
| ① 여서동 도시관리공단 앞  ② 오림동 여수종합버스터미널 앞  | | | | | | | | | |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대구광역시 - 남구

| | | | |
|-------------|--|--|-------|
| 담당부서 | 남구청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단가(1구좌당) | 343,200원(1개소기준) (광고료 300,000원 + 부가세 30,000원 + 구청허가비 13,200원) | |
| | 광고운영시간 | 06:00 ~ 24:00 | |
| | 공익광고비율 | 공익광고 30% / 상업광고 70% | |
| | 기타참고사항 | 접수마감: 광고제시일 7일전 광고료 입금: 광고제시일 3일전 입금 | |
| 운영사 | 에이테크 | 12초/일 250회 이상 송출(25구좌기준) 크기: 512*224cm 픽셀: 1024*448 송출방식: MP4 | |
| 설치위치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1 | 앞산 네거리 (가로 5m, 세로 2m 크기의 LED 방식 전자게시대를 설치해 시범운영) | 1 |
| | 2 | 성당 네거리 (가로 5m, 세로 2m 크기의 LED 방식 전자게시대를 설치해 시범운영) | 1 |
| | 3 | 명덕 네거리 | 1 |
| | 4 | 고속터미널사거리 (GS주유소 앞) | 1 |
| 설치사진 | | | |
| ① 앞산네거리 |  | | |
| ② 성당네거리 |  | | |
| ③ 명덕네거리 |  | | |
| ④ 남구청 네거리 |  |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대구광역시 – 달서구

| 담당부서 | 북구청 도시행정과 | |
|-------------|----------------------------------|---|
| 설치예정 | 2021.10 ~ 11 (예정)(시설물 설치 및 기부채납)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단가 | 363,000원(기준) (광고료 300,000원 + 부가세 30,000원 + 구청허가비 33,000원) |
| | 광고운영시간 | 06:00 ~ 24:00 (1일 18시간) 10초 1일 200회 이상 (1일 2,000초 이상) 1구좌 송출시 4~5분내 1회 송출 |
| | 기타참고사항 | 크기 600*200cm, 픽셀 1152*384, 송출방식(MP4) |
| 설치위치 | | |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1 | 유천교네거리 | 1 |
| 2 | 호림네거리 | 1 |
| 3 | 월성네거리 | 1 |

설치사진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대구광역시 - 동구

| | | | |
|--------|------------|--|-------|
| 담당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과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단가(1구좌당) | 343,200원(1개소 기준) (광고료 300,000원 + 부가세 30,000원 + 구청허가비 13,200원) | |
| | 광고운영시간 | 06:00 ~ 24:00 | |
| | 광고표출시간 | 12초/일 250회 이상 송출 25구좌기준 | |
| | 게시기간/이용료 | 15일 간 16만 5천원(접수수수료 6천원 별도) | |
| | 규격 | 크기: 448*256cm / 512*224cm 픽셀: 840*480 / 1024*448 송출방식: MP4 | |
| 운영사 | (주)글로벌에스피 | | |
| 설치위치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1 | 동대구역 네거리 | 1 |
| | 2 | 파티마 네거리 | 1 |
| | 3 | MBC 네거리 | 1 |
| | 4 | 효목 네거리 | 1 |
| | 5 | 입석 네거리 | 1 |

설치사진

① 동대구역네거리



② 파티마네거리



③ MBC 네거리



④ 효목네거리



⑤ 입석네거리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대구광역시 - 북구

| | | | |
|---------------|--|---|-------|
| 담당부서 | 북구청 도시행정과 | | |
| 설치예정 | 2021. 10 ~ 11 (예정)(시설물 설치 및 기부채납)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운영시간 06:00 ~ 24:00 공익광고비율 1회 12초 이상 표출 상업광고 80%, 공익광고 20% (북구청 광고는 무료) | | |
| 설치위치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1 | 의왕역 앞 (예정) | 1 |
| | 2 |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 앞 (예정) | 1 |
| | 3 | 오전동 사거리 (예정) | 1 |
| | 4 | 매천로 (매천시장 인근 교통섬) | 1 |
| 시스템사양 | 사양 | 내역 | |
| | 표시면적 | 최대 12m ² (가로, 세로 크기 제한 없음) ※ 지주높이는 교통신호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 |
| | 해상도 | 50,000pixels 이상, Full color 등 표출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단가(1구좌당) | 349,800원(1개소기준) (광고료 300,000원 + 부가세 30,000원 + 구청허가비 19,800원) |
| 광고운영시간 | | 06:00 ~ 24:00 |
| 광고표출시간 | | 10초 1일 200회 이상 (1일 2,000초 이상) |
| 규격 | | 1구좌 송출 시 4~5분 내 1회 송출 크기: 600*200cm 픽셀: 1152*384 송출방식: MP4 |

| | |
|------------|---------------|
| 운영사 | 국제종합광고 |
|------------|---------------|

| 설치위치 |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1 | 대구 MBC 네거리 | 1 | | 1 |
| 2 | 들안길 삼거리 (중동네거리로 옮겨 가동) | 1 | | 1 |
| 3 | 수성 네거리 | 1 | | 1 |
| 4 | 신매 네거리 | 1 | | 1 |
| 5 | 만촌 네거리 | 1 | | 1 |

설치사진

① 대구MBC 네거리



② 들안길 삼거리



③ 수성 네거리



④ 신매네거리



⑤ 만촌네거리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부산광역시 – 동구

| |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운영시간 | 06시~25시/1구좌당15초표출 |
| 공익광고비율 | | 상업광고35%(7구좌),공익광고30%(6구좌) |
| 기타참고사항 | | 운영상황에따라 접수미감, 결과통보, 입금기간, 광고게시승인기간 변경될 수 있음 |

| 설치위치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 1 | 범일동 교차로 KYMCO 부산대리점 앞 | 1 |
| | 2 | 부산역 안내데스크 옆 (양면) | 1 |
| | 3 | 자성대 교차로 부산 불교 전시관 앞 (양면) | 1 |
| | 4 | 범곡 교차로 교통센터 뒤 | 1 |

설치사진

① 범일동 교차로 KYMCO부산대리점 앞



② 부산역 안내데스크 옆 (양면)



③ 자성대 교차로 부산불교전시관 앞(양면)



④ 범곡 교차로 교통센터 뒤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 | | | |
|--------|------------------------------------|--|-------|
| 담당부서 | 부산진구청 도시정비과 | | |
| 설치예정 | 2020.01 ~ 03 (예정) (○시설물 설치 및 기부채납) | | |
| 운영참고사항 | 광고구좌수 광고단가(1구좌당) | 27구좌/일(상업광고20구좌/공익광고7구좌) 단기상업광고127,600원단기공익광고66,000원 (단기요금은10일1구좌기준) 장기상업광고459,800원장기공익광고264,000원 | |
| | 광고운영시간 공익광고비율 | 1일18시간:AM 6시~PM 12시 상업광고75%, 공익광고25% (부산진구청 광고는 무료, 기타공공기관50% 감면) | |
| | 기타참고사항 | 광고규격1380 x 780 pixels size 1구좌(1호) 스크린 이미지 정지화면 15초씩(15초/약160회 표출) | |
| 운영사 | ISM 스마트트미디어 | | |
| 설치위치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1 | 진양교차로 (롯데마트 앞) | 1 |
| | 2 | 가야홈플러스 앞 | 1 |
| | 3 | 사업자 선정 후 장소 협의 결정 | 1 |

설치사진

① 진양교차로 (롯데마트 앞)



② 가야홈플러스 앞



물품 구매 사업 (PD)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 본 정보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 | |
|-------|---------------|---|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구로구재무과 | |
| 설치예정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
| 낙찰금액 | ₩58,512,466 | |
| 제조사 | (주)마트릭스미디어 | |
| 시스템사양 | 표출부 | 사양 |
| | | 표출부 SIZE (W) 6,720mm x (H) 480mm |
| | | 모듈 SIZE ■ 160mm * 160mm |
| | | 모듈 수량 (W)42 x (H)3= 126 MODULE |
| | | LAMP 구성 : DOT 구성 : Full Color |
| | | 구동방식 1/4구동, 방수구조 |
| | | 휘도 5,000cd/m ² 이상 |
| | 전원부 | 가시각도 ± 35 ° |
| | | 제어기 DISPLAY (CONTROLLER) 전광판 종합제어용 |
| | | 전원 공급기 SWITCHING MODE POWER SUPPLY (SMPS) |
| | 기타 | 전원 제어판 배전반, POWER REMOTE CONTROLLER |
| | | 잡자재 기타 LINE류 |
| 운영부 | OS 및 운영장비 | 시건장치 잠금장치 |
| | | 공조장치 전광판내부 냉각팬 및 환기설비 |
| | | 외함 및 설치 전광판 외곽케이스 및 설치공사 |
| | | SOFTWARE 및 리모콘 리모콘 운영 프로그램 : DATA 송수신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 : 표출 프로그램 |

2. 지자체 전자게시판 설치 사례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시스템사양 | 사양 | 내역 |
|--------------------------------|---------------|------------------------------------|
| | LED MODULE 형태 | (16×16PIXEL MATRIX) |
| | MODULE SIZE | 160 x 160mm |
| | PIXEL PITCH | 10 mm(종/횡) |
| | 구동방식 | 1/4 DUTY |
| 가시각도 | | 수평 : 70°(± 35°) 수직 : 40°(± 20°) |
| POWER DISSIPATION (20mA 기준) | MAX. | 4,200W |
| | AVG. | 2,100W |
| OPERATING TEMPERATURE | LED부 | -25°C ~ +85°C |
| | 제어부 | -25°C ~ +100°C |
| 용도 | | 문자 & GRAPHIC 표출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 | |
|-------------|--------------------|-------|
| 담당부서 | 작전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 |
| 설치예정 | 계약일로부터~60일 이내 | |
| 낙찰금액 | ₩66,242,000 | |
| 제조사 | 포스텍네트웍스주식회사 | |
| 설치위치 | | |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1 | 작전시장 주출입구 남문 | 1 |
| 2 | 작전시장 주출입구 서문 문주 하단 | 1 |

설치사진

①작전시장 주출입구 남문



②작전시장 주출입구 서문 문주 하단



| 시스템사양 | 사양 | 내역 |
|-------|--------------|---|
| | 전자게시대 내용적 범위 | 풀컬러 전광판 양면형, 32pixels 가로 10m * 높이 0.9m, 컨트롤박스 등 일체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경기도 – 가평군

| | | | |
|--------------------|--------------|---------------------------------|---|
| 담당부서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 |
| 설치예정 | 계약일로부터 90일 | | |
| 낙찰금액 | ₩163,000,000 | | |
| 제조사 | 주식회사 캠플싸인 | | |
| 설치위치 | 수요처 지정장소 | | |
| 시스템사양 | 사양 | 내역 | |
| Full Color LED 전광판 | 정보 표출부 | LED 모듈 | Full Color, 96 x 96mm (6mm pitch) 8단 X 50열 = 400EA(1식 단면 기준) |
| | | 총 소요량 | 400EA |
| | | 화면크기 | (H)4,800mm x (W)768mm (단면 기준) |
| | | 해상도 | 128 x 800 (102,400 픽셀) |
| 전광판 케이스 | 케이스 규격 | (H)6,350 x (W)968 x (D)250 (mm) | |
| | 설치방식 | 지주형 | |
| 운영 시스템 | 운영 컴퓨터 | Intel Core i3 본체(모니터 포함) | |
| | 제어 컴퓨터 | 산업용 제어 PC(팬리스)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경기도 – 세종시

| | | |
|-------|-----------------------|---|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총무과 | |
| 설치예정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
| 낙찰금액 | ₩79,331,479 | |
| 설치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지정위치(3곳) | |
| 시스템사양 | 사양 | 내역 |
| | | 표시면 철구조물 전체 크기 W5,900 x H900 x D200 mm |
| | R. G. B Matrix Module | 표시면 크기 (Screen Size) W 5,760 x H 800mm |
| | | 발광색상 (Emitted Color) Full-Color |
| | | LED Module 160mm Full-COLOR LED |
| | | 모듈수량 (Total Number of Module) W36 x H5 = 180 Modules |
| | | 해상도 (Spatial Resolution) W576 x H80 = 46,080 Pixels |
| | | 휘도 (Reference White Brightness) 6,000 nit(cd/m ²) |
| | | 가시각도 (Viewing Angle) Hor. 110°, Ver. 110° (허용오차 ±10°) |
| | 전기 용량 | 최대소비전력 (Module) 19W |
| | | 화소 간격 (Pixel Pitch) 10mm |
| | 전광판 표시부 | RGB LED 배열 / Pixel LED SMD TYPE |
| | | Pixel Matrix 구성 W16 x H16 Pixel Dot Matrix (=256 Pixels) |
| | | Module Size W160 x H160 mm |
| | | 수전 요구전력 3.42Kw |
| | | 평균 소비전력 2Kw |

2. 자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경기도 – 세종시

| 시스템시양 | 사양 | 내역 |
|-------|---------------------|---|
| 소프트웨어 | 제어용 PROGRAM PACKAGE | 운영 관리, 제어관리, 표시부 휘도, 전원 관리, 기타 등 |
| | 표출용 PROGRAM | 그래픽, TEXT편집 : 효과부여 및 FILE화, 저장/재생 기본공급용 SOFT WARE PACKAGE : O/S WINDOW , 자체 프로그램 |
| 운영 | CPU | intel i3 이상 (최신사항) |
| | DDR RAM | 4G |
| | HDD | 500GB, HDD |
| | MONITOR | 21" LED(운영 PC용) |
| | SOFTWARE | WINDOWS 7 |
| | 운영프로그램 | 전광판 운영용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경기도 – 시흥시

| 담당부서 | 경관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 | | | |
|--------------|-----------------|---|--|--|
| 낙찰금액 | ₩123,924,000 | | | |
| 제조사 | (사)장애인안권센터ICT사업 | | | |
| 설치위치 | | | | |
| No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 |
| 1 | 배곧제8공영주차장 | 1 | | |
| 2 | 배곧도서 | 1 | | |
| 시스템사양 | | | | |
| 사양 | | | | |
| 내역 | | | | |
| 표출부 | CASE SIZE | (H) 5,100 x (W) 1,550 x (D) 300 | | |
| | 모듈 PITCH | P 6.25mm | | |
| | DISPLAY SIZE | (H) 5,000 x (W) 1,500 | | |
| | 해상도 | 800 x 240 | | |
| | 밝기 | 5,500 NIT | | |
| | 가시각도 | 가로 160° / 세로 160° | | |
| | 사용시간 | 70,000 시간 이상 (50% 휴도 감소) | | |
| 컨트롤러 | LTE | LTE (Category 5) | | |
| | Wi-Fi | IEEE 802.11 a/b/g/n | | |
| | Ethernet (LAN) | Integrated IEEE 802.3 MAC and 10 BASE-T PHY | | |
| | Bluetooth | Class 2 BLE (Only use network configuration) | | |
| | USB | USB 2.0 32GB | | |
| 전원부 | 작동온도 | - 30° ~ 50° | | |
| | 작동습도 | 10% ~ 80% | | |
| | 소비전력 (Full MAX) | 7.2KW | | |
| 기타 | 운영프로그램 | 통합 운영 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 PC, 모바일 원격 제어) | | |
| | 공조장치 | 전광판 내부 냉각팬 및 확기설비 | | |
| | 방수방진 | IP65 |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경기도 – 하남시

| | | | |
|---------------------|----------------------|---|-------|
| 담당부서 | 하남시도시계획과 | | |
| 설치예정 | 2021.11.30 | | |
| 낙찰금액 | ₩145,585,000 | | |
| 제조사 | (주)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 | | |
| 설치위치 | No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 | 1 | 하남시청역 1,2번 출구 부근 | 1 |
| 시스템사양 | 사양 | 내역 | |
| Full – COLOR 표출부 | 전체 SIZE | (W) 4,608mm x (H) 2,496mm | |
| | MODULE 구성 | Full – Color ■ 192mm * 192mm Pitch 6mm, 312 Modules | |
| | 휘도 | 7,000 NIT이상 | |
| | 색상 | Full – COLOR | |
| | 사용 모듈 | Full – COLOR 옥외용 □ 192mm x 192mm | |
| | 단면 해상도 | (W) 768 x (H) 416 = 319,488 pixels | |
| | 소자 수명 | 100,000 시간 이상 | |
| | 총 소비전력 | 최대 10KW | |
| | 평균 소비 전력 | 약 7KW | |
| 메인 컨트롤러 | 영상신호 분석 전원 제어 | | |
| 서브 컨트롤러 | 타이밍신호 분석/제어 RTD 제어 | | |
| 상태보드 | STATUS & POWER | | |
| 플레이백 컨트롤러 | Small Board Computer | | |
| 전원 공급 장치 | DC5V (LED / LOGIC 용) | | |
| 운영 프로그램 | 운영/감시제어/기타제어 | | |
| 함체 | - | | |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경상북도 – 예천군

담당부서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설치예정 계약후45일이내

낙찰금액 ₩188,000,000

제조사 주식회사 정우비앤에스

설치사진

①



시스템사양

| | 사양 | 내역 | |
|---------|--|-----------------------|------------|
| 운영장비부문 | 운영 PC | CPU | 인텔 Core i7 |
| | | Main Memory | 8GB DDR4 램 |
| | | HDD | 1TB HDD |
| | | Graphics | Nvidia |
| | | OS | Windows 10 |
| 제어부문 | 제어 PC | CPU | 인텔 Core i7 |
| | | Main Memory | 8GB DDR4 램 |
| | | HDD | 1TB HDD |
| | | Graphics | Nvidia |
| | | OS | Windows 10 |
| 메인 콘트롤러 | - 16BIT 색상 지원 (281조 컬러) - 화소 보정 기능 (모듈별, 블록별, 회면 단위별 휨도를 동일하게 맞춤) - 감마 보정 기능 (R,G,B 색상별 감마 조정 가능) - 입력:DVI - 주사율:1000Hz 이상 | | |
| | 서브 콘트롤러 | 16BIT 색상 지원 (281조 컬러) | |

2. 지자체 전자게시판 설치 사례

● 경상북도 – 예천군

| 시스템사양 | | 사양 | 내역 |
|--------|--------|-----------------------|--|
| 표시부 | 전광판부문 | 표출면 규격 | 7,680(W) X 1,600(H)mm 2면 |
| | | 함체 규격 | 7,786(W) X 1,706(H)mm |
| | | 모듈 규격 | 320(W) X 160(H)mm (32dot X 16dot) |
| | | 모듈 수량 | 24(W) X 10(H) = 240EA X 2면 = 480EA |
| | | 표출 색상 | R, G, B 각 65,000단계, 총 281조 컬러 |
| | | 픽셀 간격 | 10mm (종/횡) |
| | | 해상도 (PIXEL 수) | 768(W) X 160(H) Pixels X 2면 |
| | | 휘도 (화면 밝기) | 7,500nit(cd/m ²) |
| | | LED 램프 | 3 in 1 Full Color SMD LED (국산, 좌우 : 140도 / 상하 : 140도) |
| | | 화면 주사율 | 1000Hz 이상 |
| LED 모듈 | 전광판부문 | 표출 내용 | 도형 및 문자, 그래픽 화면, 동영상 표출 |
| | | 입력 전원 | 현장 상황에 따름 |
| | | Module 형태 | 32 x 16 Pixel Matrix |
| | | LED Type | 3 in 1 Full Color SMD |
| | | Size (W x H) | 320 x 160mm |
| | | Pixel Pitch | 10mm (종/횡) |
| | | Number of Pixel | 512 (32x16) |
| | | Drive Mode | ½ Duty Dynamic |
| | | Brightness | 7,500nit(cd/m ²) |
| | | Viewing Angle | Horizontal. 120°, Vertical. 120° 이상 |
| 전광판부문 | LED 모듈 | Power Consumption | MAX. 42W |
| | | | AVG. 25W |
| 전광판부문 | LED 모듈 | Operating Temperature | LED부 -20°C ~ +60°C 제어부 -20°C ~ +60°C |

기타

경기도
부산광역시

* 본 정보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경기도 – 안양시

설치사진

① 인덕원사거리



② 범계사거리



③ 안양역 건너편



④ 범계역 1번 출구 앞



● 경기도 – 이천시

설치사진

① 마장주유소



● 경기도 – 군포시

설치사진

① 산본역 3번 출구



② 산본 이마트 분수대



③ 한숲사거리



2. 지자체 전자게시대 설치 사례

● 부산광역시 – 남구

설치사진

- ① 이기대 입구에 위치한 용호지구대 맞은편 ② 문현교차로 육교 옆 및 우암동 남부중앙새마을금고 본점 맞은편



III. 국내외 주요 참고 사례

3. 해외 공공디자인 적용 DOOH 사례

3. 해외 공공디자인 적용 DOOH 적용 사례

● Malaysia



● London



● Dubai



3. 해외 공공디자인 적용 DOOH 적용 사례

● Los Angeles



● Paris



● 기타 참고 사항



3. 해외 공공디자인 적용 DOOH 적용 사례

● Sunset Boulevard (West Hollywood)

: 예술적 가치를 갖고 도시 랜드마크가 될 옥외광고 빌보드 경쟁 실시



Orange Barrel Media, Tom Wiscombe
Architects, MoCA



TAIT Tower



Outfront Media, Gensler, MAK



JCDecaux and Zaha Hadid Project Management Limited



최종선정 옥외광고: Orange Barrel Media, Tom Wiscombe Architects, MoCA

IV. 관련 주요 기업 목록

1. 옥외광고 관련 기업
2. IT 제조 기업
3. CMS 솔루션 기업
4. 콘텐츠 제작 기업

IV. 관련 주요 기업 목록

1. 옥외광고 관련 기업

*본 기업 정보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

IV. 관련 주요 기업 목록

1. 옥외광고 관련 기업

● 서울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주)기린미디어 | www.kirinmedia.modoo.at |
| 2 | 나스미디어 | www.nasmedia.co.kr |
| 3 | (주)넥스트미디어컴 | www.nextmediacomm.modoo.at |
| 4 | 동우비전 | www.dongwoovision.co.kr |
| 5 | 문화미디어랩 | www.mrep.co.kr |
| 6 | 버스티브이 | www.bustv.co.kr |
| 7 | 비엘애드 | www.bladcom.co.kr |
| 8 | 비츠로미디어 | www.vitzromedia.com |
| 9 | 승보 | www.seungboad.com |
| 10 | 애드웍스 | www.adworksmedia.co.kr |
| 11 | 애드인컴퍼니 | www.adinc.co.kr/main |
| 12 | 양진텔레콤 | www.yangjintel.com |
| 13 | 엔미디어 | www.oohmedia.co.kr |
| 14 | 엠엔엠네트웍스 | www.mnmnetworks.com |
| 15 | 오브라운 | www.ohbrown.co.kr |
| 16 | 인앤아웃 | www.innoutad.com |
| 17 | 인컴이즈 | www.incomiz.co.kr |
| 18 | (주)인텔리안시스템즈 | www.intelliansys.co.kr |
| 19 | 인풍 | www.inpoong.co.kr |
| 20 | 제이씨데코 코리아 | www.jcdecaux.co.kr |
| 21 | (주)제이엔씨마케팅커뮤니케이션 | www.jnplanet.com |
| 22 | (주)케이아이엠지 | www.kimediagroup.com |
| 23 | 클럽애드 | www.clubad.co.kr |
| 24 | 힉스 | www.higgs-lab.com |
| 25 | BGF네트웍스 | www.bgfnetworks.com |
| 26 | GS 넷비전 | www.gsnetvision.com |

● 부산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비앤애드 | www.bnad21.co.kr |
| 2 | (주)청운기업 | www.chwoon.co.kr |
| 3 | BK미디어 | www.booknknight.com |

IV. 관련 주요 기업 목록

1. 옥외광고 관련 기업

● 인천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애드뷰 | www.hd143236.modoo.at |

● 대구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동대구역 전광판 애플애드벤처 | www.applead.co.kr |
| 2 | (주)한스미디어 | www.daeguad.com |
| 3 | 화성E&A | www.hsena.com |
| 4 | N-MEDIA | www.n-media.kr |

● 고양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주)미디어오픈 | www.mediaopen.co.kr |

● 부천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애드필 | www.ad-feel.co.kr |

● 화성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현애드 | www.hyunad.com |

IV. 관련 주요 기업 목록

2. IT 제조 기업

*본 기업 정보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

2. IT 제조 기업

● 서울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고려 키오스크 | www.kr2000.com |
| 2 | 대한전광 | www.daehanultravision.com |
| 3 | 디스플레이허브 | www.displayhub.co.kr |
| 4 | 보문테크닉스 | www.bomoon.com |
| 5 | 삼익전자 | www.samikdisplay.co.kr |
| 6 | 솔루팜 | www.solufarm.com |
| 7 | 시스메이트 | www.isysmate.co.kr |
| 8 | 싸인텔레콤 | www.signtelecom.com |
| 9 | 앤디아이디 | www.ndid.co.kr |
| 10 | 엠에스택 | www.mstecled.com |
| 11 | 엠팍트너스 | www.mpartners.co.kr |
| 12 | 오리온 | www.oriondisplay.net |
| 13 | 올엘이디 | www.allledshop.com |
| 14 | 유에스에스코리아 | www.usskorea.co.kr |
| 15 | 주봉정보시스템 | www.jbdid.com |
| 16 | 지스마트 | www.g-smattglobal.com |
| 17 | 카네기 솔루션 | www.magicsign.co.kr |
| 18 | (주)카멜 | www.camelcorp.co.kr |
| 19 | 쿨사인 | www.koolsign.net |
| 20 | 키오스크코리아 | www.kioskkorea.com |
| 21 | 현대IT | www.hyundait.com |
| 22 | DMS | www.no1led.net |

● 부산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부산디지털사이트아이엔지 | www.xibokr-server.mooo.com |
| 2 | 에스엔테크 | www.sntls.co.kr |
| 3 | 제이몰 | www.jmall.kr |
| 4 | 제이솔루션 | www.jsolution.kr |
| 5 | 하얀코끼리 LED | www.bs-led.co.kr |

2. IT 제조 기업

● 인천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다이즈 하이미디어 | www.higart.co.kr |
| 2 | 디사인플러스 | www.dsignplus.co.kr |
| 3 | 엘리비전 | www.elivision.com |
| 4 | 이디에스 | www.edsdid.co.kr |
| 5 | 이로즈 디스플레이 | www.erosedisplay.co.kr |
| 6 | 코텍 | www.kortek.co.kr |
| 7 | (주)현선 디스플레이 | www.hldid.com |
| 8 | TDS디스플레이 | www.tdsdisplay.com |

● 대구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반딧불LED | www.bandyled.com |
| 2 | 어펙시스템 | www.apsys.kr |

● 고양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두산엘아이디 | www.doosanled.co.kr |
| 2 | 미디어다임(주) | www.mediadigm.com |
| 3 | 연우솔루션 | www.ywsolution.co.kr |
| 4 | 온빛 | www.onbitled.com |

● 광명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한넷아이티 | www.hannetit.co.kr |

● 군포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알지비칼라 | www.rgbcolor.kr |

2. IT 제조 기업

● 김포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아하정보통신 | www.ahatouch.com |
| 2 | 한일디엔에스 | www.hanildns.co.kr |
| 3 | 휴먼전광 | www.xn--hc0bs3wowkkyo.kr |

● 남양주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주)에스제이테크닉스 | www.sjten.com |
| 2 | 픽셀이노베이션 | www.pixel-led.co.kr |

● 안산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미디어뷰SU | www.mediaviewsu.com |

● 안양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미디어시티 | www.mcdid.co.kr |
| 2 | 아바비전 | www.avavision.co.kr |
| 3 | 토비스 | www.tovism.com |

● 양주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뉴옵틱스 | www.newoptics.net |

● 용인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대우루컴즈 | www.lucoms.co.kr |
| 2 | 빛샘전자 | www.vissem.com |

2. IT 제조 기업

● 파주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리카홀딩스 | www.ricaled.com |
| 2 | 코리아싸인 | www.koreasign.co.kr |

● 하남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애드라이트 | www.adlite.co.kr |

● 화성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레디스 | www.leddis.co.kr |
| 2 | 엠디에스 | www.wmds.co.kr |

IV. 관련 주요 기업 목록

3. CMS 솔루션 기업

*본 기업 정보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

3. CMS 솔루션 기업

● 서울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미디어퀘스트 | www.mediaquest.kr |
| 2 | 비비엠씨 | www.signcast.co.kr |
| 3 | 비전코스모 | www.visioncosmo.com |
| 4 | 세넥스 | www.senex.kr |
| 5 | 이비즈서브 | www.ebizserv.co.kr |
| 6 | 인텔리안시스템즈 | www.intelliansys.co.kr |
| 7 | 큐보스 | www.qvoss.co.kr |
| 8 | 노크 | www.knowck.com/ |
| 9 | KDC | www.kdccorp.co.kr |
| 10 | SQI 소프트 | www.sqisoft.com |

● 인천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디사인플러스 | www.dsignplus.co.kr |

● 고양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미디어 다임 | www.mediadigm.com |
| 2 | 홀로그래미카 | www.hologramica.co.kr |

● 안양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리드앤 | www.readn.co.kr |
| 2 | 엠넥스 | www.mnex.co.kr |

● 용인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거북이 연구소 | www.turtlelab.co.kr |
| 2 | 엔디에스 | www.netds.net |

IV. 관련 주요 기업 목록

3. CMS 솔루션 기업

| | | |
|---|---------|--|
| 3 | 올댓솔루션 | www.allthatsolution.com |
| 4 | 인피니티미디어 | www.infimedia.co.kr |

● 화성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스마트사인 | www.smartsign.net |

IV. 관련 주요 기업 목록

4. 콘텐츠 제작 기업

*본 기업 정보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

4. 콘텐츠 제작 기업

● 서울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고양이들의반란 | www.govan.kr |
| 2 | 네오사인 | www.neosign.co.kr/makesign |
| 3 | 더위버크리에이티브 | www.theuber.co.kr |
| 4 | 도브트래빗 | www.dovetorabbit.com |
| 5 | 디스트릭트 | www.district.com |
| 6 | 디펙트 | www.dfect.co.kr |
| 7 | 라온스퀘어 | www.raonsquare.com |
| 8 | 모온컴퍼니 | www.themo-on.com |
| 9 | 미디어프론트 | www.mediafront.kr |
| 10 | 미디어플로우 | www.mediaflow.co.kr |
| 11 | 바이널아이 | www.vinyl-i.com |
| 12 | 비드폴리오 | www.vidfolio.kr |
| 13 | 엘토브 | www.eltov.com |
| 14 | 이지사이언지 | www.easysignage.co.kr |
| 15 | 제이유엑스 | www.designjux.com |
| 16 | 커즈 | www.cuz-art.com |
| 17 | 케이브이알 | www.k-vr.co.kr |
| 18 | 큐브릭디지털 | www.cublick.com |
| 19 | 클라이어스 | www.clius.co.kr |
| 20 | 팝스라인 | www.poppline.co.kr |
| 21 | 팩텀미디어 | www.factummedia.com |
| 22 | 힉스 | www.higgs-lab.com |
| 23 | D3Lab | www.kr.homeper.com/d3lab |
| 24 | ERIC C&C | www.ericcnc.co.kr |
| 25 | VRX | www.vrx.co.kr |

● 부산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유비텍 | www.ubitec.co.kr |

4. 콘텐츠 제작 기업

● 안양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탱고마이크 | www.tangomike.kr |

● 용인

| No | 기업명 | 홈페이지 |
|----|------------|--|
| 1 | (주)인피니티미디어 | www.infimedia.co.kr |

V. 전자게시대 설치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1. 법 제도
2. IT 용어

V. 전자게시판 설치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1. 법 제도

V. 전자케시대 설치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1. 법 제도

| 번호 | 법령 | Page |
|----|--|------|
| 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 293 |
| 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4 |
| 3 | 소상공인기본법 | 296 |
| 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 | 296 |
| 5 | 중소기업기본법 | 296 |
| 6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297 |
| 7 | 도로법 | 298 |
| 8 | 도로법 시행령 | 299 |
| 9 | 도로교통법 | 301 |
| 10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디자인법) | 301 |
| 1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 301 |
| 12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302 |
| 13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302 |
| 14 |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 303 |
| 1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 303 |
| 1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304 |
| 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 305 |
| 18 | 청소년 보호법 | 305 |
| 19 | 정보통신공사업법 | 306 |
| 20 | 전기공사업법 | 306 |
| 21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307 |
| 22 | 건설산업기본법 | 307 |
| 2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308 |
| 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 308 |
| 2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310 |
| 26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311 |
| 2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 312 |
| 2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 | 312 |
| 29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313 |
| 30 |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316 |
| 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 317 |
| 3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 317 |
| 33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 318 |

1. 법 제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 2021.6.10] [법률 제17379호, 2020.6.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幃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5조 (금지광고물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 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전문개정 2011.3.29]

1. 법 제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3.8] [대통령령 제32521호, 2022.3.8, 일부개정]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8.5.28, 2019.4.30>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 · 네온 · 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LED)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LED)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 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 · 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③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1. 법 제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 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케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1 전자케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케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케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케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1. 법 제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2.5] [법률 제16954호, 2020.2.4, 제정]

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일 것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 2022.7.21] [법률 제18310호, 2021.7.2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15.11.20, 2017.2.8, 2017.7.26, 2018.6.12, 2020.2.4, 2020.2.11>

-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가상호신로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 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7.5] [법률 제18705호, 2022.1.4, 일부개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

1. 법 제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 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중(同一) 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6.9] [대통령령 제31758호, 2021.6.8일부개정]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30.]

1. 법 제도

● 도로법

[시행 2022.3.8] [법률 제18555호, 2021.1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29조 (도로관리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 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허가 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 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1. 법 제도

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자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2.1.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1.21, 타법개정]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1. 법 제도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 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 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설치일·설치위치·규격·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1. 법 제도

● 도로교통법

[시행 2022.7.12] [법률 제18741호, 2022.1.11, 일부개정]

제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 3 「도로법」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제72조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디자인법)

[시행 2021.9.16] [법률 제18246호, 2021.6.1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 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0.5.27] [대통령령 제30685호, 2020.5.19, 일부개정]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

1. 법 제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7. 14, 2014. 11. 28, 2016. 7. 6.>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4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5. 26>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 측정기준 구분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 | | 단위 |
|------------|---------------------|-----|-----------|-----------|------------|------------|----------|
|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24:00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m^2 |
| | 24:00 ~해뜨기 전 60분 |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로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4, 2016. 1. 6, 2017. 2. 8>

1. 법 제도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0.2.16] [기획재정부지침, 2010.2.16, 제정]

2 민간투자 사업의 시행방식

(1)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되며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이 인정된다. 민간 사업자는 동 시설을 운영(Operate)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며 주로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3.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회계처리

(1) BTO 방식 회계처리

① 회계처리해설

BTO방식에 의해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준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 시 해당 자산이 취득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며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은 자산의 차감계정인 사용수익권으로 계상한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액으로 하되 민간투자비 총액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서 상각한다. 이 경우 취득한 자산의 상각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되 사용수익권 제공기간이 자산 내용연수보다 길 경우 사용수익권 제공기간을 내용연수로 한다. 사용수익권의 상각은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처리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자: 공유재산법)

[시행 2022.6.29] [법률 제18661호, 2021.12.2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 법 제도

-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기부금)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제7조 (기부채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행정자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9조 (공부 등록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6.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6.28, 타법개정]

제2조 (공유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1. 법 제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9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2.1.1] [법률 제18550호, 2021.1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2017.12.12, 2018.12.11>

- 1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로부터 자목 까지의 매체물에 수록·제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1. 법 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2.7.12] [법률 제18737호, 2022.1.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7.7.26, 2019.12.10>

-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 문자 ·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 제어 ·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 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공사의 제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 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3 통신구(○○)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 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1.4.20] [법률 제18096호, 2021.4.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3.3.23, 2013.12.30, 2021.4.20>

-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도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3. "공사업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 (공사업의 등록)

-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 전기공사업 시행령

[시행 2022.3.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타법개정]

제2조 (전기공사)

-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9.1>
-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7.19]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7.19, 일부개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법 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7.19]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7.19, 일부개정]

제7조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20.12.2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 2021.1.12, 타법개정]

제7조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 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0.10.20>

-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 5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있는 자

1. 법 제도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 아.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1. 법 제도

할수 없다. <신설 2018.12.24.>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 2022.6.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6.28, 타법개정]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 · 용역(청소 ·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2016.9.13.>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 ⑨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 · 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1. 법 제도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시행 2021.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12.28, 일부개정]

제2조

(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제4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개정 2009.4.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책임)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0>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 <개정 2009.4.8>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공동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8.11.20, 2009.4.8; 단서신설 2014.1.10>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5인 이하

1. 법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 2022.6.29] [법률 제18661호, 2021.12.28. 타법개정]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6.29] [법률 제18661호, 2021.12.28. 타법개정]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2.18>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21>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 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1. 법 제도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 주요 설비 및 장비
 - 2 최소 공장 면적
 - 3 최소 필요 인원
 - 4 필수 자격
 -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0.3.16]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29호, 2020.3.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구매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공사의 제한)

- 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2 직접생산확인서
 -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4 여성기업 확인서
 - 5 장애인기업 확인서

1. 법 제도

- 6. 벤처기업 확인서
 -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8.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9. 수출유망 중소기업 확인서
 - 10.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 ②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이행능력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 1. 이행능력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 2.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 ① 이행능력 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중 세계 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의 개방대상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한다.
-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1]
 -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2]
 -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3] [별표 1-3] [별표 2-3]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1. 법 제도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신인도 평가라. 기타 항목의 수출우수기업 가점은 제외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수출우수기업 가점은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제6조 (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1]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창업 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 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3]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3-1], [별표 3-2]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등급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 배점한도 (+3~ -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라. 기타 항목의 수출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은 심사분야별로 합산한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1. 법 제도

●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시행 2015.9.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5호, 2015.9.21, 일부개정]

제3조 (심사방법)

- ① 이 예규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I)」: 제2장
 - 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II)」: 제3장
 - 3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III)」: 제4장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되,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의한 방법을 참고하여 물량 및 입찰금 액의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택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의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심사대상 공종별로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적정성 여부를 심사 하여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공종을 정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5조 (위원회 구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자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公正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公正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1.12.9] [법률 제18201호, 2021.6.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22.7.12] [법률 제18748호, 2022.1.1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1. 법 제도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처리기간의 통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시행 2022.7.12] [대통령령 제32789호, 2022.7.11, 일부개정]

제6조 (민원의 접수)

- ① 민원은 민원실[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개정 2022.7.11>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도

- 1 기타민원
-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 4 접수증을 같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 ⑥ 행정기관의 장은 5명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 ⑦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민원이 소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신설 2022.7.11>

제15조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 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5>
- ⑥ 민원인은 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법 제도

- ⑦ 감독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국 민권익위원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자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기타민원의 경우
 -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 문서 가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 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2. 7. 11>
- ④ 제3항에 따른 전자화 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 마련 전자화 문서의 형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하여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7. 11>

▽전자게시대 설치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2. IT 용어

2. IT 용어

| 분류 | 용어 |
|----|---------------|
| ㄱ | 가시각 |
| | 감마 보정, 톤 보정 |
| | 근거리 통신망 |
| ㄴ | 내환경성 시험 |
| | 내환경성 |
| | 니트 |
| ㄷ | 도트 |
| | 드라이버 보드 |
| | 디밍 |
| ㄹ | 룸 |
| | 리프레쉬율 |
| ㅁ | 마이크로프로그램 |
| | 명암비 |
| | 미디어월 |
| ㅂ | 반사율 |
| | 발광다이오드 |
| | 빙화벽 |
| | 분전반 |
| | 비디오 코덱 |
| | 비콘 |
| | 비트 |
| | 비트맵 |
| ㅅ | 색보정 |
| | 셋탑 |
| | 스몰셀 |
| | 시야각 |
| ㅇ | 영상/그래픽 source |
| | 오디오 코덱 |
| | 응답속도 |
| | 이더넷 |
| ㅈ | 제어 처리계 |

| 분류 | 용어 |
|----|---------------|
| ㅋ | 컨버터 |
| | 컴포넌트 신호 |
| | 코덱 |
| ㅌ | 클라이언트 - 서버 모델 |
| | 통신 규약 |
| | 트래픽 |
| ㅍ | 파워 서플라이 |
| | 펌웨어 |
| | 플리커 |
| ㅎ | 해상도 |
| | 화면 균일성 |
| | 화소 |
| ㅏ | 휘도 |
| | A/V Mixer |
| | BMP |
| B | C.P.U |
| C | DVI |
| D | EMC |
| E | FPGA |
| F | FTP |
| G | GS인증 |
| G | GtoG |
| H | H.264 |
| H | HDD |
| H | HTTP |
| H | HTTPS |
| I | ICT |
| I | IK 등급 |
| I | IP 등급 |
| J | JPEG |
| L | LC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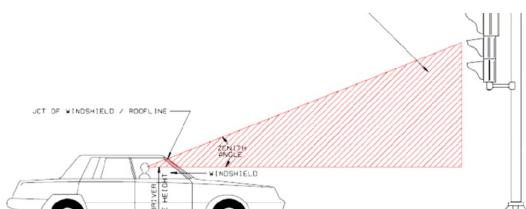
| 분류 | 용어 |
|------|------------|
| M | LED 모듈 |
| | MP3 |
| | MP4 |
| MPEG | MPEG |
| | MPEG-1 |
| | MPEG-2 AAC |
| N | NAT |
| | NFC |
| O | OLED |
| P | PCB |
| | PNG |
| R | RAM |
| | RFID |
| | RGB |
| S | SDI |
| | SMC |
| | SMD |
| | SMPS |
| | SSD |
| | STP 케이블 |
| | SVGA |
| | SXGA |
| U | UTP |
| U | UXGA |
| G | VGA |
| X | XGA |
| Y | YUV |

2. IT 용어

ㄱ

가시각 (可視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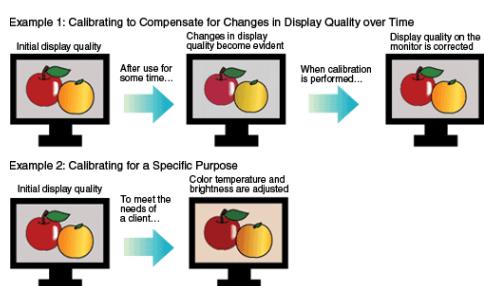
관측자가 관측 위치에서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각도



출처: 1)

감마(Gamma/γ)보정, 톤 보정

필름이나 비디오 영상에서 정확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RGB를 조정하여 디스플레이 장치의 출력 특성을 기준 색이나 다른 장치에 맞게 설정하는 과정



출처: 2)

근거리 통신망 (Local Area Network, LAN, 近距離通信網)

집, 학교, 사무실 등의 같은 건물 내 또는 가까운 거리 내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치들을 연결해 주는 통신망

출처: 3)

ㄴ

내환경성 시험 (Environmental test)

전자 기기나 부품의 신뢰성 또는 수명은 그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나 습도 혹은 일사(日) 등과 같은 외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그들 조건이 재료나 제품의 특성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

보통은 실제의 사용 시간보다 단축한 시간 내에서 빨리 결론을 얻기 위해 가속 수명 시험을 하여, 그 경우에 환경을 모의하기 위한 장치로서 웨자오미터 등이 사용된다.

출처: 4)

내환경성

디지털광고물이 사용 및 보관 중 자연환경이나 유도환경 요소에 견디는 성질로 내환경 시험에 의해 결정

출처: 5)

니트(nit)

화면의 밝기단위 (기호 nt. 1m²당 1칸델라의 휘도, cd 혹은 cd/m²)

값이 높을수록 화면이 밝아, 야외에서도 선명하다.



출처: 6)

ㄷ

도트 (Dot)

2D 그래픽 이미지의 최소 단위인 '점'을 뜻하는 단어 (픽셀과 같은 의미)

LED 디스플레이에서는 LED 광원 하나하나를 의미한다.

출처: 7)

2. IT 용어

드라이버 보드 (Driver board)

부품으로 채워지고 특정 전원 회로 또는 장치의 작동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회로 기판
깜박임 조절, 아날로그 밝기, 백라이트, 스위치, DC/DC 컨버터, 밝기 제어, 카메라 플래시, 조광, RGB 제어 등을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LED 디스플레이의 주요 부품

출처 : 8)

디밍 (Dimming)

1. 조명 기기의 밝기 조절
 2. 백라이트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를 동시에 동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상 특성에 따라 점멸시키는 방식
- LED 광원의 밝기를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높이는 조절

출처 : 9)



롬(Read Only Memory, ROM)

한번 기록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지만, 다시 기록 할 수 없는 메모리

출처 : 10)

리프레쉬율(수직주파수/Refresh rate)

단위시간(초) 당 화면이 변경되는 횟수
모니터는 수평주파수와 수직주파수로 화면을 만드는데,
수직주파수는 화면의 깜빡임을 좌우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깜빡임이 줄어들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출처 : 11)



마이크로프로그램 (Microprogram)

컴퓨터의 CPU가 지시받은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CPU가 하는 일련의 제어 기능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출처 : 12)

명암비| (Contrast)

디스플레이에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명암비가 높을수록 색 표현력과 화질이 뛰어나고 머리카락이 한 올 씩 구분되며, 흰 바탕의 흰 계란을 쉽게 식별하지만 실제로는 3,000대 1 이상이면 육안으로 거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출처 : 13)

미디어월 (Media wall)

1. TV(가정용 TV 위성 박스 또는 케이블 포함)을 기준 벽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미디어 기능
2. 벽면에 여러 대의 (LCD, LED 등) 디스플레이를 브라켓으로 고정하여 벽과 일치시킨 미디어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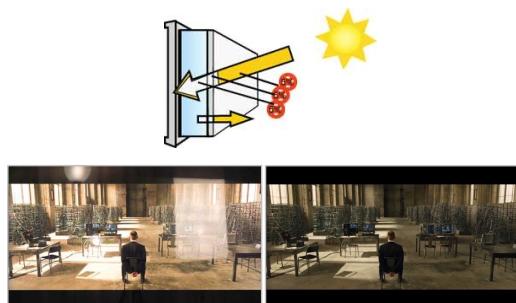
출처 : 14)

2. IT 용어

▣

반사율 (Reflectance ratio)

디스플레이가 빛을 받았을 때 반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난반사로 인한 디지털광고물의 시인성 문제를 방지하고자 규정하는 기준
반사율에 대한 기술 기준은 LCD(OLED) 디스플레이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값 5%이하로 정한다.



출처 : 15)

발광다이오드 (Light-emitting diode,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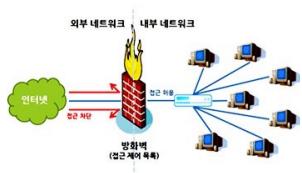
전류를 직접 빛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소자



출처 : 16)

방화벽 (Firew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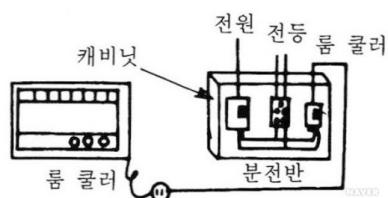
해커나 크래커의 불법 침입을 차단하여 정보 유출, 시스템 파괴 등의 보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그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하드웨어



출처 : 17)

분전반 (分電盤)

전기가 흐르는 주된 선을 간선이라 하는데, 옥내 배선에서의 간선으로부터 각 분기회로로 갈라지는 곳에 설치하여 분기회로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 한곳에 모아 놓은 것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 등의 각종 차단기, 전력량계(전력 미터) 리모컨 릴레이 및 타이머 등의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보관함
전기가 흐르는 주된 선을 간선이라 하는데, 간선을 분기 차단기로 잘게 나눈다는 용도로 분전반이라고 한다.



출처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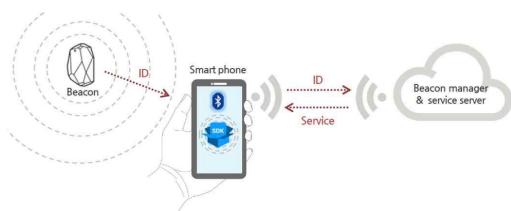
비디오 코덱 (Video codec)

동영상을 압축하고 압축된 것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그 제품(예 : MP4, AVI 등)

출처 : 19)

비콘 (Beacon)

블루투스 기반으로 근거리 내에 감지되는 스마트 기기에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



출처 : 20)

비트 (bit)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데이터 단위

2. IT 용어

1비트는 이진수 체계(0, 1)의 한 자리로, 8비트는 1바이트이다.

예를 들어, 16bit는 컴퓨터가 65536 가지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참고 : 윈도는 32비트 버전과 64비트 버전이 있다. 32와 64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를 의미하며 32비트 버전은 2^{32} , 64비트는 2^{64} 까지의 숫자를 한번에 다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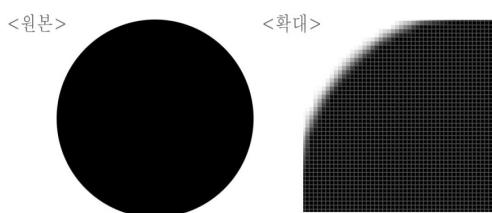
(출처: 21)

비트맵 (Bitmap)

작은 점들로 써 그림을 이루는 이미지 파일 형식

컴퓨터 그래픽에서 글자 혹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픽셀(pixel)의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화면에서 이미지나 글자를 확대했을 때 매끄럽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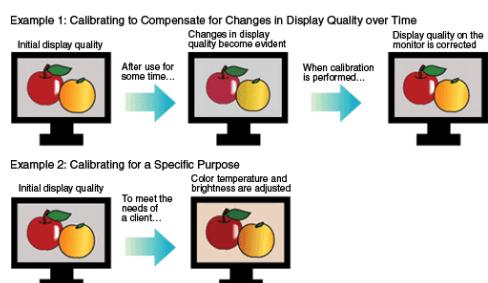


(출처: 22)

人

색 보정 (Color calibration)

필름이나 비디오 영상에서 정확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RGB를 조정하여 디스플레이 장치의 출력 특성을 기준 색이나 다른 장치에 맞게 설정하는 과정



(출처: 23)

셋톱 (Set-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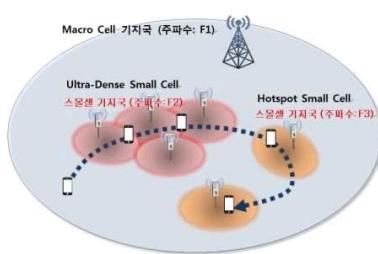
디지털화된 상태로 전송된 정보를 TV나 모니터 화면에 보이도록 원래의 영상 및 음성신호로 복원해 주는 장치
(예: Windows, Android, Linux 등의 OS가 탑재된 컴퓨터)

(출처: 24)

스몰셀 (Small cell)

수백 미터(m) 정도의 운용 범위를 갖는 저전력 무선 접속 기지국

단말기를 기지국에 가깝게 위치시켜 통신 품질 저하 및 음영 지역 발생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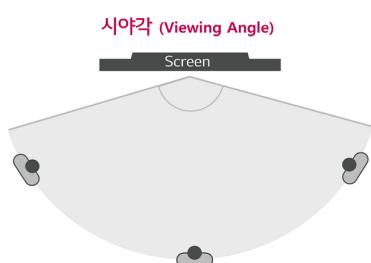


(출처: 25)

시야각 (Viewing angle, 視野角)

액정 디스플레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밝기 또는 명암비가 크게 변화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명암비가 어느 값 이상 유지되는 각도

수평 시야각 160°는 정면을 0°로 하여 좌우 각각 80° 범위에서는 정상적인 밝기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출처: 26)

2. IT 용어

o

영상/그래픽 SOURCE

영상 혹은 그래픽을 보여주는 장치나 제공되는 자료

출처 : 27)

오디오 코덱 (Audio codec)

디지털 음원 파일을 원하는 특정한 오디오 파일 포맷에 맞추어 압축하고 해제하는 프로그램
고품질의 오디오 신호를 품질을 유지하면서 저장 공간과 대역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 mp3, wav)

출처 : 28)

응답 속도 (Speed of response)

디스플레이 화면의 픽셀이 원하는 색으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



LG디스플레이 블로그 | Blog.lgdisplay.com

출처 : 29)

이더넷 (Ethernet)

근거리통신망(LAN)의 대표적인 통신 프로토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통신의 대부분은 이더넷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출처 : 30)

x

제어 처리계 (Control proces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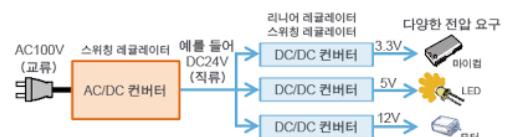
호출의 접속이나 복구 등의 제어를 행하는 중앙 제어 장치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기록하는 기억 장치 등의 총칭

출처 : 31)

x

컨버터 (Conve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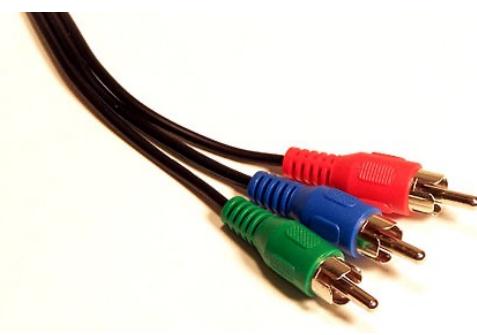
신호 또는 에너지의 모양을 바꾸는 장치



출처 : 32)

컴포넌트 신호 (Component video signal)

비디오 신호의 모든 요소를 여러 개의 신호 요소로 나누어진 형태 (회도 신호, 색신호, 수직 동기, 수평 동기로 나뉜 신호 형태)
예제 : 여러 가지 아날로그 영상 표준 중 컴포넌트 비디오가 가장 효과적으로 컬러를 재생성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컴포지트 비디오나 S-비디오와 다르게 세 가지 신호를 각각 분리시켜 놓아서 간섭잡음의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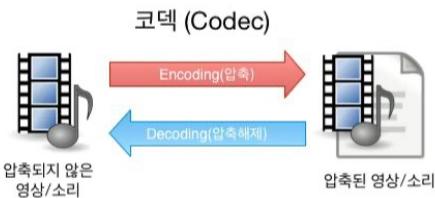


출처 : 33)

2. IT 용어

코덱 (Codec)

코더 (coder) 와 디코더 (decoder), 또는 컴프레서 (Compressor)와 디컴프레서 (Decompressor)의 합성어로, 음성이나 비디오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디지털로 바꿔주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 사용자가 알 수 있게 모니터에 본래대로 재생시켜 주는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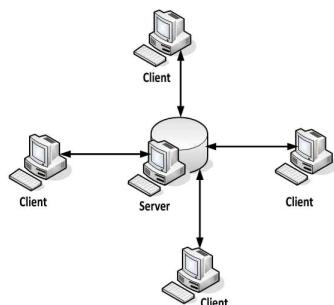


출처 : 34)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Client-Server model)

서비스의 이용자(클라이언트)와 서비스의 제공자(서버)로 분리된 컴퓨터 시스템

서버가 주된 처리를 하고 클라이언트가 그 처리를 이용한다.
승차권 예약 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는 단말기(클라이언트)의 예약 화면에서 예약 시간과 좌석을 지정하고 입력 내용을 서버에 송신하면 서버가 실제 예약을 실행한다.



출처 : 35)

E

통신 규약 (Protoc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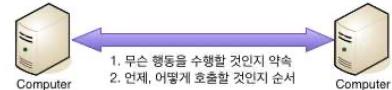
데이터나 음성 등의 정보를 원활히 송수신하기 위해 컴퓨터나 원거리 통신 장비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식과 규칙의 체계

신호 체계, 인증, 그리고 오류 감지 및 수정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토콜이 규정하는 내용에는 송수신자에 관한 정보, 데이터 형식, 송수신의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참고 : 프로토콜은 상대방도 같은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보증되었을 때 이용이 가능하여 거의 모든 프로토콜이 국제 표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프로토콜 (Protocol)



출처 : 36)

트래픽 (Traffic)

특정 통신장치나 전송로 상에서 일정 시간 내에 흐르는 데이터의 양, 전송량

사이트의 방문 수나 열람 수 등의 접속 수를 의미할 때 쓰이기도 한다.

컴퓨터 및 네트워크 가용량에 비해 트래픽이 증가하면 속도저하, 시스템 다운 현상 등이 나타난다.

출처 : 37)

II

파워 서플라이 (Power supply)

컴퓨터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장치

출처 : 38)

2. IT 용어

펌웨어 (Firmware)

CPU를 사용하는 전자 기기에 탑재되어 그 기기의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기능이 바뀌지 않고 정해진 처리에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일반적으로 루ム(ROM)에 기록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이다.

출처 : 39)

플리커 (Flicker, 明滅現象)

영사속도가 느려 눈이 필름의 연속적인 영상을 인지하지 못할 때 아른거림과 같은 현상이 시각으로 느껴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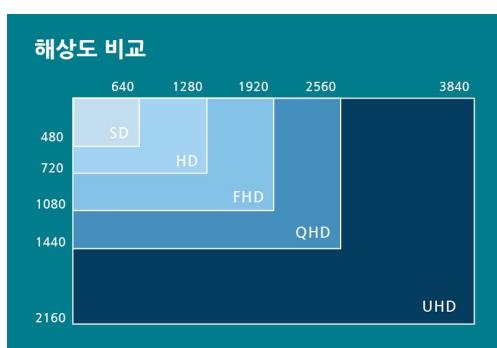


출처 : 40)

ㅎ

해상도 (Resolution, 解像度)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화면을 이루는 각각의 면이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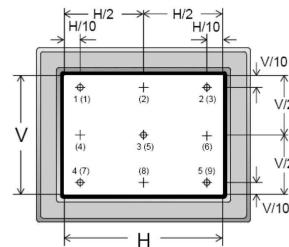


출처 : 23)

출처 : 41)

화면 균일성 (Screen uniformity)

디지털광고물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빛의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화면에 얼마나 균일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속성



출처 : 42)

화소 (Pixel, Picture el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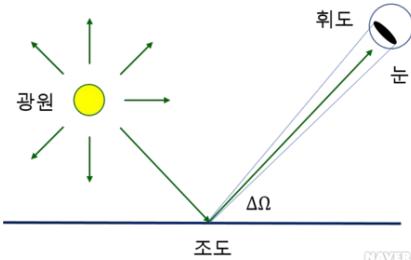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단위의 명암의 점
화면 전체의 화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밀하고 상세한 재현화면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해상도가 높다' 라고 표현한다.
LED 디스플레이 LED 광원의 개수를 의미한다.

출처 : 43)

휘도 (Luminance, 輝度)

어떤 표면에서 방사되거나 반사된 빛이 우리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 가와 관련된 양, 즉 광원(灯火)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
단위는 m^2 당 칸델라(cd), 스틸브(Sb), 람베르트(Lambert) 따위를 쓴다.

2. IT 용어



출처 : 44)

A

A/V Mixer

다 채널의 영상 신호를 입력 받은 후, 디스플레이에 영상 전환 및 합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기



출처 : 45)

B

BMP (Microsoft Windows Device Independent Bitmap)

2D 그래픽 이미지의 최소 단위인 '점'을 뜻하는 단어 (픽셀과 같은 의미)
그래픽 파일 저장 형식 중에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형식의 파일보다 크기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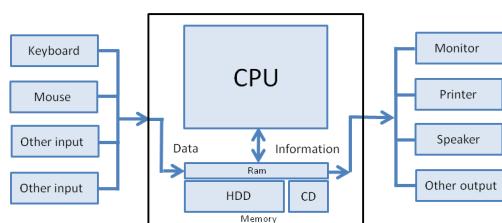
출처 : 46)

C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명령어를 해석, 연산한 후 그 결과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CPU 처리 성능은 컴퓨터의 성능으로 직결된다.



출처 : 47)

D

DVI (Digital Visual Interface)

LCD 모니터를 위하여 디지털 방식의 고화질 영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출처 : 48)

E

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감소하여 다른 전자기기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다른 전자기기에서의 노이즈 영향도 차단하도록 설계하여 기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

출처 : 49)

2. IT 용어

F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프로그램이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
회로 변경이 불가능한 일반 반도체와 달리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새겨 넣을 수 있다.

출처: 50

FTP (File Transfer Protocol)

인터넷을 통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는 프로그램

출처: 51)

G

GS인증 (Good Software)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SW(Software)
시험인증센터가 보유한 각종 테스팅 장비를 통해 SW의
품질을 기능하는 기능성, 신뢰성과 상호 호환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인증
2005년부터 GS인증마크 획득 제품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게 된다. 따라서 GS인증을 획득할 경우 공공 분야
영업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52)

GtoG [Gray(10%) to Gray(90%)]

디스플레이의 응답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밝은
화색에서 어두운 화색까지 넘어가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출처: 53)

H

H . 264

고선명 비디오의 녹화, 압축, 배포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포맷
매우 높은 데이터 압축 효율을 자랑한다.

출처: 54)

HDD (Hard Disk Drive)

컴퓨터의 정보와 문서, 자료 등을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장치
회전속도, 버퍼메모리가 클수록 속도가 빠르지만 성능이
평준화되어 큰 차이는 없다.
고속으로 디스크를 회전시켜 저장하는 방식이라 충격에
약하며 소음이 다소 발생한다.

출처: 55)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인터넷에서 웹 페이지를 보내는 규칙(프로토콜)으로
인터넷에서 웹 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신 규약
HTTP는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보내는 정보가 그대로 보인다.

출처: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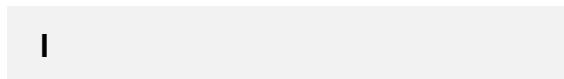
HTTPS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

웹 통신 프로토콜인 HTTP의 보안이 강화된 버전
데이터 통신의 인증과 암호화를 지원하여 보안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2. IT 용어

출처: 57)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정보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할 때 필요한 모든 기술
하나의 케이블 연결이나 링크 시스템을 통하여 오디오 수준과 전화망을 컴퓨터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의미로 가리키기도 한다.

출처: 58)

IK등급

외부충격에 대한 장비 보호의 정도를 규정하는 기술 기준

| IK CODE 물리적 충격에 대한 보호정도 PROTECTION AGAINST MECHANICAL IMPACT | |
|--|--|
| IK | TEST |
| 00 | no protection |
| 01-05 | Impact <1 Joule |
| 06 | 500g 물체를 20cm의 거리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상이 없음 [Impact 1 Joule] |
| 07 | 500g 물체를 40cm의 거리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상이 없음 [Impact 2 Joule] |
| 08 | 1.7kg의 물체를 25.5cm의 거리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상이 없음 [Impact 5 Joule] |
| 09 | 5kg의 물체를 20cm의 거리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상이 없음 [Impact 10 Joule] |
| 10 | 5kg의 물체를 40cm의 거리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상이 없음 [Impact 20 Joule] |

출처: 59)

IP등급 (Ingress Protection Marking)

정격전압 72.5kV이내의 전기장비와 외함의 방진 방수 보호등급을 분류하는데 적용하며 이 규격의 목적은 기기 접근에 대한 사람이나 가축을 보호하고, 해충, 진균 및 외부 분진 등의 침투에 대한 내부 기기를 보호하며, 물, 습기, 오일 등

의 침투로 인한 내부 기기를 보호하는데 있다. IP 코드는 두 자리로 되어있는데 첫 번째 숫자는 방진등급, 두 번째 숫자는 방수등급을 가리킨다.

| FIRST NUMBER 고체에 대한 보호정도 PROTECTION AGAINST SOLID PARTICLES | | SECOND NUMBER 액체에 대한 보호정도 PROTECTION AGAINST LIQUIDS | |
|---|------------------------------------|--|----------------------------------|
| IP | TEST | IP | TEST |
| 0 | no protection | 0 | no protection |
| 1 | 0mm이상의 고체 부터 보호됨 (손가락기준도) | 1 | 수직의 낙수물로부터 보호됨 |
| 2 | 2mm이상의 고체로 부터 보호됨 (손가락기준도) | 2 | 15° 경사에 둘어서는 낙수물로부터 보호됨 |
| 3 | 2.4mm이상의 고체로 부터 보호됨 (연장 손가락) | 3 | 60° 경사의 스프레이로 부터 보호됨 |
| 4 | 1mm이상의 고체로 부터 보호됨 (연장 손가락) | 4 | 모든 방향의 스프레이 로부터 보호됨 |
| 5 | 먼지로부터 보호됨 | 5 | 모든 방향의 낮은압력의 분사되는 물로부터 보호됨 |
| 6 |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됨 | 6 | 모든 방향의 높은압력의 분사되는 물로부터 보호됨 |
| 7 | 15cm min | 7 | 15cm~1m까지 갈수되도록 보호됨 |
| 8 | 1m | 8 | 정기적 청소되어 수정을 할수도 보호됨 |

출처: 60)

J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JPEG 위원회에서 개발된 사진 등의 정지화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서 입출력하는 기술의 표준.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이미지의 화질과 파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입출력이 높은
대신 화질 손상이 많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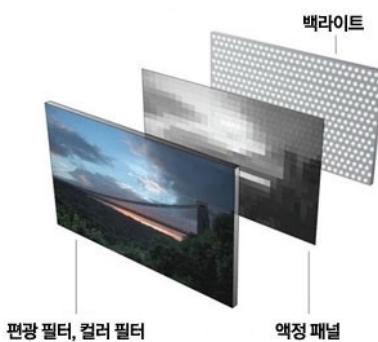
출처: 61)

2. IT 용어

L

LCD (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 또는 액정디스플레이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의 화면 표시 방식으로 액정 자체는 빛을
내지 않으며, 투과하는 빛의 양을 조정해 밝기나 색을 만든다.



출처 : 62)

출처 : 64)

MP4 (MPEG-4 Part 14)

멀티미디어 파일 규격
'MPEG-4 파트 14'를 간단히 줄여 MP4라고 부른다.
MPEG-4 기술이 적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MPEG-1와
MPEG-2에 비해 적은 용량으로도 고품질의 영상 및 음성을
구현할 수 있으며, 용량이 적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적은
휴대용 기기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출처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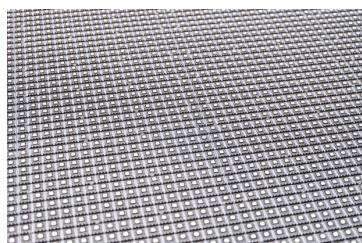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동영상 압축, 해제 규약
실제로는 1988년 설립된 '동영상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문가 그룹(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을 뜻한다.
인터넷의 보급 및 보편화와 더불어 동영상을 압축,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영상 압축과 코드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출처 : 66)

LED 모듈(LED module)

'빛을 내는 반도체'인 LED 칩(광원)을 기판 위에 탑재한 전자부품
전기를 넣으면 빛을 낸다.



출처 : 63)

MPEG-1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 표준으로
정한 CD와 같은 매체에 동영상을 압축해 저장하기 위해
개발된 코덱
MPEG-1은 최대 전송률(max. bitrate)이 CD의 1배속 전송
속도인 약 1.5Mbps로 제한이 되었고 여기에 맞추어
지원하는 최대 해상도도 352×288로 제한되어 있다.

출처 : 67)

M

MP3 (MPEG Audio Layer-3)

MPEG1에서 정한 고음질의 오디오 압축기술
음반 CD에 가까운 음질을 유지하면서 CD의 50배로 압축이
가능하다.

MPEG-2 AAC (MPEG-2 Advanced Audio Coding)

MPEG 규격에 포함되는 디지털 압축 오디오 신호
AAC는 MPEG-2 AAC와 MPEG-4 AAC로 나누어지는데,

2. IT 용어

일반적으로 자주 듣는 음악 파일 형식인 MP3와 AAC는 동일한 MPEG기술을 사용한다.

AAC 규격은 MP3에 비해 음질이 우수하고 30% 정도 압축률이 높다.

출처 : 68)

N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변환기)

비공인(사설 IP)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하는 망에서 외부의 공인망(공인 IP)과의 통신을 위해서 네트워크의 주소를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출처 : 69)

NFC (Near Field Communication/근거리 무선 통신)

10cm 이내의 근거리에서 단말기 간 통신을 지원하는 기술.

교통카드나 소액결제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NFC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페어링, 가전제품 기능 제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블루투스에 비하여 '반드시 접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보안성은 강화되지만 사용성 낮은 단점이 있다.



출처 :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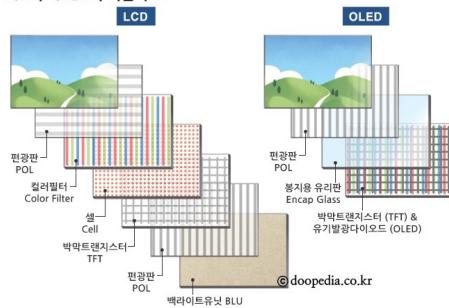
O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 발광 다이오드)

전기를 가하면 그 자체가 빛을 내는 발광체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특징 때문에 제품 두께를 더욱 얇게 만들 수 있으며, 특수 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해 구부리거나 훨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기도 제작할 수 있다.

LCD와 OLED의 기본 구조



출처 : 71)

P

PCB (Printed Circuit Board/인쇄 회로 기판)

집적 회로, 저항기 또는 스위치 등의 전기적 부품들이 납땜되는 얇은 판으로, 대부분의 컴퓨터에 사용되는 회로가 설치되는 회로 기판



출처 : 72)

2. IT 용어

PNG (Portable Network Graphics)

웹에서 최상의 비트맵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W3C에서 제정한 파일 포맷



출처 : 73)

R

RAM (Random Access Memory/ 등속호출 기억장치)

데이터를 읽기도 하고 쓸 수도 있는 메모리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응용 프로그램의 일시적 로딩 (loading), 데이터의 일시적 저장 등에 사용된다.

* 참고 : RAM의 종류는 DRAM(Dynamic RAM)과 SRAM(Static RAM)이 있으며 DRAM은 컴퓨터에 사용되어 일정 시간마다 데이터를 다시 쓰는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반면 SRAM은 특수한 산업용으로 사용되어 리프레시가 필요 없다.

출처 :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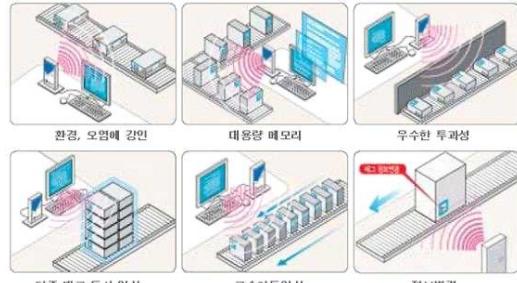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식별)

무선을 사용해 식별 정보(ID) 등을 발신하는 태그나 카드, 그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태그나 카드는 RFID태그, RF태그, IC 카드 등으로 불린다.

RFID는 비접촉식 무선환경에 의한 인식 기술이므로 환경이나 기타 요인에 구애 받지 않고 동작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정보를 동시에 판독하거나 수정갱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참고 : 바코드나 QR코드도 RFID와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그 두개는 인쇄물인 데 비해 RFID는 통신 기능이 있는 메모리이기에 기록이 가능하고 오염에 강하며 판독 범위가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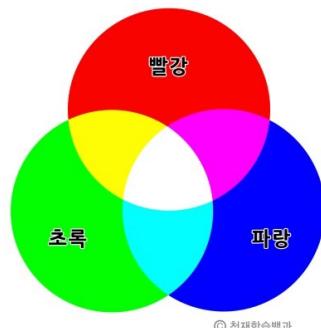
출처 : 75)

RGB (Red, Green, Blue)

RGB(적녹청)에 의해 색을 정의하는 색 모델, 또는 색 표시 방식

빛의 3원색인 적녹청을 혼합하여 색을 나타내는 RGB 방식은 인쇄 매체가 아닌 기타 빛을 이용하는 표시 장치에서 이용되고 있다.

RGB의 색 하나하나가 1도트(dot), RGB 1세트가 1픽셀이다.



© 천재학습백과

출처 : 76)

S

SDI (Serial Digital Interface/직렬 디지털신호 전송방식)

2. IT 용어

비압축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하는 기술
디지털로 생성·저장된 데이터를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송출할 경우,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야 하고 수신하는 측에서는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신호가
변질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직접 송수신하면 큰 잡음이 흡입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가 그대로 복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77)

SMC (System Management Controller, Surface Mount Technology /표면 실장 기술)

- 인쇄 회로 기판 (PCB)의 표면에 직접 실장할 수 있는 표면
실장 부품 (surface mounted components, SMC)을
전자 회로에 부착시키는 방법이다.
- SMC의 경우 시스템의 냉각, 전원 관리와 배터리 관리,
CPU와 같은 주변장치, 그리고 비디오 모드 전환 혹은 종료,
LED나 잠자기 같은 것들을 제어한다.

출처 : 78)

SMD (Surface Mount Device /표면실장부품)

표면에 부착이 가능한 전자 부품

인쇄 회로 기판(PCB)에 표면실장 부품을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SMT Line 구성에
필요한 설비를 의미하나, 넓게는 표면실장 부품을 실장하는
PCB의 제조에 필요한 생산직접 설비 및 부대장치, 관련설비를
뜻한다.

출처 : 79)

SMPS (Switched Mode Power Supply)

반도체 스위치 소자의 온오프(on-off) 시간 비율을 제어하여

출력을 안정화 시킨 직류 안정화 전원 장치로서 스위칭
회로를 이용한 전원 공급 장치
고효율, 소형 및 경량화가 가능하여 대부분의 전자기기 및
장비 등에 널리 사용된다.

출처 : 80)

SSD (Solid State Drive)

HDD(하드디스크)와 달리 자기디스크가 아닌 반도체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여 HDD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의
읽기나 쓰기가 가능한 고속 보조기억장치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작동 소음이 없으며
전력소모도 적다. 이런 특성 덕분에 휴대용 컴퓨터에 SSD를
사용하면 배터리 유지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출처 : 81)

STP 케이블 (Shielded Twisted Pair cable)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쉴드 처리가 되어진 케이블.
안쪽에 꼬여 있는 2쌍의 케이블에 각각 쉴드 처리가 되어 있어
외부 노이즈로부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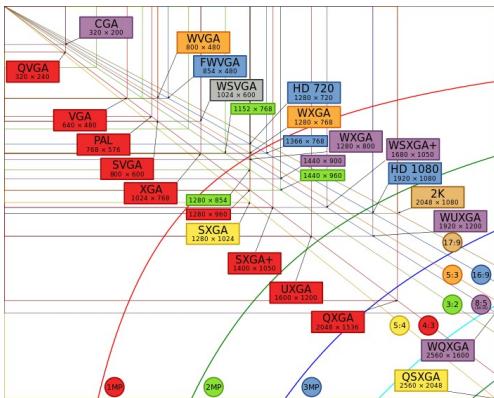
| | UTP | FTP | STP | S-STP |
|------------|-----|-----|-----|-------|
| 노이즈 방지 효과 | 낮다 | 높다 | | |
| 직접제작 시 난이도 | 쉽다 | 어렵다 | | |
| 비용 | 저가 | 고가 | | |

출처 : 82)

SVGA (Super Video Graphics Array)

비디오 도형 어레이(VGA)의 확장판
VGA의 해상도를 한층 더 높여서 고해상도의 도형 표시에
대응하기 위해 VGA의 기능을 확장한 비디오 어댑터로서,
VGA의 모든 비디오 모드(표시 모드)에 추가하여 가로세로
1,024×768화소의 해상도로 최대 256색을 동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 도형 모드(graphics mode)를 제공한다.

2. IT 용어



출처 : 83)

SX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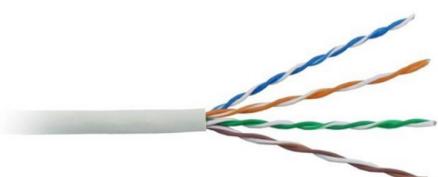
1280*1024 해상도를 가진 제품으로 5:4 비율의 일반 화면의 비율로 재생할 수 있다.
해상도가 높아 그림이 많이 들어간 업무용 프레젠테이션에 적당하다.

출처 : 84)

U

UTP (Unshielded Twisted Pair cable/연선)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STP 케이블과 비교해서 실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잡음에 약하지만,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출처 : 85)

UXGA (Ultra eXtended Graphics Array/초확장 그래픽스 어레이)

SVGA (800 x 600)의 기본 해상도의 정확히 4배인 1600 x 1200 화소의 표준 컴퓨터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일컫는다.

출처 : 86)

V

VGA (Video Graphics Array)

미국의 IBM이 퍼스널 컴퓨터인 PS/2 시리즈에 사용한 영상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송해주는 그래픽 규격
표시 모드는 17종류이고, 640x480의 해상도를 표현한다.
RGB, D-SUB라고도 부르며, 컴퓨터와 모니터의 연결이나, 프로젝터를 연결할 때 주로 사용된다.

출처 : 87)

X

XGA (eXtended Graphics Array/확장 그래픽스 어레이)

해상도가 1024 x 768정도로 자세한 텍스트 복잡한 도표 고해상도의 사진을 보기기에 적당하다.
일반적인 인터넷 화면을 스크롤 없이 대부분 볼 수 있으며 해상도가 높아 텍스트가 많은 표를 보기에도 좋다.

| | VGA | SVGA | XGA | WXGA | Full-HD |
|-------|-----------|-----------|------------|------------|-------------|
| 해상도 | 640 x 480 | 800 x 600 | 1024 x 768 | 1280 x 720 | 1920 x 1080 |
| 화면 비율 | 4:3 | 4:3 | 4:3 | 16:9 | 16:9 |
| 용도 | 텍스트 | 그림 | 사진 감상 | 영화 감상 | 고화질 영화 |

출처 : 88)

2. IT 용어

Y

YUV

컬러 영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밝기는 Y로 청색의 색차는 U로 적색의 색차는 V로 색을 표현하는 방식.
와이유브이(YUV)는 영상신호를 휘도(luminance)와 색차 신호(chrominance)로 구성하는 컴포넌트(component) 신호이다.

Single Frame YUV420 NV21:

| | | | | | |
|-----|-----|-----|-----|-----|-----|
| Y1 | Y2 | Y3 | Y4 | Y5 | Y6 |
| Y7 | Y8 | Y9 | Y10 | Y11 | Y12 |
| Y13 | Y14 | Y15 | Y16 | Y17 | Y18 |
| Y19 | Y20 | Y21 | Y22 | Y23 | Y24 |
| U1 | V1 | U2 | V2 | U3 | V3 |
| U4 | V4 | U5 | V5 | U6 | V6 |

Position in byte stream:

Y1|Y2|Y3|Y4|Y5|Y6|Y7|Y8|Y9|Y10|Y11|Y12|Y13|Y14|Y15|Y16|Y17|Y18|Y19|Y20|Y21|Y22|Y23|Y24|U1|V1|U2|V2|U3|V3|U4|V4|U5|V5|U6|V6

출처: 89)

IT 용어 출처

- 1) <https://bit.ly/3RKunsC>
- 2) <https://bit.ly/3U1w46H>
- 3) <https://bit.ly/3eGD7S6>
- 4) 전자용어사전 (성안당)
- 5)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6) <https://bit.ly/3TZOIRc>, <https://bit.ly/3DcrRr2>
- 7) <https://bit.ly/3Baih58>
- 8) <https://bit.ly/3Qyc88S>
- 9) <https://bit.ly/3L2Kpff>, <https://bit.ly/3DcEPVB>
- 10) <https://bit.ly/3RC03k7>
- 11) <https://bit.ly/3qvvCQU>
- 12) <https://bit.ly/3xe71Uy>
- 13) <https://bit.ly/3RVOnZu>
- 14) 포털 지식백과 참고 편집자 주
- 15)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16) <https://bit.ly/3eFLoWF>
- 17) <https://bit.ly/3SbQs3F>
- 18) <https://bit.ly/3eGP0HZ>, <https://bit.ly/3QtIcf2>
- 19) <https://bit.ly/3L6Hkut>
- 20)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21) <https://bit.ly/3quT80k>
- 22) <https://bit.ly/3DcsnW0>
- 23) <https://bit.ly/3DjRiH8>
- 24) <https://bit.ly/3xbK2JK>
- 25) <https://bit.ly/3xfhKOf>
- 26) <https://bit.ly/3xfIW0C>
- 27) <https://bit.ly/3RQFsZd>
- 28) <https://bit.ly/3BaP9Lr>
- 29)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30) <https://bit.ly/3U4oXuj>
- 31) <https://bit.ly/3BtO8zo>
- 32) <https://bit.ly/3qw4gKc>
- 33) <https://bit.ly/3xdSBU2>
- 34)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35)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36)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37) <https://bit.ly/3TZxqim>
- 38) <https://bit.ly/3U0eYGw>
- 39) <https://bit.ly/3QEcf2y>
- 40) <https://bit.ly/3RSrCaom>
- 41) <https://bit.ly/3RQGvbu>
- 42) <https://bit.ly/3eJvlH6>
- 43)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44) <https://bit.ly/3eF4YSO>
- 45) <https://bit.ly/3qpXWUN>, <https://bit.ly/3TYBijH>
- 46) 포털 지식백과 참고 편집자 주
- 47) <https://bit.ly/3xf4ads>
- 48) IT용어 사전 책
- 49) <https://bit.ly/3RQoSIU>
- 50) 포털 지식백과 참고 편집자 주
- 51) <https://bit.ly/3qrPa8E>
- 52) <https://bit.ly/3qwbns>
- 53) <https://bit.ly/3Dq8vBb>
- 54)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55) 포털 지식백과 참고 편집자 주
- 56) <https://bit.ly/3qAkAJT>
- 57) <https://bit.ly/3qv18yo>
- 58)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59) <https://bit.ly/3TY2Upb>, <https://bit.ly/3eFTy1f>
- 60)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61) <https://bit.ly/3BaXv5L>
- 62) <https://bit.ly/3qrNCeP>
- 63) <https://bit.ly/3qv1F3m>, IT 용어 사전 책
- 64) <https://bit.ly/3xaN54z>
- 65) <https://bit.ly/3RyzzT>
- 66) <https://bit.ly/3RzvIZ1>, <https://bit.ly/3d5s6cE>
- 67) <https://bit.ly/3TTkASO>
- 68) <https://bit.ly/3eFUjY9>
- 69) <https://bit.ly/3RvUpA2>
- 70)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71)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72) <https://bit.ly/3QEkuGZ>
- 73)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74) IT 용어 사전 책
- 75)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 해설서
- 76) <https://bit.ly/3QHYqji>, IT 용어 사전 책
- 77) <https://bit.ly/3L8aGZO>
- 78) <https://bit.ly/3xqIvC9>, <https://bit.ly/3Bu7mom>
- 79) <https://bit.ly/3Dkt7ID>, <https://bit.ly/3QHYhwQ>
- 80) <https://bit.ly/3DfDJIN>, <https://bit.ly/3RzvImn>
- 81) <https://bit.ly/3TYCYtv>
- 82) <https://bit.ly/3RP4FTC>
- 83) <https://bit.ly/3U4wWYj>
- 84) <https://bit.ly/3TYl623>
- 85) <https://bit.ly/3RVZ1iE>
- 86) <https://bit.ly/3xeADRw>
- 87) <https://bit.ly/3U164Zh>
- 88) <https://bit.ly/3L7fsNa>
- 89) <https://bit.ly/3B6RpDf>

별첨

별첨 내역

별첨 자료는 가이드라인 활용 시 참조할 수 있는 별도 자료

관련 서류 및 예시 등을 포함하고 있음

아래 링크에 별첨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url.kr/wnx15b>

| 번호 | 별첨 |
|----|---|
| 1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hwp |
| 2 | 도로점용허가신청서_제출용(샘플).hwp |
| 3 |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기술가이드라인(해설서)v0.2.pdf |
| 4 | 민간투자사업(BTO BTL) 회계처리지침.hwp |
| 5 |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hwp |
| 6 |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기준.hwp |
| 7 | 소상공인 정의.pdf |
| 8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 9 | 소프트웨어 기본 시방서.xlsx |
| 10 | 옥외광고법 시군구 조례 표준(안).hwp |
| 11 |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pdf |
| 12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표준안).hwp |
| 13 | 준공관련 서류 및 도서 리스트.hwp |
| 14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_정오표 및 전문.hwp |
| 1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wp |
| 16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_정오표 및 전문.hwp |
| 17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_정오표 및 전문.hwp |
| 1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hwp |
| 19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
| 20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pdf |
| 21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265호).hwp |
| 22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전문(100726).hwp |
| 23 | 지하매설물_협의서.hwp |
| 24 | 지자체 시방서 샘플 |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8층(공덕동, 지방재정회관)
www.lofa.or.kr | www.ooh.or.kr

발행일자 2022.09.21

연구 개발 (주)엠앤엠네트웍스 책임 연구원 김성원

연구원 이세리

연구원 김이린

연구원 박하경

연구원 정예진

보조 연구원 김우림

보조 연구원 이승아